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FTA TRADE REPORT

Vol.04 December 2016

FTA 무역 리포트



FTA

Vol.04 December 2016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CONTENTS

FTA FOCUS

- 006 FTA 활용 수출확대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정책과 성과
천홍욱 관세청장

FTA 최근 동향

- 012 관세청 FTA 동향
032 우리나라 FTA 동향
048 해외 FTA 동향
052 한-에콰도르 SECA 미리보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055 국제원산지세미나

FTA ANALYSIS

- 060 FTA를 활용한 베트남 섬유수출 활성화 방안(EU-베트남 FTA 교차누적을 중심으로)
임병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083 산업별 FTA 이행 동향 : 겨울 레저용품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FTA EXPERT

- 096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변화와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08 한-중 FTA 활용 1년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박세현 관세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116 한-중 FTA 발효 1년 대중수출 성과와 활용현황
정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조사담당관

FTA와 품목분류

- 138 **의류의 품목분류** 의류는 관세율표에서 어떻게 분류되는가?
육수진 사무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임교수



FTA 활용 성공사례 & FTA Issue Focus

- 156 한-중 FTA 비즈니스 활용 모델
164 불인정공정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규정의 간소화 방안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 198 블루오션을 열어준 FTA 전문 자격증 원산지관리사
이준희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
202 새로운 길을 열어준 원산지관리사
신진우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

활용하기 쉬운 FTA-PASS

- 206 FTA-PASS 특징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FTA 100% 활용하기

- 212 한-중 통상 환경속 “창업단계기업과 협업”
백필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플랫폼비즈니스팀 팀장

FTA 지도

- 222 우리나라 FTA 체결국 현황(2016년)
224 FTA 활용률
228 지도로 보는 2016년 FTA 특혜적용 수출입실적(1~10월)





FTA FOCUS

FTA 활용 수출확대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정책과 성과
천홍욱 관세청장

01

FTA 활용 수출확대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정책과 성과



천흥욱 관세청장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거듭한 무역강국이다. 세계 무역이 FTA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약 10년에 걸쳐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포함하여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FTA 체결국과의 수출은 2,856억불로 전체 수출 4,051억불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RCEP^①이 발효되면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8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 지연과 중국, 아세안 등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세 둔화로 2년 연속 수출이 하락하고 있다. 2014년 5,727억불에서 2015년 5,269억불로 8% 감소했으며, 2016년 10월 기준으로 4,05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다시 8% 하락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역 구조를 고려할 때 수출을 회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물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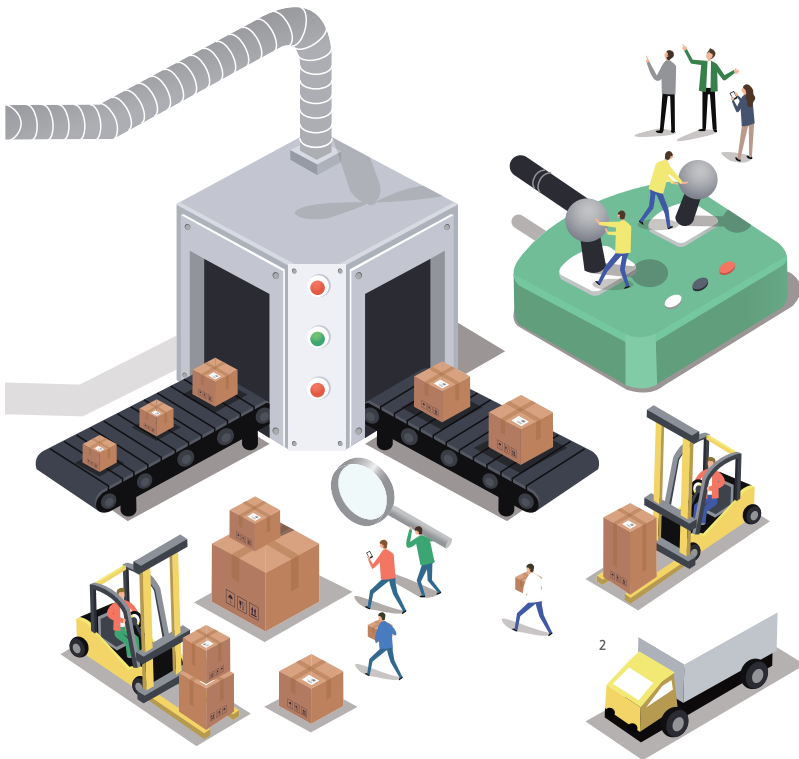
①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현재 협상 진행중

이를 위해 관세청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YES FTA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는 발효 2년차를 맞은 한-중 FTA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별히 의미 있는 정책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FTA 활용실익이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중 FTA를 활용한 경험이 없는 7,086개 기업을 선정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활용상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컨설팅 하였다. 출산률 저하, 유아용품 해외 직구 증가 등으로 내수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아생활용품 생산업체가 한-중 FTA를 활용한 결과 수출이 약 350억원 증가하고 협력업체의 국내 매출까지도 동반 상승한 것은 좋은 예이다.

둘째,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 간에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정보와 특혜관세 적용 결과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함으로써 통관단계 심사를 간소화하였다. 향후 또 하나의 특혜 무역협정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²⁾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셋째, 중국내 주요 물류 거점지역인 천진과 대련에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하였다. 중국 북경과 상해에는 관세관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및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는데, FTA차이나 협력관은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 중국 해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와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3월 1일 파견된 FTA차이나



²⁾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 이 참여하는 특혜무역협정

협력관은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해관의 품목분류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고관세 부과 등 현재까지 98억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넷째,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중국내 식품한류(韓流)의 확산과 함께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의 대상이었던 농산물이 수출품목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원산지간편인정제도」는 이러한 기회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농산물이 한국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등 약 5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딱 1장의 서류만 있으면 된다. 11월부터는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하였다.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통하여 FTA를 쉽게 활용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남해군 흑마늘, 고흥 유자 등 지역특산품들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으로 지난 해 12월 발효 당시 922건에 불과하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올해 1월 들어 5,205건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매월 10,000건 이상씩 발급되어 10월 기준으로 총 100,941건이 발급되었다.

한-중 FTA를 활용하는 기업수도 발효 당시 208개 업체에서 10월 기준 3,682개 기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한-중 FTA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향후 FTA 특혜관세품 확대와 함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최근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 및 TPP^③ 발효 지연 등 미국 우선주의로 자국의 실리를 강화하려고 한다. 반면에 중국은 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FTAAP^④ 구축을 주장하며 미국에 대항하여 세계경제의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계

③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우리나라는 관심표명

④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응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추진하는 협정

시장에서 무역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을 FTA 활용기업으로 발전시켜 RCEP, FTAAP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확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FTA 체결국가를 중심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세계 각국의 新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2017년 중소기업 지원 중점 추진정책으로 「YES FTA BEST 3·6·9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3·6·9 지원 전략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영세 기업 등 3대 기업군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확대, 취약산업 지원강화 및 FTA 자율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등 6대 과제를 바탕으로 9만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기업화를 위한 중점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조달한 원재료, 중간재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유통을 촉진하고, 내수 기업은 FTA를 활용하여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체약국의 원산지검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 활용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新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FTA 세관협력 MOU 2020 Plan」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해외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FTA 이행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가 20개를 선정하여 세관당국간 이행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통관단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해 나갈 것이다.

FTA 활용이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FTA가 일반화되고 있는 무역환경에서 FTA는 분명히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은 무역의 제일선에서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FTA 최근 동향

관세청 FTA 동향

우리나라 FTA 동향

해외 FTA 동향

한-에콰도르 SECA 미리보기

국제원산지세미나

01

관세청 FTA 동향

대한민국 FTA 파트너 돈독한 협력관계 강화 (2016.09.20.)

駐韓 외국공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16.9.20(화)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의 駐韓 외국공관의 관세관·상무관 등 관계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여 국가

중국, 아세안(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미국, EU(EU 대표부, 영국), 호주, EFTA(노르웨이·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콜롬비아, 페루

이번 간담회는 FTA 체결국과의 공동관심사를 공유하고 FTA 이행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이행 협력을 위한 세관간 MOU 체결' 계획을 발표하고, 외국공관의 협력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한 외국공관, 외국 상공회의소 등 주한 외국기관을 관세행정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FTA 이행협력을 위한 세관간 MOU 체결 추진



- ☑ (배경) 총 15개 협정, 52개국과의 FTA 체결로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원활한 이행이 중요 아젠다로 대두

 - FTA의 활용 증진을 위해서는 각 협정별 이행위원회 등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세관당국간 이행협력 채널 강화가 필요

- ☑ (MOU 주요 협력 방안) ①원산지 관리 및 정보교환 협력, ②비관세·통관애로 방지 및 해소 협력, ③원산지 검증 협력, ④FTA 무역통계 교환 협력, ⑤FTA 활용능력 배양 협력

[추진 전략도]

목 표

MOU 체결 및 원활한 이행을 통한 FTA 활용 증진



**FTA 전성시대!
원산지 관리 어떻게?
(2016.09.22.)**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9. 26.~10. 10.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국내 유일한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검증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원산지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썼다. 그동안 FTA를 활용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하더라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상대국 수입기업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 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특히, 한-중 FTA가 발효 2년차로서 중국 측의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안내 하였으며, 설명회는 서울(9.26)을 시작으로 인천(9.29)·광주(10.5)·대구(10.7)·부산(10.10)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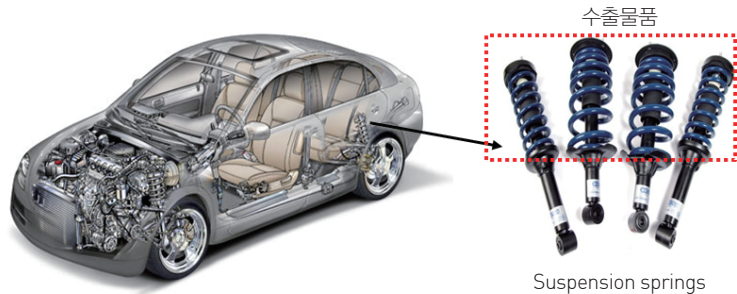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수출 차량용 철강제품에 대한 통관 애로 해소 (2016.10.05.)

천진·대련 차이나협력관, 철강수출기업 가격경쟁력 제고 성과 거둬

관세청은 해외로 수출하는 차량스프링용 철강제품인 와이어로드(wire rod)에 대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와이어로드'는 중국에서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되어 5.2% 관세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기타의 합금강'으로 분류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와이어로드는 올해에만 중국에 210억 원 상당을 수출하고 있어 매년 13억 원 이상의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수출업체, 관세청, 중국 천진과 대련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 북경 주중 대사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외에서 다각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이다.

* 한-중 FTA 통관애로해소를 위해 중국 현지에 파견된, 중국어에 능통한 관세전문가

먼저, 관세평가분류원을 중심으로 우리측 품목분류 의견을 정립하고, 주중 대사관은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했다. 현지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은 실제 문제를 제기한 천진·대련 세관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양국 관세청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중국 해관총서와 공식적인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중국세관의 무관세 통관 조치를 이끌어 냈다.

국제규정상 크롬이 0.3% 이상이 포함된 와이어로드는 기타합금강
(관세율 0%)으로 분류, 본 건 제품은 크롬 0.6%이상 함유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의견이 다른 품목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중국 현지에 차이나협력관
을 추가 파견하여, 양국 간 상이한 품목분류 등 통관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수출, 관세율 비교 후 저세율 활용 전략 필요 (2016.10.07.)

'중국관세율 일람표'에서 다양한 세율 비교확인 가능

관세청은 지난 9월 15일 중국이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이하 ITA II)*에
따라 201개의 품목군(중국 세번으로 484개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인하함
에 따라, 대중국 수출기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잠정세율 등의 관세율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세율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보기술협정(ITA): 세계무역기구(WTO) 주도로 정보통신제품의 무역원활
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정('97년 ITA I 발효) → ITA II 타결('15년)
로 HS 6단위 기준 총 201개 품목 관세 즉시철폐 또는 최장 9년간 균등 철폐

※ 적용 세율

- 최혜국대우(MFN) 세율: WTO 회원국 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율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 잠정세율: 중국에서 787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적용하는 관세율

이번 ITA II 에 따라 이미 무세화(無稅化)된 218개 품목은 제외하고, 전기·의
료·계측기기 등 266개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7년 내* 연차적
으로 완전 철폐된다.

* 3년 내 철폐(113개 품목), 5년 내 철폐(103개 품목), 7년 내 철폐(50개 품목)

특히 한-중 FTA 체결 시 양허(讓許) 제외(관세인하 특혜 제외)된 2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발효 2년차 FTA 관세율보다도 낮게 인하된 품목이 139개로 정보기술(IT)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 유리한 관세 환경이 조성되었다.

* [예시] 위성TV 수신 셋톱박스(중국세번 85287110)의 경우 FTA 특혜가 없는 품목이었으나, 이번 ITA II 세율이 적용되어 30%인 세율이 25%로 인하됨

이에 따라 관세청과 세관에 다양한 중국 관세율 가운데 유리한 세율을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ITA II 세율이 포함된 「중국관세율 일람표」를 전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하고,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제공한다.

이 표를 통해 품목별로 적용 가능한 중국의 최저세율과 시기별 최저세율 확인이 가능하다.

[예시1]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경우
→ FTA 세율(13%)보다 낮은 ITA II 세율(11.3%) 적용이 유리

[예시2]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경우
→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 II 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 II 세율(4.0%)이 유리

관세청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기업은 다양한 중국관세율 가운데 ‘기업에 유리한 세율’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단, ITA II 일부 품목은 정보화 기기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 규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중국 관세율 일람표」 〈예시〉

- MFN : WTO 회원국 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율
- 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 잠정세율 : 중국에서 787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적용하는 관세율
- ITAI : 정보기술협정확대협상에 따른 관세율(2016.9.15일부터 적용)
 - * 'EX'는 '특정 기기나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세부 규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MFN·잠정·ITAI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없는 반면, APTA·FTA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본 일람표는 법률적 책임이 없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협정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번	MFN(%)	APTA(%)	잠정(%)	잠정 (EX)	FTA (2년차)	FTA(3년) (2017)	FTA(4년) (2018)	FTA(5년) (2019)
90011000	5.0	4.5			4.8	4.7	4.6	4.5
90012000	8.0	7.6	6-(9001200002: Plates of polarizing material for LCD projector) 6-(9001200003: Plates of polarizing material for digitalfilm projector)	ex	6.4	5.6	4.8	4.0
90013000	10.0		6.0		9.0	8.5	8.0	7.5
90014010	20.0		15.0		17.3	16.0	14.7	13.3
90014091	20.0				17.3	16.0	14.7	13.3
90014099	20.0				17.3	16.0	14.7	13.3
90015010	20.0		15.0		17.3	16.0	14.7	13.3
90015091	20.0				17.3	16.0	14.7	13.3
90015099	20.0		12.0		16.0	14.0	12.0	10.0
90019010	8.0	7.6			6.9	6.4	5.9	5.3

세번	MFN(%)	APTA(%)	잠정(%)	잠정 (EX)	ITAI(%) 2016.9.15~	ITAI (EX)	ITAI (2017.7~)	ITAI (2018.7~)	ITAI (2019.7~)
90011000	5.0	4.5							
90012000	8.0	7.6	6-(9001200002: Plates of polarizing material for LCD projector) 6-(9001200003: Plates of polarizing material for digitalfilm projector)	ex	6.7		5.3	4.0	2.7
90013000	10.0		6.0						
90014010	20.0		15.0						
90014091	20.0								
90014099	20.0								
90015010	20.0		15.0						
90015091	20.0								
90015099	20.0		12.0						
90019010	8.0	7.6			7.0		6.0	5.0	4.0

2016년 하반기 원산지 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사례 공유·확산(2016.10.17.)

관세청은 14일(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검증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정보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에서는 '① 특혜관세 적용 요건 위반', '② 원산지 우회수입을 위한 부정특혜 위험', '③ 소비재·농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원산지 의심품목' 등 다양한 분야에 출품된 총 30편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12편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최우수상'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원산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손애란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필리핀산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우려 업체를 분석한 대구세관 김동규 관세행정관과, 역외산 견과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분석한 국제원산지정보원 배철한 전문연구원이 수상했다.

특히, 배 전문연구원은 한-미 FTA에서 조제식료품의 경우 특정 원재료 등이 반드시 원산지상품이어야 한다는 '조건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물품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물품인 제2008.19호(과실·견과류 조제품)는 볶음(Roasting) 등 제20류 주 규정^①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해당 호로 분류될 경우 과실·견과류 등의 원재료가 반드시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는 PSR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물품이다.

조사대상물품은 역외산 캐슈너트를 사용하여 볶음 공정만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수출자가 공식 상호명이 아닌 브랜드 명칭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부터 캐슈너트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장려상’에는 말레이시아산 가전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사례를 분석한 서울세관 김정숙 관세행정관, 기계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사례를 분석한 평택세관 조지훈 관세행정관과 캐나다산 의류제품의 원산지 위반 사례를 분석한 인천세관 김경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직원의 검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원산지 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이는 FTA 원산지 검증 업무가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해와 정확한 원산지 기준 파악 등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다른 관세업무 분야에 비해 새로운 업무 분야로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원산지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을 공유하고, 불법·부정 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①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음(건조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포함한다)한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은 채소·과실 및 견과류(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계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또한 복숭아, 배 또는 살구를 포함(단독 또는 다른 과일과 혼합하여 사용된 것도 포함한다)하는 제2008호의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계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참고]

볶은 캐슈너트, 한-미 FTA 주(note) 규정을 활용한 정보 분석²

▶ 분석배경

- 한-미 FTA에서 조제식료품은 특정 원재료 등이 반드시 원산지상품이어야 한다는 ‘조건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다수 존재
- 특히, 제2008.19호(과실·견과류 조제품)는 볶음(Roasting) 등 제20류 주 규정에 해당하는 공정만이 수행되어 해당 호로 분류될 경우 과실·견과류 등의 원재료가 반드시 원산지 상품이어야 PSR 충족

▶ 정보분석 개요

- 제2008.19호의 ‘볶은 캐슈너트’에 대한 정보분석 수행
 - 미국에서의 캐슈너트 생산 여부, 비원산지 캐슈너트 사용여부, 해당 수출자의 물품 및 제조공정 등에 대한 분석 수행

▶ 정보분석 상세내용

- 미국은 캐슈너트의 상업적 생산이 불가능한 非생산국으로 확인
 - 캐슈너트는 북위25도에서 남위 25도 사이의 열대기후에서 생산

- 미국의 對베트남 캐슈너트(제0801.32호) 수입 급증* 추세
* '10년 340백만 달러 → '13년 508백만 달러 → '15년 790백만 달러
- 수출자 홈페이지 및 수입내역 분석결과, 베트남산 캐슈너트 수입* 및 사용
* 수출자는 상호 대신 브랜드명 000으로 수입
- 해당물품은 ①견과류(캐슈너트), ②땅콩오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조공정은 '원재료 입고 → 세척 및 불순물 제거 → 볶음 → 검사·포장·출하'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동 물품은 볶음 공정만이 수행되어 제2008.19호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제20류 주 규정이 적용됨에도 역외산(베트남) 캐슈너트를 사용하여 PSR 불충족 가능성 높음

▶ 시사점

- 수출자의 수입내역 확인 시, 계열사 및 브랜드명으로 확장 검색 필요
- 旣 검증 수출자라 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PSR 불충족 가능성 존재

② 해당내용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배철한 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원산지 부정특혜 차단 및 FTA 수출 적극 지원키로 (2016.10.26.)

'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은 10월 26일(수)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및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하는 내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16년 원산지검증 추진실적 및 현안 점검’, ‘미진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수출입 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52개국가와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되어 본격적인 FTA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복잡 다양한 원산지규정을 약용한 원산지 세탁·조작 등 부당 특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일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나라에 생산·물류 시설이 산재하여 원산지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혜적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하고,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세관 검증관계관들은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검증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한-중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세관 별 수출 검증대응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세관에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해주는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과 섬유 등 검증 취약 산업군에 대한 모의검증 등 기업의 원산지 자율점검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원산지를 세탁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특혜를 받는 기업에는 엄정 대처하되, 성실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는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FTA 위반사례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어, 국민이나 수출입기업이 원산지 세탁 등 부당 특혜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산업별’자유무역협정 (FTA) 활용률도 공개 (2016.10.27.)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취약산업 지원 전략 수립 등에 활용 기대

관세청은 기존 협정별·품목분류(HS)별로 제공*되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별로 확대하여 10월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15년 상반기부터 HS 21개 부(部)별·협정별 FTA 수출입활용률 공표(국가통계연 2회)

그간 기존 활용률 통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산업별 FTA 활용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지표에 대한 민관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별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통계를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산업별로 세분화한 통계를 새롭게 공개했다.

*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르며, FTA 발효 1년이 경과된 11개 협정·49개국 대상으로 산출(지난해 12월 발효된 중국·뉴질랜드와 올해 7월에 발효된 콜롬비아는 제외)

산업별 FTA 활용률은 10개 대분류 및 56개 중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어느 산업군이 FTA 활용에 취약한지, 활용지원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산업별 활용률은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공개되며, 앞으로 분기별로 갱신될 예정이다.

예시: MT1(대분류)/2단위(56개)로 구분하여 공개

MT1(대분류)	MT2(중분류)	활용률
농림수산물	전체	54.2%
	농산물	54.6%
	수산물	62.1%
	임산물	59.0%
	축산물	38.4%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통계가 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 민관에 두루 활용되어 FTA 활용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산업별활용률 활용 우수사례

- '15년 3월 전체 수출활용률이 68.7%인 가운데, 농림수산물의 활용률은 45.4%에 불과, 활용률이 낮은 주요 요인은 농어민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과 물품 특성상 원산지 입증 서류 확보가 어렵기 때문

-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입증서류 간소화를 위해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하였고('15.5월), 김·미역 등 22개 수산물로 확대 실시함('15.11월)

* 정부 또는 공공기관(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발급서류(예: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원산지확인서 작성 및 입증서류 구비할 필요가 없음
 → 농림수산물의 수출활용률은 ('15.12월)50.9%, ('16.9월)54.2%로 상승

산업별 활용률 조회 화면 관세청FTA 포털

FTA 활용률

협정별(수출)	협정별(수입)	산업별(수출)	산업별(수입)
전체 All FTA 칠레 Chile 캐나다 Canada 터키 Turkey	EFTA 유럽연합 EU 호주 Australia	아세안 ASEAN 페루 Peru	인도 India 미국 USA

※ 발효 1년이 경과된 11개 협정(49개국)을 대상으로 산출(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는 제외)
 ※ 수출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산업부에서 통계분류를 위해 편의상 비슷한 종류의 HS번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협정구분	산업별(MTI1)	16년 3/4분기(누적)
칠레	합계	80.6%
	농림수산물	51.0%
	광산물	95.0%
	화학공업제품	73.4%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79.1%
	섬유류	50.8%
	생활용품	62.5%
	철강금속제품	65.3%
	기계류	87.8%
	전자전기제품	53.7%
잡제품	30.9%	

협정별(수출)	협정별(수입)	산업별(수출)	산업별(수입)
전체 All FTA 농림수산물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광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기계류

※ 발효 1년이 경과된 11개 협정(49개국)을 대상으로 산출(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는 제외)
 ※ 수출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산업부에서 통계분류를 위해 편의상 비슷한 종류의 HS번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MTI1	MTI2	16년 3/4분기(누적)
농림수산물	합계	54.2%
	축산물	38.4%
	임산물	59.0%
	수산물	62.1%
	농산물	54.6%

**관세청-농식품부,
축산물 FTA활용 분야
MOU 체결
(2016.11.28.)**

축산물의 FTA 활용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8일(월) 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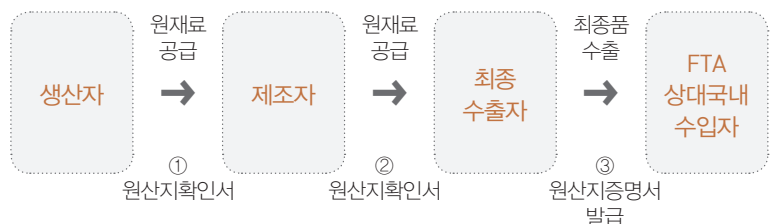
이를 위해 관세청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하여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킨다.

* 원산지확인서: 수출품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수출품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한국산임을 증빙할 때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

그동안 축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원산지 증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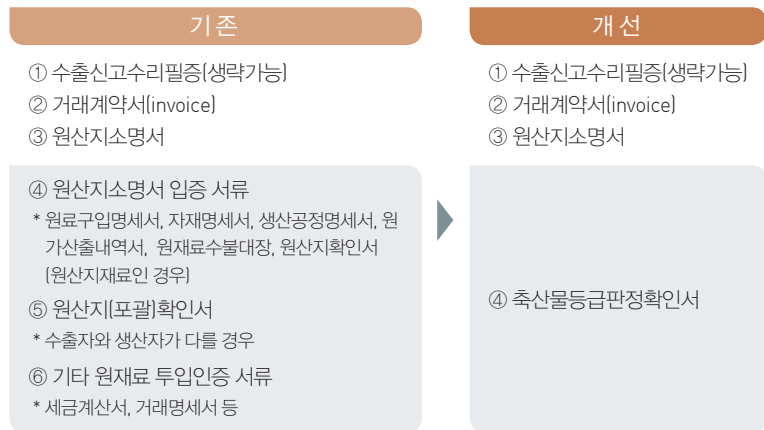


①② : 원재료 또는 완성품의 원산지를 확인시켜줌

③ : 수출자는 원산지 확인서를 근거로 '한국산'임을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상대국내 수입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공

그러나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에서 완전생산**되는 소·돼지·계란·닭·오리 등 5개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예정이다.

* 예시 삼계탕 수출의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제출 서류(주재료인 닭 고기의 원산지 증명은 간소화, 인삼 등 기타 부재료는 개별 원산지 증명 필요)



** 국내산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의 개념으로 출생 및 사육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또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공개하고, 시스템으로도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국내 축산물 인증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확대하고, FTA 활용 수출실적 등 축산물 수출 통계 농식품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FTA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관련 발급 실적 및 관련 통계와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정보 및 이력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포함

나아가 양 부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개최하여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신규 발굴 및 FTA 수출 활용방안 마련 등 축산분야 FTA 활용 성과창출에 기여해 나가기로 협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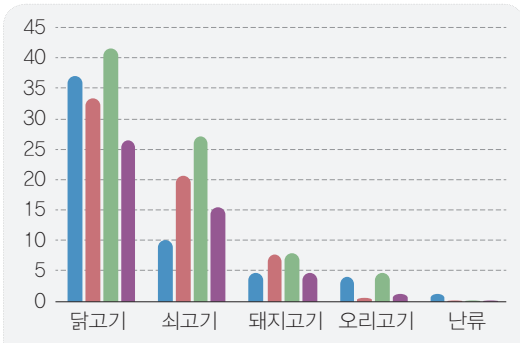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위한 축산물의 원산지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활용률('16년 9월 기준 38.4%)이 낮았으나, 앞으로 수출 축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하여 수출업체 및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TA 상대국으로 수출된 축산물 수출액은 2016년 9월 기준 3천 1백만 불로, 원산지증명이 간소화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는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수출 현황(관세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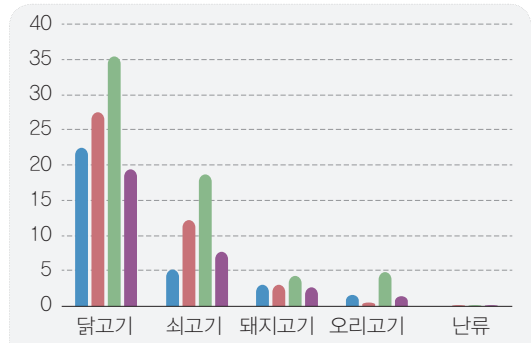
▶ **對세계 축산물 수출 현황**

(단위: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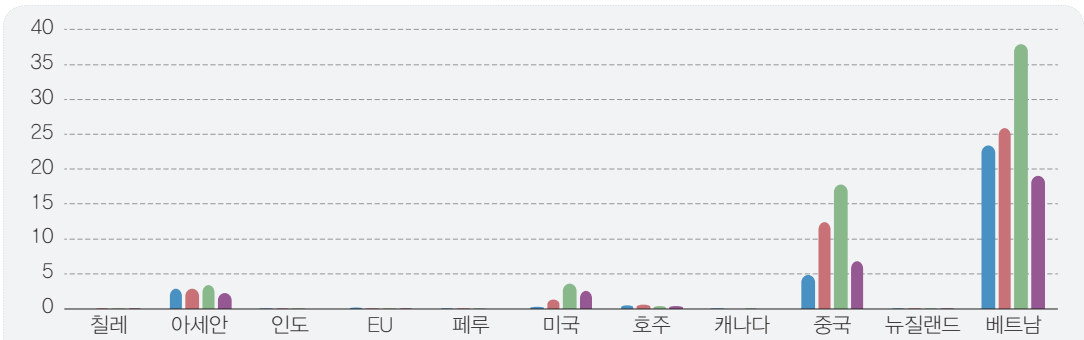
▶ **對세계 축산물 수출 현황**

(단위:백만\$)



▶ **對세계 축산물 수출 현황**

(단위:백만\$)



**찾아가는 서비스로
중소 수출기업의
FTA 효과 극대화
(2016.11.30.)**

관세청,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 실시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상대국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전에 미리 확인·점검하는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26개 중소기업은 모두 원산지 관리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앞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자유 무역협정(이하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참여 기업들을 방문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과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도 점검했다.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협정에서 정한 서류 보관이 미비한 일부 기업에게는 증빙서류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고, 또한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했다.

FTA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제영토를 넓히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위기'로 바뀌지 않도록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혜 세액의 추징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개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이번 사업의 의미는 매우 크다.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FTA 규정도 복잡하지만 수출물품과 원자재의 품목분류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FTA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앞으로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내년에도 원산지 검증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사전확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기업들은 각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인천 [032-452-3639], 서울 [02-510-1376], 부산 [051-620-6953], 대구 [053-230-5185], 광주 [062-975-8055]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FTA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02

우리나라 FTA 동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로 수출 부진 타개 총력’ (2016.08.18.)

산업부, 제27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열고 FTA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경제단체·학계·업종별 협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27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수출회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8.18.(목)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공동민간위원장인 이경태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수출회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 방안”, “15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농어업인 지원 성과분석 결과” 및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이행을 위한 세관당국간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기본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각 안건의 시사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일제 점검했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주요기능) 통상조약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수렴, 비준동의, 국내보완대책 마련 및 협정의 활용 관련사항 등을 심의
- (위원구성) 공동위원장 2명*, 정부위원(당연직) 18명, 민간위원(위촉직) 19명
* (정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민간) 이경태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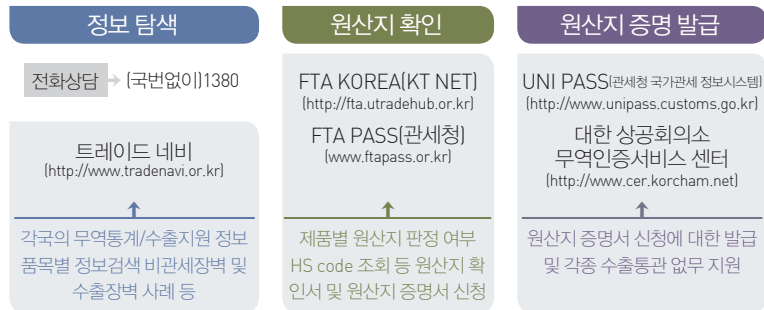
상반기 수출은 연초 20%에 육박하던 수출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어 '16.6월 감소폭이 2.9%까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하반기 수출 증가세 전환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수출을 확실한 증가세로 전환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산의 중요성이 중점 거론됐다.

* 수출증감률(%): ('16.1)▲19.1 → (2)▲13.0 → (3)▲8.1 → (4)▲11.1 → (5)▲5.9 → (6)▲2.9

우선, 컨설팅·교육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 사업을 종전에 원산지 관리 중심에서 시장개척, 인증, 지재권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한번 신청하면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성공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전문상담 전화 「1380」을 9월중 확대 개편하여 수출 지원 관련 모든 상담이 가능한 수출안내 통합콜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며, 정보탐색에서 원산지 증명까지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기업의 편의성 및 처리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FTA 활용 관련 웹사이트 개선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지방 성시별 단위까지 「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중국 수출이 유망한 소비재 등 자유무역협정(FTA) 수혜품목 대상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 (현행) 4곳(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 (확대) 9곳(광저우, 장쑤, 광둥, 산둥, 톈진 추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만기 1차관은 “그간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온 만큼, 지금까지 수출 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자유무역협정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주요 걸림돌인 복잡한 원산지규정·절차 및 다양한 형태의 활용·통관애로 해소의 시급성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 중국 등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 기조아래 우리기업의 수출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통관, 비관세장벽 등의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업종별 협의회’를 발족(16.6.)함과 동시에 업종별 기업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소통형 정책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관련단체와도 상호협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당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통관단계애로 해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는 농업과 수산분야의 '15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는 농어업분야 세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13년부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까지 한·미, 한·유럽연합(E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8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수립·추진 중인 농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평가 필요성과 우수성과 홍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각 위원들은 자유무역협정 활용확산 활동에 동참해 자유무역협정 활용 활성화를 통한 수출부진을 적극 타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관세청-농식품부, 축산물 FTA활용 분야 MOU 체결 (2016.11.28.)

한-에 SECA 제3차 협상, RCEP 제4차 장관회의·제14차 협상 결과

정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고 유망 수출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에과도르 SECA 및 RCEP 등 최근 진행중인 협상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1. 한-에과도르 SECA 제3차 협상 개최결과

한-에과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하 “한-에 SECA*”) 제3차 협상이 8.22(월)-8.26(금)간 에과도르(키토)에서 개최되어 2차 상품양허안 교환방식·일정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하였다.

* 에과도르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FTA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양측은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라는 명칭에 합의(내용은 FTA와 동일)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지원부 FTA정책관, 에측은 Alejandro Dávalos(알레한드로 다발로스) 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이끌었으며, 우리정부를 대표하여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당초 '16.5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3차 협상은 '16.4월 에콰도르에 발생한 강진(사망 654명, 33억불 피해)으로 인해 연기되었으나, '16.7월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면담에서 빠른 시일내에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함에 따라 이번 '16.8월 협상이 재개되었다.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이번 협상전 교환한 제1차 양허안(offer) 및 양허요구안(Request)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2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 및 교환일정에 합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합의점을 모색하였다.

* 양국 교역액(억불): ('06) 3.7 → ('10) 8.9 → ('14) 11.5 → ('15) 9

(韓) 자동차·자동차부품, 합성수지(섬유) / (에) 원유, 새우, 과실류 수출

서비스/투자분야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신속한 협상 진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제4차 협상전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안 교환에 합의하여, 차기 협상부터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규범분야는 협정문 협상에서 향후 논의를 위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번 협상에서 지재권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였고,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 협상계획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TBT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RCEP 제4차 장관회의·제14차 협상 개최결과

동아시아 지역 최대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RCEP**”) 협상에서는 지난 제4차 장관회의(8.5, 라오스)를 모멘텀으로 핵심 쟁점인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진전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제14차 공식 협상(8.15~19, 베트남)을 통해 세부 진전방안에 대해 참여국간 심도 있는 협상이 이루어졌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CEP은 16.5월 협상 개시 이후 작년 10차 협상(10월, 부산)부터 상품·서비스·투자 관련 시장접근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발전수준이 다양한 다수 국가들간 이해가 엇갈려 그간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음

최대쟁점인 상품 시장접근의 경우, 우리측은 4차 장관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참여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는 바, 제14차 협상에서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 관련 주요 원칙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우, 그간 최종 개방수준과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준설정 필요성에 대해 참여국간 이견이 대립하였으나, 4차 장관회의에서 최종 개방수준 관련 이견을 일부 축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14차 협상에서 서비스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설정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참여국들은 이번 협상진전을 바탕으로 금년 예정된 두 차례 공식협상(10월 중국, 12월 인니)을 통해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에서 이견 축소 및 실질적 진전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과 우리의 교역·투자 확대 차원에서 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에 적극 기여하고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FTA 활용과 수출지원
사업 안내를 전국
어디서나 1380!
(2016.09.06.)**

산업부·무역협회, '1380수출 안내 통합 콜센터'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일부터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함께 기업이 '한 번의 전화'로 수출지원사업 정보를 안내 받고 담당 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1380수출 안내 통합 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수출지원기관의 다양한 사업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등을 위해 마련했다.

'1380 수출 안내 통합 콜센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FTA 1380 콜센터'에 수출 관련 안내 서비스를 포함시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전화상담실을 연계*했다.

* 중소기업청(13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600-7119), 한국무역협회(1566-5114),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 한국수출입은행(02-3779-6114/02-6255-5114)

이제 전국 어디서나 '1380'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수출 및 해외투자 정보, 금융 및 수출거래 지원, 애로상담 등 다양한 무역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전화상담실로 연결되어 재차 문의할 필요 없이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수출입 물류 관련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380 전화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으며, 현재에도 24시간 비상 운영체제를 가동하여 관련 애로를 상시 접수 중에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출지원정책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016.09.20.)**

산업통상자원부는 9.21(수)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촉진을 위해 서울 롯데 호텔에서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재: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 주요 참석기관 : 산업부·관세청 등유관부처, 업종별 협단체, 통상·무역 지원기관 및 주요 연구기관 등

동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에 발족하여 분기별로 개최해 왔으며, 우리 업계가 기체결 FTA 효과를 충분히 향유하도록 산·관·연이 함께 고민·소통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최 일정]

- 제1차(15.12.11, 서울) : 업계의 FTA 이행점검 역량 제고 방안, △FTA 효과 분석·평가 기능 강화 방안, △향후 FTA 이행추진 방향 논의
- 제2차(16.3.25, 서울) :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FTA 관련 업계 애로 사항 청취
- 제3차(16.5.26, 서울) : 제2차 협의회 결과 접수된 FTA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성과 공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FTA 이행·활용 관련 현안 논의

특히, 이번회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동향과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FTA의 발효 6개월 이행 평가, 정부의 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FTA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현재 중미, 에콰도르 등과의 양자 FTA와 RCEP 등 메가 FTA 협상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중임을 언급하고, 아울러, 산업부의 「FTA 활용서비스」를 수출준비 단계부터 수출 성공까지 전방위 지원 종합서비스로 확대하고, FTA전문상담 전화 「1380」을 수출안내 통합콜센터로 개편, 중국 FTA활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FTA 활용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최근 협상 일정 : 중미(제5차, 8.8-12), 에콰도르(제3차, 8.22-26), RCEP(제14차, 8.15-19)

또한, 지난해 12월 발효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이행도 별다른 이슈없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상 효과 분석은 이르나 무역협회 자체 분석 결과 FTA가 우리 수출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계는 통관·관세양허 품목 등의 분야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수렴한 애로사항을 FTA 이행위 등 산하 이행기구를 통해 상대국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동 협의회가 산·관·연간 원활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되어, FTA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교환할 수 있는 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금처럼 수출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FTA가 우리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FTA 활용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업계의 적극적인 FTA 활용도 거듭 당부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TPP 전략포럼」 개최
(2016.09.28.)**

TPP 비준동향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TPP 전략 수립에 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5.1월 TPP 전략포럼을 발족하고 경제·통상·산업 등 각계 전문가와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동향, 경제적 영향, 규범 등 주요이슈를 논의해 왔다.

이번 전략포럼(의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에서는 최근 환태평양경제 동 반자협정(TPP) 비준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PP협정은 현재 아태지역 12개 가입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국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국내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TPP 협상경과 : '15.12월 협상 타결 → '16.2월 서명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대표부가 행정이행계획(SAA) 초안을 의회에 제출(8.12) 하는 등 연말 레임덕 기간(11.14~12.16) 비준을 추진 중이다.

* 행정이행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초안: 美무역촉진법안 (TPA)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 3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의 이행 계획 초안

일본 정부는 연내 TPP 국내비준을 완료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가을 임시 국회(9.26 소집)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 아베 총리는 방미 기간 Biden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조속한 TPP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9.23)

이날 포럼에서는 각국의 비준동향을 민간 전문가 및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美 대선과정에서의 보호무역 정서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TPP 비준의지가 강력한 바, 연내 미국 TPP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TPP 비회원국도 아태 지역에서 TPP 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하는 한,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규범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 무역규범에 능동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박원석 중앙대 교수는 수산보조금 관련하여, “TPP이 아니라도 최근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과잉어획 규율 움직임이 있는바 장기적인 제도개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제14.6조에서 과잉어획 및 불법조업(IUU) 보조금을 2020년까지 금지하도록 권고

이날,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각국의 비준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TPP 대응 관련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2016.11.16.)**

아시아 국가 최초 타결로 미주 진출 교두보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 11. 16.(수)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장(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했다.

* [유사사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시 9개국과 상품협정 서명('06.8월), 태국 타결('07.12월),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시중미4개국 타결('03.12월), 코스타리카 타결('04.1월), 중미5개국 서명('04.5월)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 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 체결한 FTA 全無

또한 칠레('04.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전환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지난 '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을 진행, 1년 5개월만에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 상품 시장 개방

첫째,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는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자유무역협정(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

둘째,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높였다.

*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

통신 분야(챗봇)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 제도(ISD)를 도입하여,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으며,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 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했다.

▶ 정부조달 시장 개방

셋째,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사업(지하철, 교량 건설 등)이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하여왔으나, 중미측 정부 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개방도 확보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프로젝트 수주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한 수익 총당후, 정부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

▶ 비관세 장벽 제거 등 각종 무역 규범 강화

넷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했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

*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최근 15년간 누적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 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

▶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

다섯째,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의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 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이번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한 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투자기회,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과정에 서의 반무역정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중미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6.11.30.)

지난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샤오준 WTO 사무차장,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더글라스 어윈 다투머 스대 교수 등이 참석해 저성장에 빠진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한 통상 분야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전문가 및 석학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통상환경의 기회와 위기요인’을 논의한 기조 세션에서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세계 교역 둔화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적 요인과 함께 세계가치사슬(글로벌 밸류체인) 심화,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기로에 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미래’를 전망한 2세션에서는 사이먼 레스터 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는 발제를 통해,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의 향방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인사 구성 등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이 ‘신뢰도 저하’, ‘아태지역 영향력감소’등을 고려해 향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관련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TPP체결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RECP, 한-중-일 FTA 논의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Jose Luis 주한멕시코대사 역시 연내 상원에서 TPP비준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이어진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발전 방안’을 논의한 3세션에서는 윌리엄 파워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해 “디지털무역은 무역비용 감소, 시장접근성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며 “각국은 TPP 등의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해보고, 이에 대한 우리와 세계 각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

03

해외 FTA 동향^④

노르웨이, 영국 EFTA 가입 반대 (2016.08.2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영국의 EFTA 가입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영국은 EU 탈퇴 후 EU 시장에 재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르웨이 모델'을 거론해 오다 노르웨이의 반대로 EU 시장 접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필리핀·태국·인도 네시아, TPP 가입 방안 타진 (2016.08.29.)

RCEP에 참여 중인 상기 3개국이 TPP 가입을 위해 미국과 의견을 교환 하였다. RCEP 참여국 가운데 TPP 가입국은 7개국*이며 한국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④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독일,
미국-EU FTA 협상
실패 선언
(2016.09.05)**

독일은 EU와 미국의 FTA 협상이 실패했다고 선언하였다. 미국과는 2013년 협상 개시에 합의한 후 14차례 협상을 했지만 협상안 27개 장 가운데 1개 장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전 세계 주요국과
FTA 협상 환영”
(2016.09.12.)**

영국 메이 총리는 한국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전 세계 주요국들과 무역협정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와 무역 협정에 대하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파키스탄
FTA 내년 체결 기대
(2016.09.26.)**

태국은 양국의 협상 진도가 약 70%에 이르며 내년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8~10.20. 태국에서 개최되는 5차 협상부터는 남은 이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며 매월 협상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EU-일본 FTA 연내
타결 목표로 협상 재개
(2016.10.04.)**

EU와 일본은 '13년 4월 협상을 시작했으나 의견 대립*으로 협상이 지연되던 중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9.26~9.30. 브뤼셀에서 제17차 FTA 협상을 재개하였다.

* 일본의 자동차 시장개방 요구와 EU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요구 대립

**베트남-EAEU
FTA 발효
(2016.10.10.)**

베트남과 EAEU가 '15.5.29. 협정을 체결한 후 의회의 비준 절차 등을 마치고 10.5. 정식 발효되었다. 참고로 EAEU는 2015년 1월 공식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협력기구로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과거 구소련 연방 시절의 국가들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중국-조지아
FTA 협상 종료
(2016.10.17)**

중국, 조지아 양국은 '15. 12부터 시작한 FTA협상은 '16.10.6. 종료하였으며, 양측은 '17년말 발효를 목표로 국내비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U-캐나다
FTA 협상 타결
(2016.10.31.)**

EU-캐나다 FTA 협상이 10.30.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식 타결됐다. 양측은 7년을 거쳐 타결 절차만 남긴 상태였으나,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를 맞았다가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 EU의 노동·환경 및 소비자 기준을 훼손하고 다국적 기업이 지역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

**브라질
“EU-메르코수르* FTA
체결 2018년 가능”
(2016.11.07.)**

브라질 통상장관은 EU-메르코수르 간의 FTA 체결이 '18년이나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17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내년엔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18년이나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 메르코수르(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인도-EFTA
FTA 협상 재개
(2016.11.14.)**

인도와 EFTA는 '13년 중단되었던 협상을 재개 했다. 양측은 '08. 10. 협상을 시작한 이래 '13. 11까지 13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지재권 문제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다.

**아베 총리,
“일본 TPP 주도
하겠다”
(2016.11.21.)**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어 TPP 폐기 관측이 나오자 일본 총리는 참의원 TPP위원회에 출석 일본이 TPP를 주도해야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1.17.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에서 TPP 발효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TPP 서명 12개국
정상, 회생방안 협의
(2016.11.28.)**

미국 차기 대통령의 탈퇴 공약으로 발효가 불투명해지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TPP 서명 12개국 정상이 회생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만료까지 TPP 발효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참가국도 국내 승인절차를 계속 진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04

한-에콰도르 SECA 미리보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개요

우유만큼 완전식품으로 알려진 바나나의 원산지는 미국, 필리핀 이외에 어떤 국가일까? 중남미 국가 중 하나인 에콰도르이다. 우리나라에 익숙하진 않지만, 에콰도르는 경제규모는 적은 편이나 바나나, 커피, 쌀, 새우 등 농수 산업의 비율이 높은 자원부국으로 알려진 국가이다. 에콰도르는 남아메리카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페루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에콰도르와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 다른 FTA와 다르게 에콰도르는 정치적인 민감성으로 인해 FTA라는 용어 대신에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은 점, 1993년 체결된 안데안 공동시장 협정의 회원국^④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과 기업이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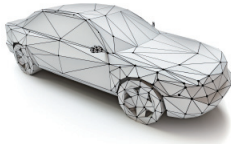
양국 무역규모는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4년은 1,154 백만불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에콰도르는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역흑자국이며, 한국은 에콰도르의 7대 수입대상국으로 알려져 있다.

한-에콰도르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9	
수출	금액	438	887	887	857	920	812	641	305
	증가율	(▲30.0)	(102.4)	(▲0.1)	(▲3.4)	(7.4)	(▲11.8)	(▲21.0)	(▲39.4)
수입	금액	10	12	31	40	48	342	262	69
	증가율	(▲61.3)	(21.9)	(150.0)	(29.0)	(22.5)	(607.6)	(▲23.6)	(▲70.0)
교역역	448	899	917	897	968	1,154	903	374	
무역수지	428	875	856	817	872	470	378	236	

자료: 무역협회



'15년 기준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등이며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원유, 새우, 동제품, 과실류, 어육 등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에콰도르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상보적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맺음말

에콰도르는 중남미지역에서 경제소국에 해당되지만, 천연자원과 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에콰도르는 세계 진출 역사에서 의미있는 나라이다. 국산자동차 포니를 1976년 수출하였을 정도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역사가 상당히 긴 국가이다.

특히, 현재까지 에콰도르의 지역통합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전까지 눈에 띄만한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무역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다른 시장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게다가 SECA 체결로 인해 한국은 고관세 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남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 명 : 에콰도르공화국
(República del Ecuador)
- 수 도 : 키토(Quito, 224만명)
- 인 구 : 1,510만명
- 면 적 : 28만km²(한반도의 1.3배)
- 인 종 : 메스티조 65%, 유럽계 7%,
인디오 25%, 흑인 3%
- 종 교 : 가톨릭(95%)
- 공식언어 : 스페인어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4년, 연임 가능)
- 의회구성 : 단원제(137석)
- 주요인사 성명
 - 대통령 : Rafael Correa(라파엘 고티에라) [07.1월 취임 후 09.4 및 13.2 재선]
 - 외교장관 : Guillaume Long(기욤 롱) [*16.3월 취임]
- 교민 : 약 1,000명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62.10.5
 - 주에콰도르대사 : 이은철(제15대)
 - 주한대사 : 오스카 에레라(Oscar Herrera)
- 교역현황 (2015년)
 - 수출 : 6.4억불 (차량 부속품, 기계류)
 - 수입 : 2.4억불 (원유, 농수산물, 동괴)
-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
 - 투자: 56건, 1억667만불(*16.3월 신고기준 누계)
 - 진출 기업: 삼성/LG 전자, SK/포스코 건설, 레오콘(교통카드), Kcingle-Cupia(관세현대화) 등

2015년 경제현황

- GDP : 1,008억불
- 1인당 GDP : 6,196불
- 경제성장률 : 0.3%
- 물가상승률 : 3.4%
- 교역 : 수출 183억불, 수입 204억불
- 외환보유고 : 27.6억불
- 실업률 : 5.7%

자료: 주에콰도르대사관

05

국제원산지세미나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은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16년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11월 8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갑자기 몰아친 가을 한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입기업 관계자, 세계관세기구, 중국·EU·영국·태국·뉴질랜드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었다.

주요 토론주제는 국가간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날 천홍욱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Mega-FTA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FTA가 실질적인 무역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일치시키려는 FTA 참여국 세관당국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Hindsdal(세계관세기구 관세무역부 부회장)이 “WCO 차원의 HS 불일치 해결방안과 최근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특히, 전자렌지용 반조리 식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예를 들면서, 아시아권은 밥종류로 유럽은 육류로 분류 했던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제 발표자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품목 분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뉴질랜드 세관의 Ku Seona가 “8년간의 중국-뉴질랜드 FTA 등 FTA허브국가로서의 세관이행경험”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발표자는 상대국과의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가간의 신뢰구축과 협력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임병호 선임연구원은 “주요국 품목분류 원산지사전심사 운영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특히, 임 선임연구원은 원산지예비사전심사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사전적 조사성격을 가지는 원산지예비사전심사의 경우, 원산지전문기관에서 위탁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첫번째 세션 후 토론에서는 품목분류 불일치에 대한 실무사례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임병호 선임연구원의 품목분류 원산지사전심사 발표에 대해 이날 패널 중 한명인 육수진 사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요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FTA 특별 세션으로 “한-중 FTA 활용에 관한 기업 애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통관애로지원 방안”,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운영과 협정적용절차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정재호 사무관은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수입국에 제출하던 종이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 비교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일 열린 세미나에서 관세청은 “논의되었던 정책과제, 애로사항 등을 FTA 집행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글로벌 원산지 쟁점사항의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전문가, 기업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공통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TA ANALYSIS

FTA를 활용한 베트남 섬유수출 활성화 방안
(EU-베트남 FTA 교차누적을 중심으로)

임병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산업별 FTA 이행 동향 : 겨울 레저용품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01

FTA를 활용한 베트남 섬유수출 활성화 방안 (EU-베트남 FTA 교차누적을 중심으로)

임병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01

베트남과의 교역현황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가늘고 긴 S자형으로 국토 면적은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이다. 2010년 초, 브릭스(BRICS)에 이어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이끌 신흥 국가 중 하나인 마빈스(MAVINS)^①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200불로 이웃 국가인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8,300불의 약 25% 가량에 불과하다.

〈표 1〉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GDP		세계교역순위(2015)	수출	수입
GDP (미화 백만불, 2015)	193,599	상품	27	28
GDP중		- EU 내부교역 제외	20	21
- 경상수지 비중(% GDP, 2012-2014)	5.2	서비스	54	46
- 교역비중 (% GDP, 2013-2015)	86.7	- EU 내부교역 제외	35	31

자료: WTO

① 브릭스를 이을 신흥 경제국으로 꼽히는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총 9개의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되거나 발효시켰다. 이 중 6개는 ASEAN회원국으로서 발효된 지역무역협정이며, 3개는 각각 칠레, 일본, 한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표 2〉 베트남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순서	협정명	발효일 (상품협정기준)
1	AFTA	1993.01.01
2	아세안-중국	2005.01.01
3	아세안-일본	2008.12.01
4	일본-베트남	2009.10.01
5	아세안-호주-뉴질랜드	2010.01.01
6	아세안-인도	2010.01.01
7	아세안-한국	2010.01.01
8	칠레-베트남	2014.01.01
9	한국-베트남	2015.12.20

자료: WTO

가. 일반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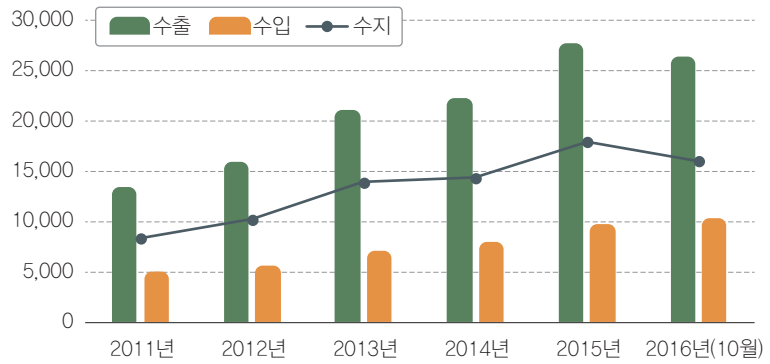
1. 총 수출입

최근 국내외 어려운 교역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6년간 한국-베트남 수출입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2015년 기준 277억불, 수입은 98억불로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79억불의 무역흑자 상대국이다.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불]

년	수출	수입	수지
2011년	13,465	5,084	8,381
2012년	15,946	5,719	10,227
2013년	21,088	7,175	13,912
2014년	22,352	7,990	14,361
2015년	27,771	9,805	17,966
2016년(10월)	26,424	10,365	16,059



자료: 무역협회

2. 산업별 수출입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은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등 중공업 제품이다. 2015년 기준 최대수출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서 약 125억불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기계류 51억불, 철강금속제품 27억불 순이다. 4번째 수출산업인 섬유류는 26억불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총 24.2%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기계류 57.6%, 전자전기제품 38.6%,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0.7% 등 중화학제품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표 4〉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산업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불, %]

순번	MTI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증감률 ('15/'14)
1	8	전자전기제품	9,064	12,567	38.6
2	7	기계류	3,244	5,108	57.5
3	6	철강금속제품	2,611	2,720	4.2
4	4	섬유류	2,734	2,687	-1.7
5	2	화학공업제품	2,600	2,648	1.8
6	3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760	993	30.7
7	0	농림수산물	393	418	6.4
8	1	광산물	642	358	-44.2
9	5	생활용품	276	236	-14.5
10	9	잡제품	28	34	21.4
		합계	22,352	27,771	24.2

자료: 무역협회

산업별 수입에 있어서는 수출과 상이한 구조를 나타낸다. 최대수입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서 수출과 같지만, 이어 섬유류 28억불, 농림수산물 13억불, 생활용품 8억9천만불 등 수출산업에서 하위권에 위치하던 품목들이 주요 수입산업이다. 특히 섬유류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금액이 더 높은 유일한 산업으로서 2015년에는 섬유산업에 있어서 약 2억불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그 외의 모든 산업에서 수입은 수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입증감률은 전제 22.7%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한 전자전기제품이 103% 증가한 반면, 광산물 및 농림수산물은 각각 21.8%, 8.7% 수입이 감소하였다. 섬유류의 경우 2.9%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우리나라의 베트남 산업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불, %]

순번	MTI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증감률 ('15/'14)
1	8	전자전기제품	1,664	3,378	103.0
2	4	섬유류	2,758	2,838	2.9
3	0	농림수산물	1,453	1,327	-8.7
4	5	생활용품	823	895	8.7
5	6	철강금속제품	375	375	0.0
6	1	광산물	367	287	-21.8
7	2	화학공업제품	206	270	31.1
8	7	기계류	222	269	21.2
9	3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99	130	31.3
10	9	잡제품	24	35	45.8
		합계	7,990	9,805	22.7

자료: 무역협회

나. 섬유 특혜교역

1. 섬유 특혜수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섬유산업 특혜수출규모는 총 5억2천만불, FTA활용률은 24.7%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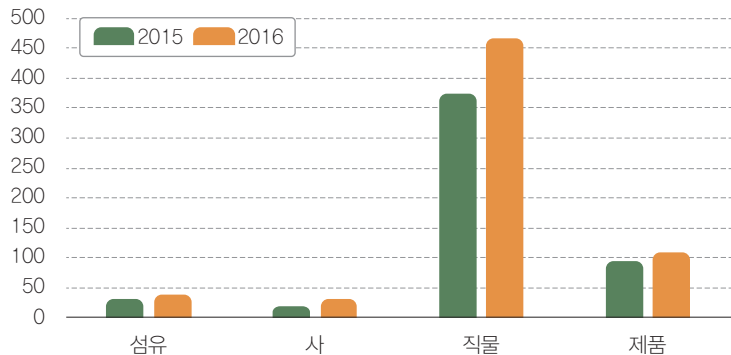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편직물이 1억3천만불로 특혜수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수출규모가 큰 인조 장섬유직물은 약 1억불을 수출하였다. FTA활용률의 경우 각각 16.9%, 27.3%로 나타났다.

2016 증감률과 관련하여 인조섬유(방직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293.2%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인조 단섬유 직물은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국과 베트남 FTA특혜 수출동향

[단위: 천불, %]

가공도	MTI3		2015(10월 누적)		2016(10월 누적)		증감률 ('16/'15)
	코드	소분류명	특혜수출	활용률	특혜수출	활용률	
섬유	411	인조섬유	32,585	58.3	38,484	83.8	18.1
	412	재생섬유	0	-	0	-	-
사	421	천연섬유사	4,208	19.3	4,178	25.8	-0.7
	422	인조섬유(장섬유사)	13,123	37.3	14,946	49.9	13.9
	423	인조섬유(방직사)	3,021	14.1	11,879	42.3	293.2
직물	431	견직물	39	9.9	128	62.9	221.1
	432	모직물	4,510	61.1	4,857	42.1	7.7
	433	면직물	16,467	33.7	22,209	36.3	34.9
	434	인조 장섬유직물	100,122	27.3	105,523	30.0	5.4
	435	인조 단섬유직물	44,115	45.0	42,440	41.7	-3.8
	436	편직물	135,179	16.9	193,902	22.6	43.4
	439	기타직물	73,898	29.6	98,241	36.7	32.9
제품	441	의류	79,947	25.6	90,325	28.7	13.0
	449	기타 섬유제품	14,930	14.9	19,674	18.8	31.8
합계			522,152	24.7	646,791	29.5	23.9



자료: 연구자 직접 작성

* 베트남 특혜수출은 한-아세안 FTA 중 베트남과 및 한-베트남 FTA교역을 합한 것임

2. 석유 특혜수입

우리나라 석유 특혜수입규모는 2015년 기준 22억불이며, 활용률은 97.0%로 나타났다. 구체적 품목별로는 의류제품 수입이 총 수입금액 17억불로 가장 높은 수입금액을 나타냈으며, FTA활용률 역시 98.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 석유제품수입이 2억불 수준(활용률 92.3%)이며, 기타 직물이 7천2백만불(활용률 97.2%), 천연섬유사 6천5백만불 (활용률 99.8%)순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석유수입은 2015년에 비하여 전체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조섬유, 견직물 등은 사실상 수입이 100%감소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높은 의류제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수입증가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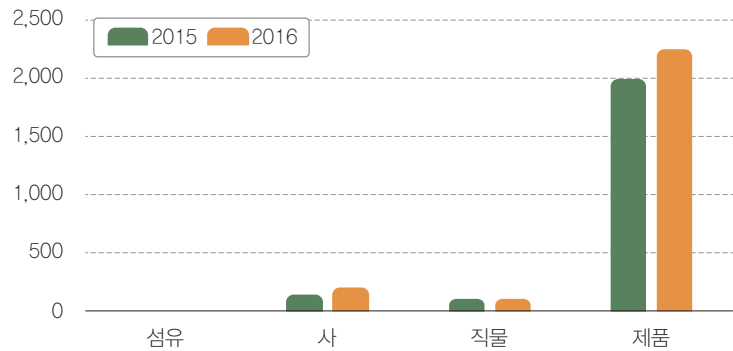
〈표 7〉 한국과 베트남 FTA특혜 수입동향

[단위: 천불, %]

가공도	MTI		2015(10월 누적)		2016(10월 누적)		증감률 ('16/'15)
	MTI3	소분류명	특혜수출	활용률	특혜수출	활용률	
석유	411	인조섬유	1	0.0	0	0.0	-100.0
	412	재생섬유	0	-	0	-	-
사	421	천연섬유사	65,819	99.8	89,065	98.7	35.3
	422	인조섬유(장섬유사)	12,303	55.3	38,612	89.8	213.8
	423	인조섬유(방적사)	62,590	99.9	80,729	99.8	29.0

가공도	MTI		2015(10월 누적)		2016(10월 누적)		증감률 ('16/'15)
	MTI3	소분류명	특혜수출	활용률	특혜수출	활용률	
직물	431	견직물	24	55.4	1	1.7	-99.7
	432	모직물	0	0.0	0	0.0	-
	433	면직물	16,267	95.7	18,037	98.2	10.9
	434	인조 장섬유직물	7,795	93.9	8,667	97.9	11.2
	435	인조 단섬유직물	15,249	96.2	13,128	97.0	-13.9
	436	편직물	2,645	57.8	3,573	61.4	35.1
	439	기타직물	72,597	97.2	67,487	98.1	-7.0
제품	441	의류	1,789,610	98.1	2,017,999	95.5	12.8
	449	기타 섬유제품	207,514	92.3	226,731	93.0	9.3
합계			2,252,419	97.0	2,564,034	95.4	13.8

자료: 연구자 직접 작성



자료: 연구자 직접 작성

* 베트남 특혜수입은 한-아세안 FTA 중 베트남과 및 한-베트남 FTA교역을 합한 것임

02

우리나라 섬유수출을 위한 EU-베트남 FTA 활용 필요성

최근 EU와 베트남이 타결한 EU-베트남 FTA는 우리나라 섬유수출 증대를 위한 좋은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 협정에서 한국산 섬유직물을 베트남 원산지 인정받을 수 있는 '교차누적'을 채택, 협정 발효시 우리나라 직물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이하에서 EU-베트남 FTA와 동 협정의 교차누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EU-베트남 FTA

1. 추진경과

EU와 베트남은 '12년 6월 FTA협상을 시작한 지 3년만인 '15년 8월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15년 12월 FTA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16년 2월 EU-베트남 FTA협정문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비준과정을 거친 뒤 '18년경 발효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는 2014년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어 베트남과 두 번째 FTA를 체결 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도 FTA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EU는 ASEAN과의 FTA체결을 목표로 2007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ASEAN회원국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일괄타결에 어려움을 겪자 개별국과의 협상타결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FTA타결 후, 기타 ASEAN국가와의 개별 발효로 EU-ASEAN FTA를 위한 디딤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2. 섬유 및 의류 제품 관세양허

EU-베트남 FTA에서 섬유, 사, 직물 등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사실상 대부분 철폐되었으나,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발효 후 4년~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EU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FTA협정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폴리에스테르 섬유(제5503.2000호 및 제5506.2000호) 2개 품목은 예외적으로 발효일로부터 4년 후 철폐될 예정이다.

의류제품의 경우 섬유 및 직물보다 양허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용 블라우스(제6106호), 유아용 의류(제6111호), 스타킹 및 양말(제6115호), 장갑(제6216호)등의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나, 가디건류(제6110호)는 6년 후, 면바지(제6204.62호) 품목의 경우 8년 후 철폐되는 등 품목별로 관세 양허스케줄이 상이하다.

나. EU-베트남 FTA 교차누적 규정

1. 교차누적이란

EU-베트남 FTA에서 우리기업이 주목해야할 사항은 원산지규정 제3조에 규정된 누적(Cumulation)규정이다. 본래 누적규정은 상대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자국에서 생산된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 총족을 용이하게 하는 보충적 원산지 규정이다.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재료(materials)만을 누적하는 부분누적을 채택하여 왔으나, 2009년 캐나다-페루에서는 최초로 교차누적(cross-cumulation)을 도입하여 주목받고 있다.

누적의 종류는 누적 영역, 원산지규정의 동일 여부, 누적 대상에 따라 부분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 교차누적으로 구분된다.

〈표 8〉 누적이 구분

구 분	누적 영역	원산지규정 동일성	누적 대상
부분누적	FTA 내	동일	재료
완전누적	FTA 내	동일	모든 활동
유사누적	FTA 간	동일	재료 또는 모든 활동
교차누적	FTA 간	상이	

누적 영역이란 누적이 적용되는 영역의 범위를 말하며, FTA내 누적(intra-FTA)과 FTA간 누적(inter-FTA)으로 구분된다. 원산지규정 동일성이란 누적 적용의 조건으로서 FTA협정간 원산지규정 동일여부를 말한다. 누적 대상이란 실질적으로 누적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하며, 재료누적(materials cumulation)과 모든 생산활동을 포함하는 생산누적(production cumulation)으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발효된 FTA중 캐나다는 교차누적을 도입한 유일한 국가²⁾로서, 현재 6개 협정에서 교차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교차누적은 섬유 및 자동차 부품에 한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누적을 적용하며, 누적 허용 범위는 각 협정문의 부속서(Annex; Product Specific Rules)에 명시하고 있다. 교차누적 허용 대상 및 조건은 협정별로 차이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6년 12월 WTO에 보고된 전체 지역무역협정 기준

(표 9) 교차누적을 체결한 협정 및 교차누적 대상국

FTA	발효일	누적가능 품목번호	기초재 누적국가
캐나다-페루	2009. 8. 1 발효	제50류-제63류	미국, 멕시코
		제8701호-제8705호	미국
캐나다-콜롬비아	2011. 8. 15 발효	제50류-제63류	미국, 멕시코
		제8701호-제8705호	미국
캐나다-요르단	2012. 10. 1 발효	미지정	미지정
캐나다-파나마	2013. 4. 1 발효	제8701호-제8705호	미국
캐나다-온두라스	2014. 10. 1 발효	제50류-제63류	미국, 멕시코
캐나다-한국	2015. 1. 1 발효	제8701호-제8706호	미국

자료: WTO에 신고된 협정문을 토대로 연구자 정리

2. 교차누적 법령조문 해설^③

EU-베트남 FTA협정 중 제2장(Title II)에서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Article 3)가 원산지 누적(Cumulation of origin)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SEAN과의 교차누적이며, 두 번째가 한국의 교차누적, 세 번째가 공통사항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과의 교차누적 조항인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제7항(한국산 직물 교차누적)

제7항은 EU-베트남 FTA이행에 있어 EU로 수출되는 의류제품에 한국산 직물이 원산지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산 직물은 베트남으로 수입된 후, 적어도 불인정 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직물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베트남산 재료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이하 법령의 국문 번역본은 연구자가 번역한 것이며, 정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힘

영문(원문)

7.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obtained there,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국문

7. 베트남에서 제6조(불인정 공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될 경우, 부속서5에 기재된 품목(제61류, 제62류)으로 추가가공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된다.

[참고]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

운송, 보관 시 제품상태가 양호하도록 유지하는 보존공정·포장의 해체 및 조립·세탁, 세척, 먼지·녹·기름 등의 제거·섬유제품의 다림질, 압착·단순 페인팅 및 광택 작업·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당류 착색,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혹은 전체 제분·과일, 견과류, 채소류에 대한 탈피, 탈각, 씨 제거·연마, 단순 분쇄, 단순 절단·등급화, 선별, 분류, 매칭·병, 캔, 플라스크(flasks), 가방, 케이스, 박스 등에 단순히 넣기 등 단순 포장 공정·제품의 단순한 혼합(mixing), 재료와 설탕의 혼합·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로고, 라벨 등의 부착 혹은 인쇄·제품의 희석, 변성, 건조·완전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부품으로의 단순 분해·전술된 공정 중 2개 이상 공정의 조합·동물 도살

② 제8항(한국산 직물에 적용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

제8항은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 원산지로 인정받는 '한국산' 직물은 한-EU FTA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물이 수출되는 경우 직물이 한-EU 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했다는 원산지 증빙이 필요하게 된다.

 영문(원문)

8.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7, the origin of the fabric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rules of origin applicable in the framework of the Union's preferential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for the rules set out in Annex II(a) to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국문

8. 제7항의 목적상, 원산지 물품의 정의와 행정협력 방식에 관한 부속서 2(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직물의 원산지는 한-EU FTA협정상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③ 제9항(한국산 직물 직접운송원칙)

제9항은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따른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한-EU FTA는 직접운송조항을 두고 있어, 특혜협정 적용을 위해서 한국-EU간 제3국 경유없이 직접운송되어야 하는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베트남간 직접운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원문)

9.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7,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fabric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Vietnam to be used in further working or processing shall be established by a proof of origin as if these fabrics were exported directly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on.

 국문

9. 제7항의 목적상, 추가작업 또는 공정에 사용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EU로 직접수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산지 증빙방식을 통하여 결정된다.

④ 제10항(누적을 위한 협력의무)

제10항은 교차누적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한국은 한-EU FTA협정에 따른 것과, 동 이행사실을 EU에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누적규정이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문(원문)

10. 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s 7 to 9 shall only apply provided that:
- (a) the Republic of Korea is applying with the Union a preferential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V of the GATT 1994;
 - (b) the Republic of Korea and Vietnam have undertaken and jointly notified to the Union their undertaking: -
 - (i) to comply or ensure compliance with the cumulation provided for by this provision, and -
 - (ii) to provide the administrative cooperation necessary to ensure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both with regard to the Union and between themselves.

국문

10. 제7항에서 제9항까지 규정된 누적규정은 다음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 가. 대한민국은 1994년 GATT 제24조에 따라 EU와 체결한 특혜협정 조항을 적용한다.
 - 나.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다음을 이행하고 EU에 이행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 (1) 동 조항에 규정된 누적조항을 준수 또는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 (2) EU와 한국, 베트남간 동 조항의 올바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⑤ 제11항(한국산 교차누적 사용표시)

제11항은 교차누적 적용을 통하여 한국산 직물 사용시에는 베트남이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에 특정 문구를 삽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최종 의류제품은 한국산 직물을 사용했다는 증거로서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EU-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 제3조7항의 적용)”을 표기해야 한다.

영문(원문)

11. Proofs of origin issued by Vietnam by application of paragraph 7 shall bear the following entry: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

국문

11. 제7항을 적용하여 베트남이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의 시작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

지금까지 EU-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제3조 누적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U-베트남 협정의 교차누적은 이미 발효된 캐나다의 교차누적과 다소 상이한 점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베트남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산 직물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한-EU FTA의 규정이라는 점이다.⁴⁾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교차누적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베트남간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또한 특이사항이다.

⁴⁾ 캐나다-페루 FTA에서는 페루로 수출되는 미국산(교차누적 대상국) 기초재는 캐나다-미국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다.

03

직물류 수출을 위한 원산지 규정분석

앞에서 한국산 직물이 EU-베트남 FTA상 베트남 원산지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한-EU FTA협정문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하에서는 한국산 직물에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직물류 PSR(한-EU FTA) 현황

다음은 직물에 해당하는 HS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와 호의 용어이다.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는 직물(woven fabrics)이 분류되며, 제60류에는 편물(knit fabrics)이 분류된다.

〈표 10〉 HS품목분류표 섬유 직물류^㉞

2단위	4단위	호의 용어
50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1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52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2	그 밖의 면직물
53	5309	아마직물
	5310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皮)섬유의 직물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㉞ 위의 표는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직물과 편물을 기준으로 선정한 4단위 호이며, 이외에도 제56류부터 제59류까지에 해당하는 직물도 의류에 사용될 수 있음에 주의.

2단위	4단위	호의 용어
54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6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60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5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나. 직물류 HS4단위별 PSR 해설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50류부터 55류까지의 한국산 직물류는 다음의 한-EU FTA PSR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표 11〉한-EU FTA 직물류(제50류~제55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1.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위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는 직물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2가지 조건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존재한다.

1.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고무사를 넣은’직물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어 단사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단사를 한국 내에서 직조하여 견직물을 만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재료는 '단사'이므로, 한국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직물을 만들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직물공정부터 수행되는 제직기준(fabric-forward)이 적용되며, 한국 내에서 제직되어야 한다.

다만, 방직용 재료가 혼합된 경우 주석 6에 따라 재료별로 최소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비원산지물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2. 기타(고무사를 넣지 않은 것)

고무사를 넣지 않은 '기타'직물의 경우 선택기준이 적용되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2-1 가공공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 코이어서,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종이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한국 내에서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해당 물품을 만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재료가 모두 섬유단계의 것이므로, 한국 내에서는 실을 만드는 공정부터 수행되어야 하며, 원사기준(yarn-forward)이 적용된다.

2-2 결합기준에 따라 날염공정과 20이상의 준비 및 마무리공정^⑥ 한국 내에서 수행되고, 투입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제품 공장도가격의 47.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원사기준 또는 제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실을 만들거나 직물을 만드는 공정을 한국 내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비원산지 직물을 가지고 2가지 이상의 준비 및 마무리 공정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고무사를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방직용 재료가 혼합된 경우 재료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최소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⑥ 정련, 표백, 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실밥 제거 등

제60류에 속하는 편물류는 다음의 한-EU FTA PSR01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표 12〉 한-EU FTA 편물류(제60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HS 제6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어 비원산지 재료는 아래 3가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한국 내에서 해당 물품을 제조·가공과정을 거쳐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① 천연섬유
- ②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인조스테이플섬유
- ③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재료가 모두 섬유단계의 것이므로, 실(yarn)을 제조하는 공정부터 한국에서 수행해야 하는 원산기준(yarn-forward)로 간주된다.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물은 한국 내에서 방적 또는 방사 후 편직(knit to fabric)되어야 한다.

다만, 방직용 재료가 혼합된 경우 한-EU FTA 주석 6에 따라 재료별로 최소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비원산지물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표 13〉 한-EU FTA 주석 6 : 재료별 최소허용기준 비율

사 용 재 료	최 소 허 용 기 준
20이상의 기초방직재료 혼방제품	모든 기초방직 재료는 총중량의 10% 이하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 사용 가능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를 결합하는 제품	그 사에 대하여는 총중량의 20% 이하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 사용 가능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투명 또는 색이 있는 접착제가 들어간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품	그 스트립에 대하여는 총중량의 30% 이하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 사용 가능

나. 직접운송원칙

FTA협정상 직접운송원칙이란 원산지 입증을 위한 요건으로서, 계약상대국에서 수입국까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운송되어야 할 것을 규정한 원칙이다. 직접운송원칙이 우리나라의 모든 FTA협정에 규정된 것은 아니며, 한-EU FTA, 한-아세안 FTA등 일부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표 14〉 우리나라 FTA 직접운송원칙 현황

구분	한-아세안, APTA	한-중, 한-EU	한-인도, 한-캐나다, 한-페루	기타 협정
직접운송원칙	있음	있음	3국 거래 금지	없음
증빙서류	통과선하증권	복합운송 또는 결합운송서류 등 단일운송서류	없음	없음

직접운송원칙이 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선적항으로부터 우리나라 양륙항까지 해당 화물이 그대로 운송되어 도착해야 한다. 즉, 당초 원산지 지위를 충족한 화물이 다른 제3국의 화물로 대체되거나, 원산지 지위를 잃을 정도의 가공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한-EU FTA에서와 같이 복합운송증권이 직접운송원칙의 증빙서류로서 사용되면 제3국 경유가 가능해지는데, 복합운송증권은 직접운송원칙의 요건으로서 원산지 충족을 가능하게 한다.

복합운송증권의 FBL약관에 따르면, 복합운송인은 수령한 화물을 본인 책임하에 인도장소까지 운송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령한 화물이 운송 도중 제3의 화물로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복합운송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다. 즉 정당한 복합운송증권의 제시는 선하증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상대국에서의 원산지 물품이 대체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까지 직접 운송되었다는 증빙이 될 수 있다.

EU-베트남 FTA에서 한국산 직물은 한-EU FTA상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된 직물은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해야 한다면,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빙으로서 단일운송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04

시사점

대외 수출여건 악화, 엔화약세,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 연이은 악재 속에 우리나라 수출은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2년(2015-2016) 연속 8%감소하였으며, 내년 경제성장률역시 3년 연속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당선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TPP 폐지, NAFTA 탈퇴 및 한-미 FTA재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 수출주요 품목인 철강, 세탁기 등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주요 FTA상대국이다.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이며, 베트남이 체결한 9개의 지역무역협정 중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와도 FTA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가능성이 높는데,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섬유원료를 수출하여 베트남에서 가공 후 다시 수입하는 가공무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수출보다 수입이 높아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산업 중 섬유류는 유일하게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EU-베트남 FTA에 도입된 교차누적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차누적은 추가적인 FTA재협상 없이 기초재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EU-베트남 FTA의 교차누적을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베트남 직물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와도 추가적으로 교차누적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총 15개의 주요국과 FTA를 발효시켰으므로 신규 FTA의 체결보다 기존 체결 FTA의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다. FTA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당국은 교차누적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외경제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02

산업별 FTA 이행 동향 : 겨울 레저용품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01

분석개요

24절기 중 20번째 절기인 소설(小雪)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겨울 레저 스포츠 시즌이 시작되었다.

최근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키, 보드 등 겨울철 레저용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FTA발효의 영향으로 관세인하 등에 따라 이들 용품들에 대한 가격인하 요인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발효 중인 FTA협정 중 겨울 레저용품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10개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동향과 FTA특혜 활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FTA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겨울 레저용품(HS 10단위 기준)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스키와 아이스스케이팅 및 이들의 부분품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겨울 레저용품 분석대상 구분

연번	HS코드	품명
1	4203213000	스키장갑(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6112201000	기타 스키슈트(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3	6112209000	기타 스키슈트(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4	6211201000	인조섬유제 스키슈트
5	6211209000	기타 스키슈트(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	6401921000	스키부츠(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벳·네일링·스크류링·플러깅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7	6402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 스키화·스노보드부츠(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6402911000	방한화(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	6403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 스키화·스노보드부츠(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포지션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9506110000	스키
11	9506120000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12	9506190000	기타 설상스키와 그 밖의 설상스키용품
13	9506700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02

협정 권역별 FTA활용 추이

① 유럽권 협정

겨울 레저용품의 EU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지역 중 EFTA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수입금액과는 달리 FTA활용실적에 있어서는 EFTA로부터의 수입이 96.2%로 89.7%인 EU에 비해 높은 편이나, 수입액은 EU지역의 1.2%에 불과하다.

② 아시아권 협정

아시아권에는 겨울 레저용품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중국을 비롯하여 세 번째로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어 분석대상 협정 중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수입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FTA활용실적에 있어서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95.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아세안이 87.8%로 나타난 반면, 중국은 68.5%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직 협정 발효 2년차에 불과하며 의류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10.4%)이 부과되고 있어 향후 협정 발효 연차가 길어질수록 활용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미주권 협정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가 분류되는 미주권 협정의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다양성에 비해 수입액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활용률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2.8%에 달하는데 반해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56.1%만 FTA특혜 적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④ 오세아니아권 협정

겨울 레저용품의 오세아니아권으로부터 수입은 분석대상 협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로 장비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반면, 총 수입액과 활용률에 있어서는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이 호주에 비해 다소 많고 활용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 권역별 겨울 레저용품 FTA활용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총액	특혜	특혜비중
유럽권 협정	FEF	84,042	80,882	96.2
	FEU	6,813,906	6,112,519	89.7
아시아권 협정	FAS	231,591	203,421	87.8
	FIN	12,670	0	0.0
	FVN	1,127,042	1,080,118	95.8
	FCN	16,233,394	11,115,430	68.5
미주권 협정	FUS	958,831	793,749	82.8
	FCA	116,028	65,123	56.1
오세아니아권 협정	FAU	3,178	299	9.4
	FNZ	3,940	720	18.3



03

품목별 수입 및 FTA활용 동향

1 유럽권 협정

유럽지역으로부터는 겨울 레저스포츠용 의류와 장비가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는데, 특히 EFTA지역으로부터는 장비 위주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EU지역으로부터는 의류와 장비가 골고루 수입되고 있음

한-EFTA FTA

EFTA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겨울 레저용품은 5개 종류로 이 중 3개 품목은 FTA특혜를 100% 적용받고 있다.

주로 수입되는 물품은 스키(HS 제9506.11.0000호)가 70,437천불로 가장 많으며 스키파스닝(HS 제9506.12.0000호)의 수입이 2,677천불 이루어졌는데, 스키의 경우 FTA특혜를 적용받고 있으나 스키파스닝의 경우 일반수입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EU FTA

겨울 레저스포츠가 발달한 EU지역으로부터는 분석대상 겨울 레저용품 중 스키장갑(HS 제4203.21.3000호)을 제외한 12개 품목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들 물품 중 2개 품목을 제외한 10개 품목이 FTA특혜를 적용하여 수입되었다.

EU의 경우 여타 협정에 비해 수입액이 많은데 특히 스키(HS 제 9506.11.0000호)가 2,480,942천불이 수입되었으며 이 중 95.7%인 2,373,706천불이 FTA특혜가 적용되었고, 스키부츠 등(HS 제6402.12.0000호)의 경우에도 전체 수입된 1,901,173천불 중 95.9%인 1,823,644천불이 FTA특혜를 적용하여 수입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입액이 적은 기타 스키슈트(HS 제6112.20.1000호) 등 2개 품목은 FTA특혜 적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對유럽권 겨울 레저용품 수입실적

(단위 : 천불, %)

HS코드	총액		특혜		특혜비중	
	FEF	FEU	FEF	FEU	FEF	FEU
6112201000	0	1,694	0	0	-	0.0
6112209000	0	2,042	0	2,042	-	100.0
6211201000	0	27,027	0	23,191	-	85.8
6211209000	0	1,478	0	572	-	38.7
6401921000	0	13,463	0	12,560	-	93.3
6402120000	483	1,901,173	0	1,823,644	0.0	95.9
6402911000	0	9,639	0	2,760	-	28.6
6403120000	0	1,999	0	0	-	0.0
9506110000	70,437	2,480,942	70,437	2,373,706	100.0	95.7
9506120000	2,677	988,399	0	805,688	0.0	81.5
9506190000	7,208	992,877	7,208	846,393	100.0	85.2
9506700000	3,237	393,173	3,237	221,963	100.0	56.5

주 : 특혜비중은 전체수입에 대한 FTA특혜 적용 비중임

2 아시아권 협정



아시아지역은 중국 및 베트남 등 다양한 물품이 생산되는 생산기지가 분포해 있는 지역으로 분석대상의 대부분이 생산되어 세계 각지로 공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다양한 겨울 레저용품을 수입하고 있음

특히, 베트남을 포함하여 아세안 지역으로부터는 의류 위주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는 의류에 대한 수입보다 방한화와 장비류에 대한 수입이 집중되고 있음

한-아세안 FTA

아세안지역으로부터는 분석대상 겨울 레저용품 중 9개 품목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들 물품 중 3개 품목을 제외한 6개 품목이 FTA특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방한화로 2016년 10개월 동안 122,802천불의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수입에 대해 FTA특혜가 적용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방한화 이외에 전체 수입에 대해 FTA특혜가 적용되어 수입된 품목은 7,155천불이 수입된 기타 스키슈트(HS 제6112.20.9000호)가 있다.

반면, 기타 스키슈트(HS 제6211.20.9000호)와 스키부츠(HS 제6401.92.1000호) 및 기타 설상스키 등(HS 제9506.19.0000호)은 각각 2,844천불, 184천불, 695천불이 수입된 바 있으나, FTA특혜 적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도 CEPA

인도로부터는 2개 품목만이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품목은 아이스스케이트 등(HS 제9506.70.0000호)과 스키부츠 등(HS 제6402.12.0000호)으로 수입액은 각각 9,070천불과 3,600천불이며, 이들 물품에 대한 FTA특혜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베트남 FTA

베트남으로부터는 분석대상 물품 중 6개 품목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은 방한화(HS 제6402.91.1000호)로 525,679천불이 수입되었으며 FTA특혜 적용비율 또한 100%에 달한다.

이어서 인조섬유제 스키슈트(HS 제6211.20.1000호)의 수입이 두 번째로 많은 220,076천불에 달하는데 동 품목 역시 FTA특혜 적용비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베트남 FTA가 여타 협정들과 비교하여 특혜 적용과 관련된 특징은 협정 발효 기간이 2년차로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협정들이 일부 품목의 경우 FTA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반해, 베트남의 경우 스키장갑(HS 제4203.21.3000호)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FTA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중 FTA

중국으로부터는 분석대상 10개 협정 중 유일하게 13개 품목이 모두 수입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아이스스케이트 등 (HS 제9506.70.0000호)으로 7,352,890천불의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72.6%가 FTA특혜가 적용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된 물품은 방한화(HS 제6402.91.1000호)인데 총 수입액은 3,303,650천불이며 이 중 60.1%인 1,984,617천불에 대해 FTA특혜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기타 스키슈트(HS 제6112.20.1000호) 등 비교적 수입액이 적은 3개 품목은 FTA활용이 전무하며, 전체 평균 활용률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8.5% 수준으로 향후 협정 이행연차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의 인하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활용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對아시아권 겨울 레저용품 수입실적

(단위 : 천불, %)

HS코드	전체				특혜				특혜비중			
	FAS	FIN	FVN	FCN	FAS	FIN	FVN	FCN	FAS	FIN	FVN	FCN
4203213000	10,499	0	44,482	359,810	7,664	0	19,911	95,185	73.0	-	44.8	26.5
6112201000	0	0	0	742	0	0	0	0	-	-	-	0.0
6112209000	7,155	0	0	92,868	7,155	0	0	0	100.0	-	-	0.0
6211201000	21,002	0	220,076	261,857	20,459	0	220,076	148,716	97.4	-	100.0	56.8
6211209000	2,844	0	29,836	21,463	0	0	27,875	2,174	0.0	-	93.4	10.1
6401921000	184	0	0	106,275	0	0	0	100,815	0.0	-	-	94.9
6402120000	14,113	3,600	116,683	2,061,460	5,255	0	113,995	1,529,252	37.2	0.0	97.7	74.2
6402911000	122,802	0	525,679	3,303,650	122,802	0	525,679	1,984,617	100.0	-	100.0	60.1
6403120000	0	0	0	16,474	0	0	0	0	-	-	-	0.0
9506110000	0	0	0	39,121	0	0	0	2,339	-	-	-	6.0
9506120000	0	0	0	1,609,732	0	0	0	1,330,264	-	-	-	82.6
9506190000	695	0	0	1,007,052	0	0	0	585,972	0.0	-	-	58.2
9506700000	52,297	9,070	190,286	7,352,890	40,086	0	172,582	5,336,096	76.7	0.0	90.7	72.6

주 : 특혜비중은 전체수입에 대한 FTA특혜 적용 비중임

③ 미주권 협정

미주권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으로부터는 일부 의류상품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장비류에 대한 수입에 집중되어 있으며 FTA특혜 적용에 있어서도 장비류에 대한 적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미 FTA

EU지역과 마찬가지로 겨울 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미국으로부터는 분석대상 겨울 레저용품 13개 품목 중 기타 스키슈트(HS 제 6112.20.1000호)와 인조섬유제 스키슈트(HS 제6211.20.1000호)를 제외한 11개 품목이 수입되었는데, 특히 아이스스케이트 등(HS 제9506.70.0000호)의 수입액이 582,105천불로 가장 많으며 FTA특혜적용 또한 85.6%로 높게 나타났다.

FTA특혜 적용의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11개 품목 중 FTA특혜 적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품목은 기타 스키슈트(HS 제6211.20.9000호)가 유일하고 나머지 품목의 경우 편차는 있으나 FTA특혜를 적용하여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중 방한화(HS 제 6402.91.1000호)는 전체 수입이 FTA특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캐나다 FTA

캐나다로부터는 분석대상 물품 중 6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입액은 아이스스케이트 등(HS 제9506.70.0000호)이 94,504천불로 가장 많으며, FTA특혜 적용비율 또한 55.2%로 발효 기간이 2년차에 불과한 데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수입현황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전체 6개 품목 중 3개 품목에 대해서는 FTA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입액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FTA활용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수입액이 적은 품목은 FTA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발견된다.

對미주권 겨울 레저용품 수입실적

(단위 : 천불, %)

HS코드	전체		특혜		특혜비중	
	FUS	FCA	FUS	FCA	FUS	FCA
4203213000	349	0	107	0	30.7	-
6112209000	1,400	0	161	0	11.5	-
6211209000	2,065	64	0	0	0.0	0.0
6401921000	2,919	0	1,191	0	40.8	-
6402120000	7,298	0	304	0	4.2	-
6402911000	1,154	12	1,154	0	100.0	0.0
6403120000	1,382	0	363	0	26.3	-
9506110000	112,603	1,221	87,223	933	77.5	76.4
9506120000	6,945	217	3,329	0	47.9	0.0
9506190000	240,611	20,010	201,354	12,020	83.7	60.1
9506700000	582,105	94,504	498,563	52,170	85.6	55.2

주 : 특혜비중은 전체수입에 대한 FTA특혜 적용 비중임

4 오세아니아권 협정

오세아니아권으로부터는 한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장비류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입금액은 많은 편이 아니며 FTA특혜 적용의 경우에도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스키파스닝을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

한-호주 FTA

호주로부터는 분석대상 물품 중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입액은 스키(HS 제9506.11.0000호)가 1,889천불로 가장 많으나 FTA특혜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스키파스닝(HS 제9506.12.0000호)은 수입액은 299천불에 불과하나 전체 수입이 FTA특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뉴질랜드 FTA

뉴질랜드로부터는 분석대상 물품 중 3개 물품만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기타 설상스키 등(HS 제9506.19.0000호)의 경우에만 3,746천불의 수입 중 19.2%의 FTA특혜 적용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2개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액도 적고 FTA특혜 적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對오세아니아권 겨울 레저용품 수입실적

(단위 : 천불, %)

HS코드	전체		특혜		특혜비중	
	FAU	FNZ	FAU	FNZ	FAU	FNZ
6211209000	289	0	0	0	0.0	-
9506110000	1,889	114	0	0	0.0	0.0
9506120000	299	0	299	-	100.0	-
9506190000	260	3,746	0	720	0.0	19.2
9506700000	441	80	0	0	0.0	0.0

주 : 특혜비중은 전체수입에 대한 FTA특혜 적용 비중임



04

향후 전망

분석대상인 겨울 레저용품의 경우 분석대상 협정 중 중국과 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만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율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을 제외한 모든 협정은 협정 발효 당시 즉시 철폐되었거나 이행연차가 경과하여 이미 0%의 특혜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물품은 향후 특혜세율의 인하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보다는 국내 시장수요의 변화가 수입량의 증감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겨울 레저스포츠 인구를 감안할 때 수입량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 레저용품 협정별 특혜세율

(단위 : %)

구분	MFN	FEF	FAS	FIN	FEU	FUS	FAU	FCA	FVN	FNZ	FCN
4203213000	13.0	0	0	0	0	0	0	0	0	0	0
6112201000	13.0	0	0	0	0	0	0	0	0	0	10.4
6112209000	13.0	0	0	0	0	0	0	0	0	0	10.4
6211201000	13.0	0	0	0	0	0	0	0	0	0	10.4
6211209000	13.0	0	0	0	0	0	0	0	0	0	10.4
6401921000	8.0	0	0	0	0	0	0	0	0	0	0
6402120000	13.0	0	0	0	0	0	0	0	0	0	7.8
6402911000	13.0	0	0	0	0	0	0	0	0	0	0
6403120000	13.0	0	0	0	0	0	0	0	0	0	0
9506110000	8.0	0	0	0	0	0	0	0	0	0	0
9506120000	8.0	0	0	0	0	0	0	0	0	0	0
9506190000	8.0	0	0	0	0	0	0	0	0	0	0
9506700000	8.0	0	0	0	0	0	0	0	0	2.6	0





FTA EXPERT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변화와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한-중 FTA 활용 1년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박세현 관세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한-중 FTA 발효 1년 대중수출 성과와 활용현황
정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조사담당관

01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변화와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01

한-중 FTA의 협정 내용과 의의

금년 12월 20일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한-중 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한-중 FTA 발효 1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 FTA의 협정내용과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중 FTA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그리고 협력 등 명실 공히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총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과 관련한 주요 협정내용을 분석해 보면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들의 중국 측 시장개방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고급생활가전(밥솥, 믹서 등), 패션 기능성의류,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들의 시장개방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철강(냉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석유화학(프로필렌, 에틸렌 등), 주력소재 시장도 일부 추가적인 개방을 하게 되었으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중국내 공급과잉(철강)이나 자동차, LCD 등 현지화 전략 추진 등을 감안하여 일부 품목의 시장만 개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섬유(면방, 모방, 화섬, 일부 의류), 베어링, 합판, 초산에틸, 판유리 등과 같이 국내시장에서 대중국 경쟁열위 품목들은 양허제외 또는 관세부분감축 등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발전되어 온 한-중 양국의 긴밀한 경제관계나 세계경제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 지리적 인접성, 생산품목들의 유사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중 FTA를 통해 최근 세계 최대의 고급재 내수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2016년 6월말 기준 명목 GDP가 11.4조 달러, 1인당 GDP가 약 8,000달러에 달하며,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인구가 5억 명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5조 7,000억 달러 규모였던 것이 2020년에는 9조 9,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KIEP).

이와 같이 최근 중국이 세계 최대의 고급재 내수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등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상품·서비스 등 고급재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생산품에 있어서도 우리와 매우 경합적이어서 한-중 FTA는 지금까지 체결한 어느 FTA보다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한-중 FTA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KOREA
CHINA ★ ★ ★ ★ ★
FTA FREE TRADE AGREEMENT

02

대중국 교역의 성과와 특징

〈표1〉 한국의 대중국 교역의존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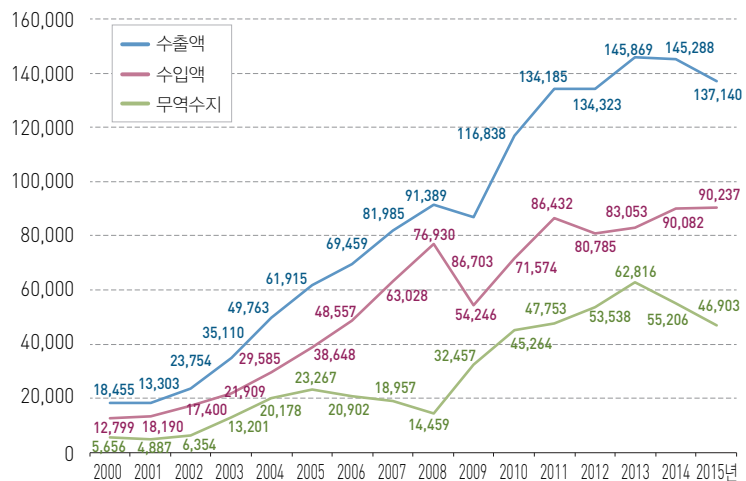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대세계 (A)	대중국 (B)	비중 (B/A)	대세계 (A)	대중국 (B)	비중 (B/A)	대세계 (A)	대중국 (B)	비중 (B/A)
2000	172,268	18,455	10.7	160,481	12,799	8	11,786	5,656	48
2005	284,419	61,915	21.8	261,238	38,648	14.8	23,180	23,267	100.4
2010	466,384	116,838	25.1	425,212	71,574	16.8	41,172	45,264	109.9
2014	572,665	145,288	25.4	525,515	90,082	17.1	47,150	55,206	117.1
2015	526,901	137,140	26	436,548	90,237	20.7	90,353	46,903	51.9
2016*	405,076	100,746	24.9	330,359	70,720	21.4	74,717	29,826	39.9

* 2016년은 1월-10월 누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6.

중국은 2015년 총수출이 2조 2천 805억 달러, 수입이 1조 6천 18억 달러에 달해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미국에 이은 제2의 수입국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중국은 우리 총수출의 약 4분의 1을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임과 동시에 총수입의 21.4%를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으로서 우리경제의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림1〉 한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표 1〉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대중국 수출은 2013년의 1,459억 달러를 정점으로 한 후 2014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902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대중국 수입비중이 20.7%까지 증가하였다. 그러한 결과 2013년에 628억 달러의 흑자였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2015년에는 46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표 2〉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의 성질별 교역비중을 살펴보면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출이 총수출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 수출은 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및 중간재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표적인 원료 및 중간재 수출품목으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부품(반도체 및 LCD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산업용전자제품(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수송기계(자동차 부품) 등이 총수출의 6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 품목들은 대기업의 수출품이어서 그동안 대중국 수출은 주로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품목의 성질별 교역비중(2015년)

(단위: 백만 달러, %)

품목구조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증감률	비중	수입액	증감률	비중	
총계	137,124	-5.6	100	90,250	0.2	100	46,874
원자재	37,647	-18.5	27	26,265	-10.7	29	11,382
자본재	92,042	1.2	67	44,358	5.9	49	47,684
소비재	7,342	-8.3	5	19,571	4.5	22	-12,229
직접소비재	1,007	8.5	1	3,245	-6.4	4	-2,238
내구소비재	4,111	-25.6	3	9,191	14.8	10	-5,080
비내구소비재	2,224	42.9	2	7,134	-1.7	8	-4,910
기타	93	-13.2	0	56	21.0	0	3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6

〈표3〉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의 교역비중(2015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10대 수출 품목				10대 수입 품목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총계	137,124	-5.6	100	총계	90,250	0.2	100
1	전자부품 (MTI 83)	54,736	0.9	40	전자부품 (MTI 83)	17,870	15.4	20
2	석유화학제품 (MTI 21)	17,090	-22.5	12	산업용전자제품 (MTI 81)	15,909	9.4	18
3	산업용전자제품 (MTI 81)	14,502	4.6	11	철강제품 (MTI 61)	10,091	-16.0	11
4	수송기계 (MTI 74)	8,104	-11.1	6	섬유제품 (MTI 44)	4,624	-1.1	5
5	정밀화학제품 (MTI 22)	4,740	19.7	3	정밀화학제품 (MTI 22)	4,461	-2.3	5
6	광물성연료 (MTI 13)	4,457	-37.0	3	가정용전자제품 (MTI 82)	2,737	0.2	3
7	기초산업기계 (MTI 71)	4,430	-7.3	3	농산물 (MTI 01)	2,422	-9.7	3
8	철강제품 (MTI 61)	3,935	-17.2	3	수송기계 (MTI 74)	2,368	6.5	3
9	플라스틱제품 (MTI 31)	2,699	-0.7	2	기초산업기계 (MTI 71)	2,644	-4.6	3
10	산업기계 (MTI 72)	2,237	-18.5	2	전선 (MTI 85)	2,157	1.8	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6

반면에 대중국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은 총 수입의 78%를 차지하며, 소비재 수입은 22%를 차지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과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주요 수입품인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철강제품이 총수입의 49%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품과 매우 경합적임을 알 수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기술추격과 관련 산업의 공급능력 확대는 이러한 현상을 갈수록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한-중 FTA 발효 후 우리의 대중국 교역성과는 어떠할까? 과연 우리의 기대만큼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였을까? 실제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감소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중국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한-중 FTA 발효 이후 10개월간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수입은 5.6% 감소하여 298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발효 후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수출 감소율이 수입 감소율보다 커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표4〉 한국의 최근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년/월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137,124	-5.6	90,250	0.2	46,874
1월	12,084	5.2	8,143	9.0	3,941
2월	9,928	-7.7	6,981	20.6	2,947
3월	11,868	-2.6	7,227	-5.0	4,641
4월	11,766	-5.2	7,648	-3.3	4,118
5월	10,927	-3.3	6,993	-7.0	3,934
6월	11,349	0.6	7,399	-2.0	3,950
7월	11,180	-6.5	7,626	2.7	3,554
8월	10,884	-9.2	7,159	5.7	3,725
9월	12,045	-5.2	7,585	-0.6	4,460
10월	12,493	-8.0	8,388	3.3	4,105
11월	11,611	-6.9	7,856	2.2	3,755
12월	10,990	-16.5	7,244	-15.8	3,746
2016년(1~10월)	100,746	-12.0	70,920	-5.6	29,826
1월	9,481	-21.5	6,895	-15.3	2,586
2월	8,642	-13.0	6,029	-13.6	2,613
3월	10,421	-12.2	7,299	1.0	3,122
4월	9,614	-18.3	7,100	-7.2	2,514
5월	9,929	-9.1	7,058	0.9	2,871
6월	10,183	-10.3	7,214	-2.5	2,969
7월	10,135	-9.3	7,006	-8.1	3,129
8월	10,306	-5.3	7,375	3.0	2,931
9월	10,956	-9.0	7,233	-4.6	3,723
10월	11,079	-11.3	7,710	-8.1	3,369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6

그러면 한-중 FTA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예측은 틀린 것일까? 그러나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중 FTA 발효 후 이러한 대 중국 교역의 감소는 한-중 FTA로 인한 효과라기보다는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한 중국의 해외수출수요 감소,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중국내 과잉투자로 인한 과잉생산설비 등으로 인한 중국경제의 침체와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등과 같은 중국 측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급속한 기술추격 등과 같은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협정내용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상황,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급속한 기술추격 그리고 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03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와 그 배경

〈표5〉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0 평균
성장률(%)	10.4	9.3	7.7	7.7	7.4	6.9	6.5-7.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연평균 10% 이상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중국경제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 9.3%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줄곧 7%대의 성장을 유지하다 2015년에는 드디어 25년 만에 처음으로 7% 이하인 6.9%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중국은 8%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바오빠(保八)정책을 포기하고 급기야 2012년에 중고속 성장(6~7%)의 뉴노멀(新常态, new normal)시대 진입을 선언하며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고, 향후의 성장률을 6.5%~7.0%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측면에서는 해외수출 중심에서 내수 소비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해외수요 부진과 과잉투자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금인상 등을 통해 민간소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공급측면에서는 가공무역 대신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의 전환이며, 이는 그동안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공무역 대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 및 자원 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스마트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아울러 가공무역을 억제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중국이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 배경은 바로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내수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중점을 두는 질적 개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즉, 중국은 개방 후 30년간 연평균 9.7%의 고속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일본과 한국 등 과거 고성장국가들의 사례와 경제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고속성장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6.6~7%의 중고속 성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인민일보는 뉴노멀(新常态)의 4대 특징으로 중고속성장, 구조변화, 성장동력 전환 및 불확실성의 증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동력으로서 소비중시 전략은, 가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불과(2013년 경상가격 기준)하여 안정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민간소비의 역할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하여 노동비용 상승을 감수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상승 및 이를 통한 소득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2~2013년 중 중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연평균 8.2%)은 여타 신흥국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둘째,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전략으로는 (1)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30년간 3단계의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2)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신도시화 정책을 추진하여 도시의 공간적 확장 도모, (3) 가공무역을 가장한 밀수, 선진국의 통상압력, 생산과잉 등 부작용으로 인해 가공무역 억제, (4) 산업구조 고도화 진행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최근 중국의 급속한 기술추격은 실제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향후 우

리의 대중국 수출입은 물론이고 산업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04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대중국 수출은 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이 대부분(94%)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의 수출은 5%에 불과하다. 중국의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한 가공무역 억제와 중국의 원재료 생산설비 증대에 의한 원재료 자급률 증대 등으로 인해 그동안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대중국 원료 및 중간재 수출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새로운 자본재나 중간재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산업용전자제품(MTI 81), 전자부품(MTI 83), 반도체(MTI 83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MTI 836), 섬유원료(MTI 41), 기초산업기계(MTI 71), 정밀기계(MTI 73), 자동차부품(MTI 742) 등과 같은 대부분의 제조업제품들은 대중국 경쟁력이 높아 수출특화 상태에 있으며, 관세율에 있어서도 불리한 것이 없어, 향후에도 대중국 비교우위를 유지하며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으로 이미 비교우위를 상실하였거나 상실해 가고 있는 가정용전자제품(MTI 82), 전선(MTI 85), 섬유사(MTI 42), 섬유제품(MTI 44), 철강제품(MTI 61) 등과 같은 산업들은 한-중 FTA 체결로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입이 증가될 경우 국산품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가공무역 억제와 급속한 기술추격에 의해 중국이 지금까지 수직분업 형태로 수입하던 원료나 중간부품 등의 수입대체화가 진행되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품이 수평분업형태로 역수입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개방 이후 가공무역 중심의 노동집약적 저가공산품의 세계적 공급기지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1인당 GDP 성장으로 인한 신중산층의 증가와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세계 최대 내수소비시장으로 발전하면서 고급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소득증대와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소비재 수입 비중의 증가(2013년 9.8%) 등을 감안할 때 우리도 기존의 자본재 및 중간재 위주의 가공무역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신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탄력성이 높은 고급소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중국의 내수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 소비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며, 한국은 ASEAN, 일본, 영국에 이어 중국의 6위 소비재 수입대상국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소비재는 가전과 수송기계(대한민국 총소비재 수입의 62%)이며, 최근 들어 농산물, 뷰티용품, 화학제품, 주방용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전제품은 대한민국 소비재 수입의 37%를 차지하는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이다. 농림수산품은 대한민국 소비재 수입의 8%를 차지하며, 주로 기호식품(31%), 축산가공품(66%), 농산가공품(45%), 어류(30%) 등이다

한-중 FTA는 분명히 경쟁국들에 비해 이러한 중국 내수시장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들의 중국 측 시장개방을 활용하여 고급생활가전(밥솥, 믹서 등), 패션 기능성의류,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등 고부가가치의 고급소비재들로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급속한 중국의 기술추격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비고급의 일반소비재들은 이미 대부분 자급하고 있거나 역수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는 차별화된 고급 소비재를 개발하여 수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내수 확대에 따른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증대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중 FTA로 인한 우리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가 지닌 비교우위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국의 기업들과 산업협력 구도를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중 FTA의 발효로 그동안 관세 덕분에 버티어 온 우리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 못한 섬유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중국 비교열위품목이나 경쟁품목은 물론이고 대중국 비교우위품목으로 분류된 수혜산업이라 할지라도 FTA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될 경우, 저임금과 향상된 중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저가의 중국산 경쟁상품이 밀려들어올 경우 피해는 예상 밖으로 심각할 수도 있다. 산업별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시장의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의 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한-중 FTA 발효에 대한 원산지기준 및 품목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그 동안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에 있어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이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생산설비의 대규모 증설 등을 감안할 때, 한-중 FTA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중국의 철강과 석유화학생산설비의 대규모 증설은 우리의 관련 산업에는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기술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온 전자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기술력 향상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을 제치고 중국대륙의 용으로 등장한 스마트폰 샤오미(Xiaomi),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린 중국 1등 검색엔진인 바이두(Baidu), '창의적 모방'으로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텐센트(Tencent), 아마존과 이베이를 합한 것 보다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한 알리바바(Alibaba), 그리고 세계 최대의 가전업체로 성장한 하이얼(Haier) 등은 중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대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위협요인들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와 경영효율화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를 전후한 경제개발 초기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해온 한국이 199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저임금과 일본의 높은 기술력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소위 '넛크래커(Nut Cracker)'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이 자동차나 IT 등의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은 가격은 일본보다 낮고 기술은 중국보다 높은 소위 '역(逆) 넛크래커' 현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는 중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고품질이면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저' 현상으로 인한 일본제품의 저가격으로 인한 이중고(二重苦), 소위 '신 넛크래커'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선진국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넛크래커'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효율화'와 연구개발을 통한 '창조적 기술혁신'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차별적 고급화를 도모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가 가져다주는 기회요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하여 경영효율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기업들도 중국 현지기업들과 적극적인 제휴를 함으로써 중국내수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현지에 진출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중국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여러 FTA 상대국들에 특혜관세혜택을 받으며 수출할 수 있는 덤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기업들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중 FTA는 중국의 부품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02

한-중 FTA 활용 1년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박세현 관세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01

한-중 FTA 협정 발효 1년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어 활용된지 어느덧 1년이 도래하였다.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경쟁국들 보다 한발 앞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 우리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기회가 되는 중국과의 FTA발효 후 1년의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한-중 FTA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고민하여 향후 FTA 활용성을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고자 한다.



02

한-중 FTA 활용 주요 애로사항

FTA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즉시 제출 요구

수입 통관 시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세관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은 통관 시 필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워 선적 기간이 길지 않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통관이 지체되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중FTA 협정문 제3.17조】

협정에 따르면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고, 수입세관 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소지 후 세관 요구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에서는 무조건 원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내용에 대해 공업용 유리, 도자제품과 원산지 증명서 원본발송 부담에 관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례1) 공업용 유리, 도자제품

한국은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중국은 수입통관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함.

수입통관 단계에서 반드시 원본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 서류보다 수출물품이 먼저 도착하여 원산지 서류가 도착하기까지 FTA특혜적용을 받지 못해 물류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수출자 비용 손실이 발생.

[사례2] 원산지증명서 원본발송 부담

컬러필터 등을 생산, 수출 하는 A사는 중국으로 반복적인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매 수출건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뒤 수입자에게 특송으로 발송함.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등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보다 도착이 늦어져 통관이 지체되고 추가 물류비용 등이 발생함.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의 빠른 정착으로 원본제출로 인한 통관지체 및 추가 비용 부담을 보다 신속히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한국과 중국은 현재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의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서류 제출로 요구하고 있는바, 상호간에 보다 효율적인 FTA활용을 위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한-중 FTA 중국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에 대한 보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중국측 발행 원산지증명서 1란(수출자)과 13란(수출자 서명)에 실제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대외무역사업자)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였고 이에 따른 처리 지침(16.3)으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 1란, 13란은 실제수출자가 기재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실제수출자외에 수출대행자의 병기도 허용을 하고 있다.

상기 지침에 대한 새로운 지침으로서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인 심사 등을 위한 지침(16.7)에는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조회되고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실제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바, 관련 사항이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확인이 되면 FTA 특혜 적용이 된다. 그러나 이는

통관당시, 즉 협정적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실제 협정문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에도 수출대행자의 서명만으로 추후 원산지검증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는 없는 실정이다.

FTA를 활용하고 특혜적용을 받을 업체들은 협정적용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므로 상기 사항에 대해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으로 확인이 되어 특혜적용을 하였다면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의 서명이 없어도 사후검증시 동일한 사안으로 특혜적용이 부인되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불안감이 존재하기에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증명서 제6번 란의 연번 제한 문제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제6란에 물품(모델/규격별)의 연번은 최대 20개까지 기재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 연번이 20을 초과할 경우 새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 사항역시 원산지증명서 추가 발급에 따른 비용 증가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사례1) 원산지증명서 추가 발급에 따른 비용 증가

철강제 연결구를 생산하는 C사는 제품 특성상 모델, 규격이 다양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물품 연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 수출시 마다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게 되어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발생함.

협정문 부속서3-다 원산지증명서 뒷면 기재요령에는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이 20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모델, 규격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업체는 매년 추가적인 C/O 발급 비용이 발생됨.

이는 다른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모델, 규격이 많은 품목들의 경우 별지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기재할 수 있는 연번을 대폭 늘려서 FTA를 활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인정 거부와 통관시 관세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지재 권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 바 있다. 해당내용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다.

원산지증명서 인정 거부

[사례1] 유자차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인정 거부

한국의 수출업체 B사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의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중국 현지 해관에서 한국의 관방(官方-정부기관)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아 특혜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음.

[한-중 FTA 협정문 제3.16조]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권한 있는 각 기관의 명칭과 관련 연락처를 통보하고, 권한 있는 각 기관이 사용하는 관련 양식 및 문서에 대한 모든 인정 견본의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이며, 두 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모두 동일하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이나 중국에서는 상기 사례와 같이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해당 사례의 경우 유관기관 및 세관 차원에서 중국 측과 조율하여 해결을 하였으나, 협정문의 근거와 명확한 근거 없이 FTA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기관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사례2) 이면 미인쇄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중국으로 유압기기, 산업기계 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한중 FTA 발효 이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에 원본을 발송하였으나 현지 해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이면이 인쇄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본으로 인정 불가능하다고 반려함.

한-중 FTA 부속서 3-다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이면 지침 및 규정에 따르면,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면 지침이 미인쇄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원본 불인정.

동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관세당국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관 시 관세행정의 일관성 부족

(사례1) 자의적 품목 분류로 과도한 서류 요구

식품 수출 시 분류에 따라 통관 절차가 상이한데 지역에 따라 일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임에도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 : 인삼)

* 중국의 식품은 일반식품, 신자원식품,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며 보건식품은 반드시 수출 시 위생행정허가 획득 필요

인삼은 5년근까지 신자원식품, 6년근부터는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며 신자원식품은 일반식품과 동일하게 수출이 가능하나, 일부 CIQ*에서 5년근 이하의 인삼제품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해 통관이 지체되거나 거부됨.

* CIQ : Customs, Immigration & Quarantine /
세관출입국관리검역

[사례2] 지역에 따라 통관 승인 여부 상이

서울 소재 M사는 중국 심천항을 통해 치약을 수출하고 동일한 제품을 대련항으로 수출하려고 하자 치약을 인체에 닿는 제품으로 분류하여 화장품과 유사한 통관지침을 적용함.

동일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국내 지역에 따라 통관처리 방식과 분류체계, 요구사항 등이 상이하여 수출업체의 혼란이 발생함

세관 및 유관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관세 당국에게 행정업무의 일치성에 대한 요청 등의 협업 필요성이 있음.

지재권

지재권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관련 대응에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적절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례1] 지재권 분쟁 시 과도한 비용 발생

그릇 등 각종 용기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B사는 자신과 간접적으로 사업관계에 있던 중국 업체가 자사의 상표를 출원하였다는 사실을 도중에 인지하여 상표국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국 업체를 권리자로 하여 상표국에 최종 등록됨.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으나, 심판·소송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워 자사의 상표를 포기할 상황
중국 상표 출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으나,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부재함.

[사례2]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

D사는 문자(영문, 중문)와 숫자로 구성된 자사 상표를 중국에 출원하고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수출해오고 있으나, 1년 후 상표국에서는 유사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됨.

상표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상표 등록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고, 유사상표를 보유한 자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상표가 확정될 때까지 영업활동에 소극적이 됨

중국 지재권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중국 내 등록된 상표를 직접 검색해볼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지식 전파 필요.

03**결론**

한-중 FTA 발효1년을 돌아보고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 발생한 애로사항 등을 정리해 보았다. 모든 사례들을 담을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기본 전제 요건으로 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와 이를 바탕으로 협정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언급한 사례들 중에는 통관당시의 애로사항 사례와 사후심사시 리스크 존재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를 참조하여 사전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고, 협정문 사항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와 관세당국 차원에서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세당국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또한, FTA는 특혜를 받는 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형식적, 실질적 원산지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FTA협정상 원산지규정과 의무사항 등을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03

한-중 FTA 발효 1년 대중수출 성과와 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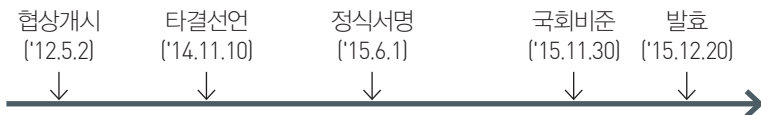
정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조사담당관

01

최근 대중수출 추이

2016년 12월 20일로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6년 현재 한-중 FTA 2년차로 특혜 관세율이 적용중이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에 따라 20일~31일간 1년차 관세인하율이 적용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출 품목의 기존 관세율이 10%이고 10년동안 관세를 철폐키로 했을 경우 2016년 그 품목의 관세율은 2년차 인하 관세율 즉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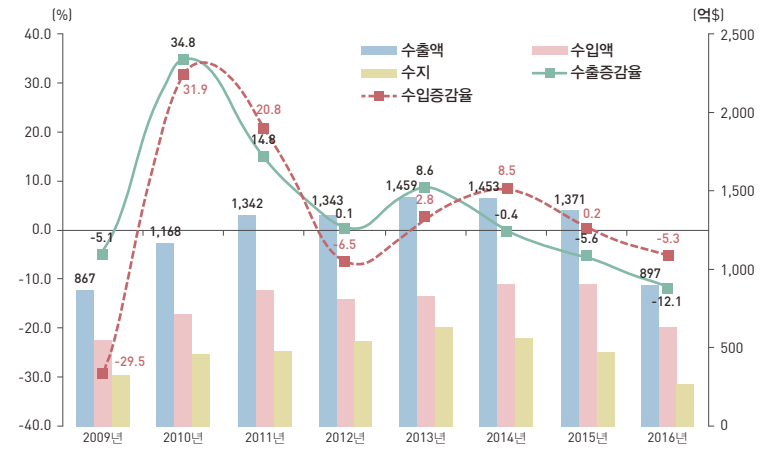
한중 FTA 과정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FTA 활용 확대와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한-중 FTA 발효 이후 대중수출 성과를 검토하고 우리기업의 FTA 활용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한-중 FTA 활용 사례를 발굴해 향후 한-중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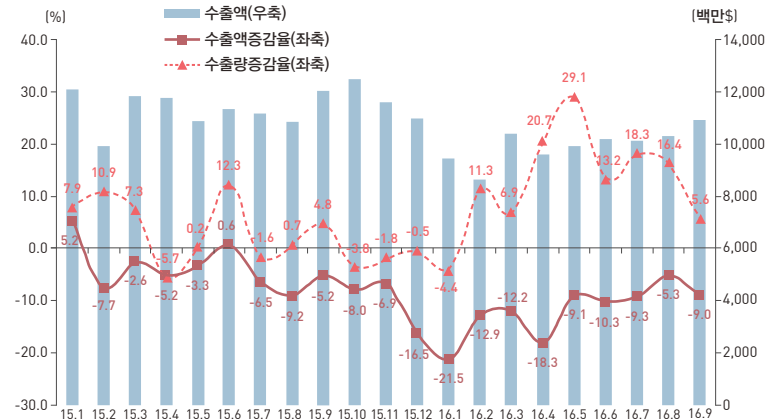
최근 2~3년 간 대중수출 급락세로 한-중 FTA의 수출 촉진율을 알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중수출 증가율이 '15년 -5.6%에 이어 올해 1~9월 -12.1로 급락했다. 월별로는 완화되고 있으나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연도별)



자료 : GTA

대중 수출증가율(월별)



자료 : 관세청

[대중수출 급락 원인]

2014년 이후 대중수출이 급락한 데는 중국 자체 요인과 글로벌 환경 요인,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 (중국의 경기 둔화) 중국의 성장을 둔화에 따른 소비 둔화가 대중수출 둔화를 초래
 - 주요 공산품 판매 증가율 변화('14년 → '16년 상반기, %) : 전체 9.8→7.6; 의류신발 10.9→7.0; 화장품류 10.0→8.9; 통신기기 32.7→14.9
- ▶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중국의 수출 둔화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
 - 세계 수입증가율 '14년 0.3% → '15년 -12.0%; 중국의 수출증가율 '14년 6.0% → '16년 1~9월 -6.8
- ▶ (글로벌 유가하락) 원유가격 하락으로 우리의 대중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 단가하락으로 수출 급감
 - 주요 석유화학제품 단가하락율('14년~'16년, %) : 파라자일렌 -41.2, 스티렌 -37.4, 프로필렌 -50.5, ABS -27.4
- ▶ (밸류체인 변화) 주요 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으로 대중 수출 감소하고 베트남 등 신규 생산거점 수출 증가
 - '16년 1~10월 대중수출 -12.0인 반면 대베트남 수출 13.0% 확대

다만, 중국의 대한민국 전체 수입에 비해 한-중 FTA 수혜품목의 수입 감소율이 한-중 FTA가 대중수출 감소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대중수출 급락세가 가중되어 한-중 FTA의 수출확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수출감소 완화 효과는 확인된다. 올해 1~10월 중국의 대한민국 전체 수입 9.6% 감소한 반면 FTA 수혜품목의 수입은 5.7% 감소에 그쳤다. ❶

❶ 2016년도 조정관세 감안했으며, 아태협정세율(APTA, 한-중 FTA 발효 초기여서 일부 품목은 아태협정세율이 더 이익일 수 있음은 감안하지 않았다.

02

1. 업종별 대중수출 및 FTA 활용 성과 개관

한-중 FTA 업종별 효과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이 양호한 품목은 대체로 FTA 활용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9월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업종은 산업용 원자재(가공), 부품, 수송장비용 부품, 반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가정용 가공식품 등으로 이들 품목은 모두 FTA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이 활발한데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업종은 연료 및 윤활유, 자본재, 내구소비재 등 3개 업종에 불과하다.

중국의 업종별 대한민국 수입성과 및 FTA 활용률

구분/업종	BEC	15년(1~9월)		16년(1~9월)		증가율 ('16 [1~9])	수입 점유 증가율	FTA 활용수준*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전체		126,807,490	100.0	114,688,984	100.0	- 9.6	0.0		
반제품	산업원자재(가공)	22	31,623,235	24.9	29,606,787	25.8	- 6.4	0.9	상
	연료 및 윤활유	32	3,552,873	2.8	3,147,420	2.7	76.3	-0.1	상
부품 · 부분품	부품 및 부분품	42	54,677,312	43.1	50,896,060	44.4	- 6.9	1.3	하
	수송장비용 부품	53	4,824,423	3.8	5,078,004	4.4	5.3	0.6	중
자본재	자본재(기계, 설비)	41	26,662,522	21.0	21,139,082	18.4	- 20.7	-2.6	하
	산업용 운송장비	521	81,231	0.1	82,489	0.1	1.5	0.0	하
소비재	승용차	51	758,913	0.6	90,398	0.1	- 88.1	-0.5	무
	내구소비재	61	572,946	0.5	454,185	0.4	- 20.7	-0.1	중
	반내구소비재	62	821,467	0.6	812,509	0.7	- 1.1	0.1	중
	비내구소비재	63	1,573,341	1.2	1,718,788	1.5	9.2	0.3	중
	비산업용 운송장비	522	590	0.0	627	0.0	6.3	0.0	하
식품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	111	82	0.0	813	0.0	886.6	0.0	하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	121	15,990	0.0	13,787	0.0	- 13.8	0.0	하
	가정용 미가공 식음료	112	61,699	0.0	92,470	0.1	49.9	0.0	상
	가정용 가공식품	122	474,580	0.4	539,753	0.5	13.7	0.1	상

* 2016년 1~4월 대한상의를 통해 발급(전체 발급액의 80%가량 차지)된 원산지증명(C/I)발급액이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 다만, 전체 발급이 아닌(관세청 통한 원산지 발급 노력) 통계 분석 시점이 발효 초기인 점을 감안해 상대적 등급(상, 중, 하)으로만 표기

* 자료 : 중국해관통계, BEC분류기준, 대한상의 자료를 계산, 취합해 자체 작성

2. 소비재

1) 내구소비재

- ▶ [설명] 내구소비재(Durable Consumer Goods) :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기간의 사용에 견디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거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만, 그 후에는 소액의 유지비만 필요한 특징을 가진 제품
예) 가전제품, 조명기기, 그림, 안경, 위생용품, 목제품, 플라스틱제품, 공예품, 생활용품, 시계, 악기, 완구

가전제품 등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가리키며 BEC 분류상 61로 표기되고, 대중수출의 0.4%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내구소비재 기준 수입관세율이 대체로 높고 한-중 FTA에서 철폐 수준이 높음에도 활용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FTA 활용률(원산지증명 신청액의 대한국 수입비중)]

- ▶ 본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활용률은 2016년 1~4월간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우리 기업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 신청액이 같은 기간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 것임
 - 대한상의의 협조로 자료의 활용이 가능했음을 밝히며, 대한상을 통한 원산지증명 발급 비중이 약 80%로 알려지고 있고, 대한상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곧바로 해당 품목의 대중수출에 활용되지는 않음을 감안할때 본 보고서의 활용률 수치와 실제 활용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16년 관세철폐 수혜품목 가운데 FTA 활용(원산지증명 발급)이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치과용 X선 기기, 기타 가구, 각종 안테나, 기타 X선 장비(내과, 외과, 수의과용) 등이 있다. 반면 관세철폐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낮은 품목으로는 타임레지스터와 레코더, 자동차용 라디오수신기, 바닥 깔개, 건반현악기, 팬(테이블, 바닥용) 등이 있다.

내구소비재 품목별 대중수출 성과 및 한-중 FTA 효과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원산지증명 (이하 C/O) 발급율
1	전기식 라디에이터	851621	14	40.2	-	40.2	35	E	0.0
2	타임레지스터와 타임레코더	910610	238	25.0	703.9	21.7	16	10	0.0
3	기타 라디오방송수신기기 (자동차용)	852729	6,377	34.4	-11.2	21.3	8	15	0.0
4	인조방직제 양탄자와 바닥깔개 (더후트)	570330	4,244	47.4	77.2	14.4	10	5	0.3
5	건반현악기	920190	91	13.8	-	13.8	17.5	10	0.0
6	원심탈수기 내장 세탁기 (10KG이하)	845012	3	14.5	-	7.3	24.9	E	-
7	플라스틱제 가구	940370	1,136	9.2	81.3	3.3	0	0	0.0
8	자명종시계 (баттери/축전기/전력구동식)	910511	68	3.2	4,878.4	3.1	23	20	0.0
9	그밖의 의자	940180	1,657	4.2	143.6	2.9	0	0	2.2
10	X선 기기(치과용)	902213	15,612	24.2	33.4	2.6	4	5	20.8
11	마이크로웨이브오븐	851650	221	3.9	183.8	2.3	8	10	0.0
12	모발제거기	851030	16	2.2	375.7	1.9	20	15	-
13	폴리아미드제양탄자와 바닥깔개 (더후트)	570320	15,042	41.6	-11.9	1.8	10	20	1.3
14	악기용 현	920930	71	1.5	139.8	1.0	17.5	10	0.0
15	기타 가구	940389	299	1.4	101.1	0.9	0	0	4.6
16	기타 사진장비	900669	285	5.0	-6.7	0.7	18	10,20	0.0
17	기타 시계	910390	2	0.7	23,400.0	0.6	20	15	0.0
18	체스트형 냉동고(800L이하)	841830	44	1.9	-1.7	0.5	20.7	20,E	0.0
19	각종안테나와 반사식안테나	852910	21,901	10.7	15.1	0.4	1.5	0,10	7.6
20	뮤지컬박스	920810	3	1.0	68.5	0.4	22	20	0.0
21	천연진주/양식진주 제품	711610	5	0.4	519.3	0.3	35	E	0.0
22	토스터	851672	11	2.9	-50.4	0.3	32	E	0.0
23	기타 X선장비 (내과용 · 외과용 · 수의과용)	902214	8,377	1.2	40.6	0.3	4	5	8.5
24	기타 현악기	920290	30	0.3	872.9	0.2	17.5	10	0.0
25	테이블 · 바닥등용 팬 (125w이하 전동기 장착)	841451	1,876	1.8	43.2	0.2	13.1	10,15	0.0
26	기타 귀금속 제품	711319	1,334	0.2	352.0	0.2	23.8	E	35.8
27	기타 시계	910591	58	1.9	16.4	0.1	13	0,20	0.0
28	귀석/반귀석 제품	711620	139	0.1	-38.8	0.1	35	E	0.0
29	기타 종이/펄프 제품	482390	9,542	9.1	6.5	0.0	7.5	E	0.0
30	의자(메탈프레임)	940179	76	0.6	-10.4	0.0	0	0	0.0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액 기준(이하 동일)

* 품목소개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0.1% 이상 75개 품목 가운데, FTA 발효 이후(2016년 1-9월)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30개 품목

2) 반(半)내구소비재

- ▶ (설명) 반내구소비재(Semi-durable Consumer goods) :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의류는 상당 기간의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이지만 반내구소비재로 분류
예) 의류, 인쇄물, 귀금속장식품, 물감, 잉크, 화장품, 가방, 운동용품, 간행물, 인쇄물, 양탄자, 섬유, 신발, 이불, 문구, 유리제품 등

의류(외투) 등 1년 전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가리키며 BEC 분류상 62로 표기되고, 대중수출의 0.7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나 빠른 속도로 비중이 늘어나는 중이다.

중국의 반내구소비재의 경우 기존 수입관세율이 대체로 높고 한-중 FTA에서 철폐 수준이 높음에 비춰 활용률은 보통 수준으로 기대효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주요 품목별 활용 상황을 보면, 대중 수출 증가율이 높은 품목 가운데 가죽제 가방(컨테이너)(5.9%), 합섬제 여성용 바지(51.4%), 칫솔(23.5%), 남성용 바지(5.0%), 남성용 셔츠(12.5%) 등으로 다소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이외에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많은 실정이다. 내구소비재에 비해서는 활용률이 높으나 상당수 품목의 관세가 비교적 빠른 10년내 철폐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활용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반내구소비재 품목별 대중수출 성과 및 한-중 FTA 효과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방직섬유제 남자용양상블(편직, 크로세)	610329	11	28.2	-	28.2	18	20	0.0
2	메리야스/뜨개질편물 실내용품 (침구제외)	630491	5,996	82.8	129.5	21.1	14	10	0.0
3	전기식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 스탠드램프	940520	2,910	23.5	236.9	14.0	20	15	0.0
4	칼(기구용 제외)과 칼날조합 세트	821110	232	11.6	10,356.1	11.4	10	10	0.0
5	면제 여자용슈트(직물제)	620412	0	11.2	-	11.2	17.5	10	-
6	기타 세라믹전기기기	691190	71	9.0	8,073.5	8.8	20	10	0.0
7	합성섬유제 여자용 양상블(편직, 크로세)	610423	34	7.9	168.2	7.3	18	20	0.0
8	합성섬유제 남자용/소년용 수영복 (편직, 크로세)	611231	68	10.5	56.6	7.2	12.3	10	0.0
9	포켓용품(플라스틱/방직섬유제)	420232	6,480	11.4	126.2	7.1	14	10	4.0
10	블레이저, 셔츠(방직섬유제)	610690	54	6.9	330.6	5.5	11.7	10	0.0
11	기타 게임기	950490	1,004	6.9	267.5	5.4	0	0	0.0
12	기타 스포, 주방용품(스포츠, 포크, 국자 등)	821599	379	10.0	80.4	5.3	10	10	1.9
13	컨테이너, 백(플라스틱, 섬유제)	420292	6,351	5.9	557.7	4.7	8.5	10	5.9
14	제5602호나 제5603호 직물제	621010	38	6.5	88.3	4.2	14	10	0.0
15	컨테이너, 백(가죽제)	420291	2,896	9.3	289.5	4.1	8.5	10	5.4
16	합성제 여자용 바지(편직, 크로세)	610463	2,710	5.7	396.4	3.9	12.3	10	51.4
17	모자	650699	1,437	19.1	25.9	3.9	12.8	20	2.9
18	여성용 수영복(니트, 크로세 이외)	621112	26	4.3	908.9	3.8	11.7	10	0.0
19	치솔	960321	8,369	20.8	55.1	3.6	10	20	23.5
20	양모, 섬유모제 스커트, 치마바지 (편직, 크로세)	610451	76	4.9	297.4	3.5	10.8	10	0.0
21	우산류	660110	13	4.2	1,120.3	3.4	14	10	0.0
22	양모, 섬유모제 남자용 바지(직물제)	620341	2,898	10.8	38.1	3.3	11.7	10	5.0
23	합성섬유제 여자용 양상블(직물제)	620423	105	3.3	10,024.8	3.3	13.8	15	0.0
24	그밖의 의류(6202.11~6202.19호 상당)	621030	31	3.5	854.6	2.9	11.7	10	-
25	남자용 셔츠(기타 방직섬유제)	610590	162	3.7	255.5	2.9	11.7	10	12.5
26	양모, 섬유모 남자용 자켓, 블레이저 (직물제)	620331	4,134	8.5	27.6	2.7	11.7	10	5.9
27	면제 여자용자켓(편직, 크로세)	610432	1,039	6.2	72.3	2.6	13.6	10	0.0
28	식탁용 칼	821191	52	2.8	1,221.8	2.5	10	10	115.1
29	의류(5903 · 5906 · 5907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611300	49	2.7	1,087.4	2.5	11.7	10	-
30	남자용 셔츠(인조섬유제)	610520	2,088	16.0	44.0	2.5	12.3	10	54.4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 이상 202개 품목 가운데 수입시장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3) 비(非)내구소비재

- ▶ (설명) 비내구소비재 (Non-durable Consumer goods) : 직접 소비재, 즉 사용과 동시에 소멸되는 제품
- 예) 의류(언더웨어), 살충제, 살균제, 면도용품, 화장품, 의약품, 비누, 계면활성제, 접착제, 낚시용품 등

비내구소비재란 직접 소비재, 즉 사용과 동시에 소멸되는 제품으로 의류(내의), 살충제, 살균제, 면도용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가리키며 BEC 분류상 63으로 표기하고, 대중수출의 1.44%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증가율 9.2%로 양호하고, 수입 점유증가율도 0.3% 확대되는 등 수출 성과도 양호하다.

FTA 활용 상황을 보면, 중국의 반내구소비재 기존 수입관세율이 대체로 높고 한-중 FTA에서 철폐 수준이 높음에 비춰 비내구소비재의 활용률 역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품목 활용 현황을 보면, 주요 품목(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빨리 높아지는 품목)의 FTA 활용률은 니트 코르셋(110.1%), 장갑(플라스틱, 고무 침투 및 도포)(5.7%), 기타 향수 및 화장품 (9.6%), 트레이 및 접시 플레이트(32.8%), 고무제 바닥갈개 및 매트 (5.0%) 등이다. 이외 품목의 FTA 활용률은 낮은 실정이다.

주요 비내구소비재의 대중 수출성과와 FTA 활용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지제 손수건, 티슈, 화장지, 타올	481820	3,844	56.8	164.9	30.6	7.5	E	0.2
2	견사·견방사(소매용)	500600	13	24.7	-	24.7	6	0	-
3	인조섬유제 넥타이(직물제)	621520	70	22.5	461.9	17.2	14.4	10	0.0
4	팬티, 브리프	620719	10	13.8	-7.9	12.0	14.4	10	0.0
5	슬립, 페티코트(기타 방직섬유제)	610819	3	12.7	1,274.7	11.9	12.8	10	0.0
6	삼푸	330510	40,638	36.0	96.2	10.2	5.4	PR-35	0.2
7	방용섬유제 여자용브리프, 팬티 (편직, 크로세)	610829	4	9.4	-	9.4	9.3	10	0.0
8	차약	330610	25,431	26.0	162.6	8.7	7	10	19.0
9	코르셋(니트, 코르셋)	621230	2,666	40.7	40.2	8.4	14.3	10	110.1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0	면제 손수건(직물제)	621320	328	50.6	47.5	7.8	14	10	0.0
11	가향 목욕용염 등류	330730	9,896	13.7	186.7	7.6	8.5	PR-35	2.3
12	장갑(프라스틱, 고무 침투, 도포)	611610	821	18.9	78.7	7.2	14	10	5.7
13	수상스키등 수상운동용구	950629	306	7.6	1,029.8	6.7	14	10	0.0
14	눈화장용제품류	330420	10,732	15.3	72.0	6.2	10	E	0.0
15	안전핀 및 철제핀류	731940	122	25.1	19.7	6.1	-	-	0.0
16	인조섬유로 만든것	620892	281	6.8	389.7	5.5	16	10	0.0
17	기타	950790	457	13.3	32.1	5.1	18.9	20	0.0
18	헤어래커	330530	140	5.9	81.4	4.9	10	E	0.0
19	기타 향수, 화장품	330790	5,358	6.7	161.1	4.4	6.3	PR-35	9.6
20	지구의	490510	4	4.4	26,566.7	4.4	0	0	-
21	화장용 가루(압축포함)	330491	9,355	13.5	64.2	4.2	10	E	0.0
22	의류, 부속품(지제, 셀룰로스위딩제)	481850	3	4.2	7,275.6	4.2	7.5	E	-
23	수지석	680430	306	7.5	101.0	4.2	6.4	5,10	0.0
24	기타 미용, 스킨케어제품	330499	718,368	28.0	54.3	4.1	6	PR-20	0.1
25	담배제품	240319	56	4.0	-	4.0	-	-	0.0
26	의류용 편물 부분품	611790	1,568	20.6	-13.4	3.9	7	10	0.0
27	기타 비누, 계면활성제	340119	10,119	36.9	9.3	3.4	10	10	2.2
28	트레이, 접시, 판	482369	98	4.1	373.5	3.2	7.5	E	32.8
29	원사(동물털 함유)	510910	10	3.1	-	3.1	6	0	0.0
30	가황고무 바닥 깔개와 매트	401691	798	8.3	62.6	3.1	18	10	5.0

* 품목 소개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 이상 131개 품목중 점유율 상승 상위 30개 품목

3. 가공식품

여기서 말하는 가공식품이란 소비용 가공식품을 가리키며 BEC 분류상 122로 분류되고, 2016년 1~9월 기준 대중수출의 0.5%로 2015년 같은 기간의 0.4%에 비해 0.1% 증가하는 등 양호한 대중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중수출 양호 품목은 2016년 1-9월 기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품목으로 삼계탕, 굴, 버모트/포도 와인, 혼합주스, 소시지, 당류, 멸치, 고등어, 토마토케첩, 감귤류 과실, 기타 파스타, 겨자, 추잉검 등이다.

FTA 활용 상황을 보면, 중국의 한-중 FTA 관세철폐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로는 FTA 활용률이 높은 품목으로 멸치(가공/저장처리), 기타 파스타, 조제 초콜릿, 감귤류의 과실, 다랑어, 조제채소(김치), 발효주, 베이커리용 반죽, 추출물 및 농축물, 기타 소스류 기타 빵류, 파스타 등이 있다.

주요 가공식품의 대중수출 실적 및 FTA 활용 현황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닭 필렛, 삼계탕	160232	325	100.0	116,936.0	71.7	15	10	-
2	가공/저장처리 굴	160551	23	95.1	-	95.1	-	-	-
3	버모트/포도 와인	220590	0	53.5	-	53.5	65	20	0.0
4	혼합주스	200990	24,504	59.1	202.9	28.6	18.7	15	0.0
5	소시지	160100	3,979	82.8	90.4	24.1	15	10	0.0
6	기타 사탕수수당, 순수자당	170199	69,992	44.2	4.8	17.2	50	E	0.0
7	가공/저장처리된 멸치	160416	84	17.5	1,540.5	16.7	12	10	96.0
8	고등어	160415	37	14.3	-	14.3	12	10	0.0
9	토마토케첩과 그 소스	210320	2,382	32.2	41.9	11.5	15	10	0.1
10	감귤류의 과실	200791	243	15.9	289.1	9.9	30	20	0.0
11	그밖의 파스타	190230	30,732	31.4	86.6	9.0	14.1	10, 15, 20	22.1
12	겨자 가루, 조제한 겨자	210330	273	10.7	232.8	8.3	15	10	3.7
13	추잉검	170410	164	10.4	127.8	8.2	9.5	E	0.0
14	껍데기를 벗긴 콩	200551	90	16.0	67.8	8.0	25	10, 20	0.0
15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220870	1,206	9.9	257.8	6.8	8.8	10	0.2
16	기타 저장/조제 처리된 어류	160419	109	9.0	503.7	6.4	10.3	10	0.0
17	가공/저장처리 된 전복	160557	12	6.3	-	6.3	-	-	0.0
18	조제초콜릿(속을 채운 것)	180631	3,023	7.8	175.7	5.6	6.4	15	2.1
19	오렌지주스(냉동 제외)	200919	8	5.2	530.9	5.1	30	20	-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20	감귤류 과실	200830	7,885	19.7	-4.3	5.0	20	15, 20	103.6
21	계	160510	264	7.5	365.9	4.4	5	0	0.0
22	다랑어 · 가다랑어 · 버니토 (bonito)	160414	1,065	11.9	61.2	3.5	5	0	56.5
23	포도주스	200921	179	15.0	24.3	3.4	15	10	0.0
24	기타 너트(혼합물 포함)	200819	5,879	7.5	142.5	3.2	6.1	10, 15	3.3
25	씨리얼	190490	348	11.3	-3.0	3.1	30	20	0.0
26	조제처리 감자	200520	941	11.6	71.5	2.5	15	10	0.6
27	조제채소(김치)	200599	606	12.9	28.0	2.3	25	10, 20	6.7
28	발효주(예: 사과술 · 배술 · 미드 등)	220600	2,084	12.2	-19.8	2.2	40	20	4.3
29	과일/너트/식물 조제혼합물	200897	305	2.2	3,832.4	2.2	-	-	0.0
30	조제/저장처리 새우	160521	31	5.6	80.3	1.8	5	0	0.0

* 품목선정 기준 : 중국 수입점유율 1%이상 65개 품목을 점유율 증가순으로 정리했으며, 소량품목이 많음을 감안해 수입점유율 1%이상 품목 65개 전체를 소개

4. 부품·부분품

1) 부품 및 부분품(수송장비용 제외)

수송장비가 아닌 자본재의 제조 및 유지에 투입되는 중간제품을 가리키며 BEC에서 42(parts and accessories of capital goods)로 정의하고, 대중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43.9%)을 차지한다. 부품 및 부분품에는 최대 수출 업종인 전자부품과 기계부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FTA 활용률은 매우 낮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부품 업종 특성상 기존 관세율이 낮고,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② 주요 품목 가운데 FTA 활용률이 높은 품목으로는 농업 및 원예기계,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플라이휠과 풀리, 도자제 절연제품, 기타 계전기, 사다리형 전동벨트, 단조기 및 다이 스탬핑기, 원추형 베어링 등 주로 기계업종이다.

② WTO 국제정보산업협정(ITA)에 따라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기 대부분의 관세가 0%임

주요 부품 및 부분품 수출성과 및 한-중 FTA 활용 현황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칼의 손잡이(비금속제)	821195	1,264	43.1	1,977.4	38.7	-	-	0.0
2	송신기기	852550	445	18.9	-	18.9	0	0	0.0
3	농업,원예,임업,양봉용 기계 부품	843699	496	16.6	988.3	15.5	6	10	97.4
4	액체엘리베이터 부분품	841392	114	27.2	42.6	12.7	4	5	0.0
5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843610	2,022	12.2	2,444.8	11.7	7	15	117.0
6	프린트블록 제조기계류 · 장비 부품	844240	504	9.8	4,243.0	9.6	3.5	0	0.0
7	플라이휠과 풀리(pulley)	848350	41,138	28.8	16.0	7.4	8	10	37.1
8	착유기, 유사 용도 여과기	591140	2,873	21.0	39.0	6.8	8	5	0.0
9	도자제 절연용 물품	854710	11,540	25.1	2.5	6.5	8	15	24.2
10	납땀/용접기기와 표면열처리 기기 부품	846890	2,313	19.3	3.7	6.2	3	5	0.0
11	권양/하역/양하용 기계류부분품	843139	48,185	22.0	38.1	5.8	2.5	15	0.3
12	터닝(turning)용 공구	820780	1,396	10.2	105.5	5.6	-	-	0.0
13	경질물 가공기계 부분품 부속품	846692	4,290	14.8	100.7	5.6	6	15	0.0
14	기타 탄소 및 그래핀 제품	854590	6,920	26.7	16.0	5.5	10.5	10	1.6
15	기타 권선용전선	854419	4,242	52.3	11.3	5.3	20	20	0.0
16	인쇄용 활자,블록,플레이트	844250	1,778	10.4	135.4	5.2	7	5	0.0
17	사다리꼴형 전동용 벨트	401034	232	6.6	342.1	4.6	8	5	89.5
18	스팀 터빈 부분품	840690	10,885	7.1	133.6	4.5	2	0	0.0
19	영상프로젝터	900850	236	5.3	787.6	4.5	18,20	15,E	0.0
20	베어링하우징	848320	2,371	6.1	179.0	4.4	6	5	4.0
21	초고온 보일러 부분품	840290	2,912	10.6	75.8	4.2	2	0	0.0
22	단조기, 다이스탬핑기, 전단기 부분품	846694	8,648	7.2	-15.8	4.1	6	0	8.9
23	사진용 섬광기구와 전구 부품	900699	428	6.3	216.6	3.8	12	10	0.0
24	기타 계전기(전압 1,000V이하)	853649	8,922	4.4	354.4	3.5	10	15	5.9
25	횡단면 사다리꼴형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	401031	1,632	7.0	107.8	3.4	8	5	0.0
26	오븐, 가열장비 부분품	851490	4,849	10.3	19.8	3.2	4	0,5	3.9
27	체크밸브	848130	21,436	8.3	55.2	3.1	3	15	20.4
28	제8444호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844820	3,178	7.2	82.3	3.1	6	10,15	3.6
29	퓨즈	853610	26,985	7.9	64.5	3.0	10	E	0.3
30	원추형 로울러 베어링	848220	20,769	9.1	31.7	2.9	8	5	28.1

* 선정기준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 이상 375개 품목 가운데 점유율 상승이 높은 30개 품목

2) 수송장비용 부품 및 부분품

자동차부품, 선박 부품, 자동차 및 선박용 엔진 부품 등 수송장비의 생산과 유지에 투입되는 부품과 부분품을 가리키며, BEC에서 53으로 분류되고, 대중국 수출(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4.6%를 차지한다.

FTA 활용률을 보면 6.9% 수준으로 중국의 자동차부품 관세양허가 장기간 철폐가 많고 원산지규정이 다소 까다롭게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다소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 활용률을 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기어 박스의 활용률이 12.9%로 비교적 높은 가운데(기존 관세율 6%, 부분철폐(5년간 기존관세의 20% 철폐), 리튬이온축전지(0.1%),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4.6%), 기타 전기도체(0.1%), 가솔린엔진 부품(22.5%), 핸들·운전대 및 운전박스 부속품(0.1%), 15년 철폐 등을 기록했다.

이 분야 활용률이 높은 수준은 아니나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장기철폐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율을 보면 리튬이온 축전지(기존 6%관세, 5년간 기존 관세율의 20% 철폐(PR-20), 차체 부품과 부속품 10% 관세 15~20년으로 다양하나 장기철폐, 가솔린엔진 부분품 6%, 향후 5년간 기존관세의 35% 철폐(PR-35), 기타의 품목의 경우 기존관세 6%, 15년 철폐 등이다.

수송장비용 부품 및 부분품 수출성과 및 FTA 활용 현황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기타 자동차용 램프	853922	489	26.9	-18.2	10.6	7.8	E,5	0.0
2	배전기와 점화코일	851130	25,734	22.0	39.1	8.2	6.7	5, 15	0.8
3	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연산축전지	850710	23,495	15.8	61.4	7.6	6.9	20	0.0
4	모터사이클용 고무제공기타이어	401140	84	6.0	24,097.7	6.0	15	15	0.0
5	자주식 작업차와 철도역 플랫폼용 트랙터 (전기식)	870911	490	7.1	49.3	5.2	10	10	0.0
6	타이어(건설/산업용 차량 및 기계용)	401162	162	10.7	8.6	5.1	17.5	10	0.0
7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870880	125,130	21.7	15.5	3.4	9	10	9.7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8	기어박스	870840	1,487,519	18.3	35.7	3.2	8.3	E,PR-20	12.9
9	리튬이온бат데리	850760	789,909	34.8	2.9	2.8	12	PR-20	0.1
10	버스용·화물차용 타이어	401120	783	2.7	7,766.0	2.7	6.2	15	0.0
11	볼꽃점화식 피스톤	840991	293,168	16.5	7.6	2.6	3.6	10,15,PR-35	22.5
12	방열기 (자동차용)	870891	27,398	12.3	5.1	2.3	10	15	9.8
13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840820	2,237	2.5	198.5	1.6	10.3	15,20	0.0
14	그 밖의 축전지	850780	6	1.3	10,350.9	1.3	9	10	-
15	페달과 크랭크기어, 이들의 부분품	871496	473	1.5	298.8	1.2	12	10	0.0
16	핸들/운전대/운전박스등 차량 부속품	870894	259,272	19.2	5.3	1.0	8.6	E,15	0.0
17	그 밖의 조명용/시각 신호용 기구	851220	57,933	6.8	31.7	1.0	10	20	0.1
18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401110	7,377	1.9	78.7	1.0	9.4	15	0.0
19	차축과 그 부분품	870850	64,830	10.2	16.6	0.8	8.8	E,15,20,PR-10	24.1
20	타이어 (농경/임업용 차량 및 기계용)	401192	3	1.0	170.2	0.7	15.5	20	0.0
21	기타 가솔린엔진 피스톤	840999	36,604	7.2	-3.2	0.7	4.1	0,10,15	0.9
22	타이어 (농경/임업용 차량 및 기계용)	401161	65	2.7	43.5	0.6	11.8	10	0.0
23	가솔린엔진(1,000cc 초과)	840734	53,630	3.8	31.8	0.5	7	20	0.0
24	기타 튜브	401390	8	2.0	191.0	0.3	8	0,10	0.0
25	기타	854449	285,327	26.3	-12.4	0.1	3.2	0, 5, PR-35	0.1
26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870	10,637	7.7	-18.6	-0.1	9	E,10,15	1.0
27	자동차용 완충기와 그 부분품	870810	17,982	7.2	3.1	-0.2	9.6	20	0.0
28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870829	621,270	18.7	-4.0	-0.3	9	15,20,PR-10	4.6
29	타이어(건설/산업용 차량, 기계용)	401193	331	8.9	-18.6	-0.4	25	20	0.0
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30	96,419	14.3	-5.8	-0.5	8.1	10,15,20,PR-10	5.7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0% 이상 103개 품목 가운데 수입점유 증가율 상위 30개 품목

5. 기계·설비

1) 기계 및 설비(자본재(운송장비 제외))

- ▶ (설명) 자본재 (Capital goods) : 생산 기계나 원자재 따위의 생산 수단을 만들어 내는 제품
 예) 공구, 기계, 장비, 부품, 컴퓨터, 의료용기기, 계측기, 반도체, 건전지, 센서, 발전기, 전동기, 전기부품 등

운송장비를 제외한 생산 장비와 기계를 가리키며 BEC 기준으로는 41에 해당하고, 대중수출의 18.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FTA 활용률은 비교적 낮은 2.0% 수준이다. 주요 품목을 보면, 대중수출 실적이 양호한 품목 가운데 주요 품목 상당수는 FTA 활용률이 없거나 낮다. 예를 들어 액정디바이스(0.0%), 기억장치(0.0), 디스플레이 제조기기(0.5%), 금속처리용 및 혼합·반죽·파쇄기 등(0.8%), TV·디지털·비디오 카메라 레코더(0.0), 무선송수신기기(0.0) 등이 있다. 주요 품목의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기존 관세가 없거나^㉓ 관세 철폐 수준이 낮기 때문^㉔이다.

주요 품목의 활용성과를 보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품목 가운데 FTA 활용이 활발한 품목으로는 철강제탱크 및 통(7.9%),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 기계(18.3%), 기타 전기용접기(23.4%), 유리가공기계(99.5%), 저항식 전기용접기(60.4%), 배소/용해/열처리용 노 및 오븐(23.8%) 등이 있다.

㉓ 활용실적이 전혀 없는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기억장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기계 및 장비, 금속처리용 및 혼합기 반죽기, 무선 송수신기기, 반도체 및 집적회로 제조 장비, 세라믹 축전기 등은 기존 관세율이 0%임

㉔ 액정디바이스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6%로 10년 철폐이나 최후 2년 동안(8년과 9년차) 집중 철폐, TV/디지털/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철폐 예외(E) 등임

기계 및 설비 대중 수출성과 및 FTA 활용 실적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컬러 TV 수상기	852872	25,713	69.9	4,409.0	65.4	21	E,PR-30	0.0
2	콘크리트/모르타르 혼합기	847431	5,922	43.5	336,394.5	43.5	7	10	-
3	타이어 장착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2	175	31.0	-	31.0	6	15	-
4	광섬유 성형품 제조용 기계	847521	24,720	30.6	-	30.6	10	10	0.0
5	자동판매기(가열/냉장장치)	847681	37	29.3	504.4	27.7	14	10	0.0
6	납땜용, 용접용 기타기기	846880	16,102	42.1	184.1	25.3	12	E	0.0
7	철강제탱크, 통, 드럼(용적 50L이상 300L이하)	731010	13,484	50.3	93.8	24.3	10.5	20	7.9
8	이동, 정지, 지균, 스크레이핑 기계(자주식)	843050	8,208	33.0	68.1	20.2	5	0,5,15	18.3
9	기타 전기용접기(저항형)	851529	6,294	47.0	73.5	19.7	9.5	20	23.4
10	단조기(鍛造機) · 다이시스템핑기	846210	119,207	35.4	95.9	18.6	7.6	PR-30	0.5
11	증류기, 정류기	841940	15,131	23.8	303.7	18.2	10	10	0.2
12	기타 블록/판 제조장비	844230	2,100	15.0	5,428.8	14.9	8	5,15	0.0
13	전기 음향/영상 신호기 부분품	853190	20,285	16.2	1,531.9	14.9	0	0	0.0
14	증발식 에어롤러 (기계류)	847960	305	16.1	667.3	14.8	9	10	0.0
15	금속 절삭공작기계	846190	3,427	32.7	24.3	14.1	14	10,20	0.0
16	톱기계 (광물성물질가공용)	846410	3,646	16.1	793.4	14.0	0	0	-
17	유리 가공기계	847529	80,074	42.9	74.3	13.5	10	10	99.5
18	캘린더기, 로울기(rolling machine)	842010	62,108	30.2	74.6	13.3	7.2	5	4.2
19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20	199	13.4	7,328.5	13.2	14	10	0.0
20	퇴비/비료 살포기	843240	1,192	13.4	2,065.7	12.9	4	0	0.0
21	컴퓨터용 프로젝터	852861	654	11.3	2,599.0	10.9	0	0	-
22	석재/세라믹 가공기계	846490	15,169	13.0	590.8	10.8	0	0	0.0
23	그 밖의 작업트럭	842790	523	13.6	113.8	10.3	9	5	0.0
24	기타 사무용 기계	847290	6,553	23.6	-75.0	10.2	2	0,10	0.0
25	저항식 전기용접기	851521	29,523	39.2	0.5	10.1	8.8	20	60.4
26	기타 밀링머신	845969	818	14.5	192.5	9.9	10.5	E,PR-8	0.0
27	타워크레인	842620	591	12.6	24.5	9.7	10	20	0.0
28	다상 교류전동기(출력 750W이하)	850151	54,585	20.3	89.6	9.6	5	E	0.0
29	배스(焙燒)/용해/열처리용 노(爐)와 오븐	841710	3,755	23.1	4.3	9.5	10	10	23.8
30	기타 공기/가스용 압축기와 팬	841480	118,502	14.5	148.4	9.5	4.9	0,5,10,15	1.0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 이상 147개 품목중 시장점유 증가율 상위 30개 품목

6. 산업용 원자재

▶ (설명) 자본재 (Capital goods) : 생산 기계나 원자재 따위의 생산 수단을 만들어 내는 제품
 예) 공구, 기계, 장비, 부품, 컴퓨터, 의료용기기, 계측기, 반도체, 건전지, 센서, 발전기, 전동기, 전기부품 등

별도 특정되지 않은 산업용 원자재로 화학 및 금속반제품(중간제품)을 가리키며 대중수출의 25.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UN BEC 분류기호 22[processed Industrial supplies not elsewhere specified]이다.

FTA 활용률을 보면 한-중 FTA 활용률이(대한상의 기준 C/O 발급율 평균 14.4%)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 활용률을 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파라크실렌과 스티렌이 중국측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활용률이 0%를 기록한 가운데 규소(태양광 발전용 소재)의 활용률이 69.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기타 화학생산품(6.3%), 폴리프로플렌(0.4%), ABS(30.3%) 등의 활용을 기록하고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중간재 및 금속 중간재의 중국측 관세철폐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한-중 FTA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대기업에 의한 대량 수출이 이루어지고 제품특성상 FTA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요 산업용 원자재 수출 성과 및 FTA 활용 성과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	합성필라멘트 토우(폴리프로필렌)	550140	274	91.0	-	91.0	5	0	179.4
2	채두류에서 얻은박류	230250	484	69.2	-	69.2	5	0	0.0
3	평판압연강(600mm이상, 냉간압연)	720990	601	80.7	-26.3	60.7	4.2	10	-
4	황마,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직물	531090	49	54.6	-5.4	51.4	10	5	0.0
5	산화금속산염, 과산화금속산염	284169	512	44.7	9,549.5	44.3	5.5	5	2526.3
6	파이프(세로방향 섬유지아크용접)	730511	820	97.1	-32.1	38.6	7	15	-
7	테레프탈산 디메틸	291737	8,414	73.9	72.7	36.5	6.5	15	100.0
8	마그네사이트, 백운석	681591	3	56.7	81.1	36.4	15	10	-
9	메타아크릴산과 그염	291613	14,737	50.1	460.1	36.2	6.5	0	115.6
10	마그네슘과 기타 괴	810419	908	71.4	279.1	35.9	6	5	95.6
11	그밖의 유리	700490	109,443	47.6	92.2	35.8	17.5	20	0.0

구분	품목명	HS	수입액 (천\$)	수입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입점유 증가율	중국 관세	중국 양허	C/O 발급율
12	기타 무기염, 금속산화물	282590	8,683	38.0	2,181.3	35.2	5.5	5	0.0
13	초산노르말부틸	291533	1,680	63.2	56.6	34.9	5.5	15	0.0
14	합성장섬유사 교직직물	540730	331	83.6	232.8	34.3	10	5	0.0
15	실리코망간강 봉(열간압연,코일)	722720	13,471	44.7	286.6	34.3	6	15	0.0
16	기타방직용 섬유제 기타 파일편물	600199	912	35.9	2,448.8	33.2	12	5	0.0
17	피치코크스(코올타르)	270820	4,474	32.5	-	32.5	4.5	10	50.7
18	오이, 기타 콜타르 생산물	270799	490,552	37.5	824.1	29.3	7	15	0.0
19	니트직물(양모/섬모제)	600310	6	31.5	241.8	28.2	10	5	-
20	재생/합성 단섬유	551621	59	34.9	115.4	28.2	12	5	0.0
21	그밖의 무기화합물	285300	13,700	29.9	3,050.8	27.7	5.6	5	0.0
22	크롬산염/중크롬/과산화크롬산염	284150	545	55.7	525.2	26.9	5.5	5	11.0
23	스티렌중합체 기타판, 쉬트	392111	1,551	29.0	633.8	25.7	9	10	0.5
24	캐스트/롤형 유리	700319	467,451	40.0	280.3	25.0	17.5	10	0.0
25	아연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790400	3,436	44.8	47.8	23.9	6	15	0.0
26	폴리이소부틸렌	390220	32,930	68.1	76.6	23.1	6.5	E	0.0
27	미절단 웨프트직물, 면제	580121	51	27.6	22.1	22.8	12	5	0.0
28	구리호일	741022	11,352	68.0	151.3	21.9	7	5	0.0
29	농업용 도자제 통 및 유사용기류	690990	41	23.0	5,302.2	21.7	21	20	0.0
30	기타 면재봉사	520419	308	88.0	-17.9	21.5	5	0	0.0

03

시사점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4가지의 시사점이 드러난다. 첫째는 주력 수출업종의 수출 성과 및 FTA 활용은 업종별 산업 및 무역 특성으로 인해 엇갈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력 대중수출품이지만 중국의 관세철폐 수준이 낮은 석유 화학, 철강, 수송장비 부품 등의 대중수출 성과가 양호하고 FTA 활용역시 활발하게 나타난다.⑤ FTA 활용이 활발한 이유는 업종 특성상 품목당 수출 단가가 커서 관세철폐 수준은 낮아도 혜택 규모가 크고, 원산지발급 시스템 과 인력, 경험을 갖춘 대기업이 많아 FTA 활용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최대 수출업종인 전기전자가 포함된 부품 및 부분품 업종의 FTA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관세가 이미 없는(0관세) 품목이 많고 관세하급 혜택을 누리는 가공무역 수출이 많아 굳이 FTA를 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다만, FTA 활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두번째로는 최대 수혜업종인 소비재와 식품의 FTA 활용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구소비재와 반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의 FTA 활용 수준이 낮지는 않으나 적극적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이 분야의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업종 특성상 다품종 소량 수출이 많아 관세혜택이 크다 해도 실제 혜택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조사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무역업체에서 여러 품목과 함께 매입해 중국측 파트너에게 수출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여러 소량 품목을 복잡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발급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활용 저조의 또 다른 이유는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한-중 FTA 중국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으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면담기업 가운데 FTA 발효 이후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과도한 서류 요구와 시간 지연을 애로 사항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로 대중수출 뿐 아니라 대중수입, 제3국을 포함하는 다각적 FTA 활용전략 필요하다. 우리기업이 중국 현지생산 및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대중수입 과정에서 한-중 FTA를 잘 활용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산 생산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중국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한-중-제3국을 아우르는 다국가간 FTA 활용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 원재료를 역외국(제3국)에서 들여와 한국에서 생산한 뒤 중국에 수출하거나 제3국 생산제품의 대중수출을 모색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다국가간 공급망을 고려한 FTA 활용을 위해서는 한-중 FTA 뿐 아니라 한-중 양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내용을 파악함은 물론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및 일반 원산지기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산업용 원자재(석유화학, 철강 등)의 중국 수입점유 증가율 0.9%이며 원산지증명 발급율도 높음(상)





FTA와 품목분류

의류의 품목분류

의류는 관세율표에서 어떻게 분류되는가?

육수진 사무관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임교수

01

의류의 품목분류 의류는 관세율표에서 어떻게 분류되는가?

육수진 사무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임교수

의류는 수입량이 많으며, FTA 활용률도 높은 품목이므로 의류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FTA 원산지확인 등을 위해 품목분류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율표에서 제61류와 제62류에 분류되는 의류는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수출입 기업에서 품목분류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즉, 원단의 직조방식, 의류의 종류, 남성용 또는 여성용 여부, 섬유 재료의 종류와 구성비율 등에 따라 류, 호, 소호 등 품목분류가 상이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과 FTA 원산지기준도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관련 업계 등에서 의류의 품목분류를 보다 잘 이해하고, 통관시에 품목분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세율표에서 의류의 품목분류 체계와 규정, 사례 등을 정리하였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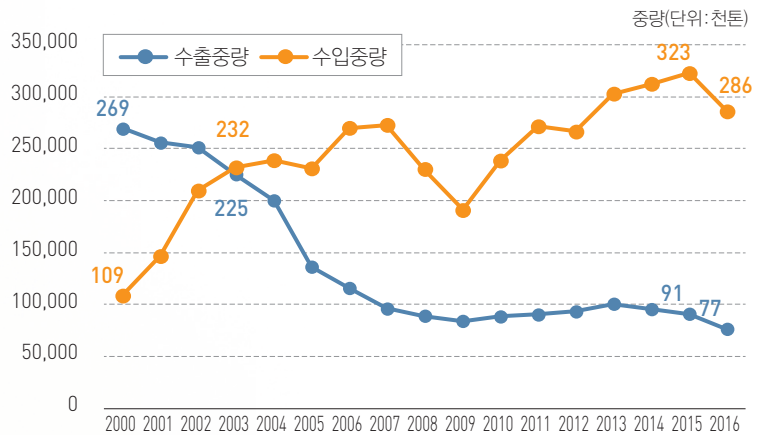
머리말

“한국 2~3년내 의류수입국 전략-한국의류산업협 전망”

1996년 3월 24일 국내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90년대 말까지 세계 5위권의 의류 수출국이었으나, 수출은 연평균 9.76%씩 감소하고 수입은 56.6%씩 증가하고 있어 수 년 내에 수입 초과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류 수출입통계를 분석해보면 이 기사에서 예상한 시기보다는 조금 늦어진 2003년부터 의류 수입량이 수출량을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이다. 수출입 금액 기준으로는 2015년도 의류의 무역수지는 약 61억2천만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①

〈그림1〉 의류(제61류+제62류)의 수출입통계 ②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의류는 FTA 체결국가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비율도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① 2015년도 수출금액 19억4천만불(미화), 수입금액 80억 6천만불(미화)인.

②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 무역통계자료 참조 (2016년 통계: 2016.1월-2016.10월)

실제 관세청이 제공하는 FTA 활용률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의류의 FTA 활용률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③

이처럼 의류의 수입량과 FTA 활용률이 증가할수록 의류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결정과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확인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결국 관세율, 원산지 등의 결정기준인 품목분류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의류의 수입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율표에서 의류는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수출입 기업에서 품목분류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즉,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원단의 직조방식, 의류의 종류, 남성용 또는 여성용 여부, 섬유재료의 종류와 구성비율 등에 따라 류, 호, 소호 등 품목분류가 상이하 며,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과 FTA 원산지기준도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관련 업계 등에서 의류의 품목분류를 보다 잘 이해 하고, 통관시 품목분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관세율표에서 의류의 품목분류 체계와 규정, 사례 등을 정리하였다.

〈표1〉 의류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상이사례

차이점	의류의 유형	품목번호	FCN*	FAS**	
직조 방식	남성용 슈트 (양모제)	편물	6103.10-1000	7.8%	0%
		직물	6203.11-0000	11.2%	5%
의류의 종류	편물 의류 (면제)	블라우스	6106.10-0000	13.0%	0%
		티셔츠	6109.10-1000	11.2%	0%
		폴오버	6110.20-0000	11.7%	5%
남성 /여성용 여부	청바지 (면제)	남성용	6203.42-1000	13.0%	0%
		여성용	6204.62-1000	12.4%	0%
섬유의 종류	직물제셔츠 (남성용)	면섬유	6205.20-0000	13.0%	5%
		재생·반합성 섬유	6205.30-2000	10.4%	0%

* FCN : 한-중 FTA 특혜관세율

** FAS :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③ 관세청 YES FTA 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 제공 FTA 활용률 참조

02

의류의 품목분류 체계

관세율표에서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원단의 직조방식에 따라 편물로 만든 것은 제61류에, 편물 이외의 직물이나 부직포 등으로 만든 것은 제62류에 분류한다.

각 류 내에서는 의류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의류의 종류를 세분하여 4단 위 호를 나누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종류의 의류는 남성용·여성용 여부에 따라서도 호를 추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6101호부터 제6108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08호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의류의 종류에 따라 제61류와 제62류에서 특게된 호가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61류에는 주로 편물로 제조하는 티셔츠, 카디건, 양말 등이 개별 호로 특게되어 있는 반면, 제62류에는 주로 직물로 제조하는 손수건, 스카프, 넥타이 등이 개별 호로 특게되어 있다.

제61류 및 제62류의 전반적인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2〉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품목분류체계

제61류 편물제			제62류 非편물제	
해당품목	호		호	해당품목
오버코트, 클룩, 아노락, 스키 자켓, 윈드자켓 등	6101 6102	의류 [호가 남성/여성용 으로 구분되는 것]	6201 6202	버코트, 클룩, 아노락, 스키 자켓, 윈드자켓 등
슈트, 앙상블, 자켓, 바지, 스커트, 드레스	6103 6104		6203 6204	슈트, 앙상블, 자켓, 바지, 스커트, 드레스
셔츠, 블라우스	6105 6106		6205 6206	셔츠, 블라우스
언더팬츠, 브리프, 파자마, 목욕용 가운, 드레싱가운	6107 6108		6207 6208	언더팬츠, 브리프, 파자마, 목욕용 가운, 드레싱가운

제61류 편물제			제62류 非편물제	
해당품목	호		호	해당품목
티셔츠, 싱글리트, 기타 조끼	6109	의류 [호가 남성/여성용 으로 구분되지 않 는 것]	6209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 트쿠트	6110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6111		6210	플라스틱 등을 도포한 비(非)편물(59류)제 의류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6112			
플라스틱 등을 도포한 편물 (59류)제 의류	6113		6211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기타 의류
기타 의류	6114			
양말, 스타킹	6115	의류 부속품, 부분품	6212	브래지어, 거들, 콜셋, 브레 이스, 서스펜더, 가아터 등 (편물제 포함)
장갑	6116		6213	손수건
			6214	쇼올, 스카프, 머플러
기타 의류부속품, 부분품	6117		6215	넥타이
			6216	장갑
		6217	기타 의류부속품, 부분품	

03

남성용과 여성용 의류의 품목분류

제61류와 제62류에 분류되는 의류는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에 따라 호(heading)와 소호(subheading)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두 류에서 전 반부에 해당하는 제6101호부터 제6108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08호까지는 크게 네 그룹의 의류를 남성용(또는 소년용) 또는 여성용(또는 소녀용)인지 여부에 따라 호를 다시 구분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61류와 제62류의 주(Notes)에서는 '남성용'과 '여성용'의류에 대한 구분기준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 남성용/여성용 의류의 구분기준(제61류 주 제9호, 제62류 주 제8호)

단계	의류의 특징		분류방법
1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 또는 여성용으로 디자인 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		재단법에 따라 분류 (전면부분 디자인 규정 비적용)
2	전면부분의 디자인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김	남성용으로 분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김	여성용으로 분류
3	남성용/여성용인지 판별불가한 경우		여성용으로 분류

〈그림 2〉 남성용 코트와 바지



〈그림 3〉 여성용 코트와 바지



04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의 품목분류

제61류와 제62류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을 별도로 분류하는 호가 하나씩 있다. 즉, 편물로 만든 것은 제6111호에, 편물 이외의 것으로 만든 것은 제6209호에 분류한다. 제61류 주 제6호와 제62류 주 제4호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는 ‘유아용’의 범위를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물품이 이들 호와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111호와 제620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4〉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05

소매용 세트로 된 의류의 품목분류

관세율표에서 일반적인 물품들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해당하는 호로 전체 물품을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파게티면(제1902호)·토마토소스(제2103호)·치즈가루(제0406호)로 구성된 스파게티 세트는 그 세트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스파게티면이므로 제1902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에는 제61류나 제62류의 특정한 호에서 세트로 구성된 의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매용의 세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호에 함께 분류할 수 없고 각각을 분리하여 해당하는 호에 따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는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원칙이다.

제61류와 제62류에서 세트로 구성된 의류로서 하나의 호에 함께 분류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슈트, 앙상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이 있다. 이들을 제외한 의류들은 세트물품으로 함께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슈트(suit)의 품목분류 [제6103.1, 6104.1, 6203.1, 620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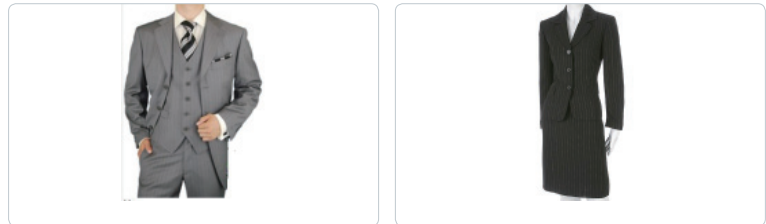
슈트란 상반신용과 하반신용의 의류를 동일한 직물로 만든 세트의류로서 신사복이나 숙녀복 정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관세율표에서 슈트는 직조방식과 남성용·여성용인지에 따라 네 개의 호에 분류된다. 제61류와 제62류 주에서 규정하는 슈트의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슈트(Suit)의 분류기준(제61류 주 제3호, 제62류 주 제3호)

해당 호	제6103호(편물제, 남성용), 제6104호(편물제, 여성용), 제6203호(비편물제, 남성용), 제6204호(비편물제, 여성용)	
전체 분류 요건	- 겹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부분이나 세부분으로 구성된 세트 의류 -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 색채, 조성, 스타일이 동일해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모닝드레스, 연미복(테일코트), 디너재킷슈트도 슈트에 포함	
구성 요건	상의 1점	- 슈트코트나 자켓 - 소매부분 이외의 겹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개 이상의 단으로 구성
	하의 1점	- 긴 바지,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 - 두 가지 이상의 하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한 벌만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남성용은 긴 바지, 여성용은 스커트나 치마바지)
	[조끼 1점] *선택사항	- 상의에 봉제된 조끼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음 - 조끼의 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겹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

〈그림 5〉 남성용 및 여성용 슈트



나. 앙상블(ensemble)의 품목분류 [제6103.2, 6104.2, 6203.2, 6204.2호]

앙상블이란 프랑스어로 ‘조화, 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의류에서는 짝지어서 착용하도록 의도된 한 세트의 의류이다.

관세율표에서 앙상블은 슈트와 동일한 호(제6103호, 제6104호, 제6203호, 제6204호)이지만, 소호 단위에서는 슈트와 구분된다. 제61류와 제62류 주에서 규정하는 슈트의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앙상블(Ensemble)의 분류기준(제61류 주 제3호, 제62류 주 제3호)

해당 호	제6103호(편물제, 남성용), 제6104호(편물제, 여성용), 제6203호(非편물제, 남성용), 제6204호(비편물제, 여성용)	
전체 분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 (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 -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 또는 스키슈트는 포함하지 않음 	
구성 요건	상의 1점	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
	하의 1~2점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그림 6〉 남성용 앙상블(제6203호)



〈그림 7〉 여성용 앙상블(제6204호)



다.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의 품목분류 [제6112, 6211호]

주로 스포츠활동을 할 때 입는 트랙슈트, 스키슈트와 수영복은 상·하의로 구성된 경우 세트의류로서 특계된 호에 함께 분류된다.

① 트랙슈트(Track suit)

트랙슈트는 외양과 직물의 성질상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의류로서 상반신용과 하반신용 의류 한 벌로 구성된다. 트랙슈트는 관세율표 제6112호와 제6211호에 분류된다.

〈그림 8〉 편물로 만든 남성용 및 여성용 트랙슈트 (제6112호)



② 스키슈트(Ski suit)

스키슈트는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 또는 세트 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상·하반신을 모두 덮도록 디자인한 '스키오버롤(ski overall)'과 두 부분 또는 세부분으로 구성된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이 있다.

관세율표 제61류와 제62류의 주에서는 스키슈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스키슈트의 분류기준(제61류 주 제7호, 제62류 주 제6호)

정 의	-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 - '스키오버롤(ski overall)'과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이 있음
스키오버롤 분류요건	- 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 -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음
스키앙상블 분류요건	- 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 -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스키오버롤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 - 구성의류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음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 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그림 9〉 직물로 만든 스키오버롤(①)과 스키앙상블(②) [제6211호]



③ 수영복 (Swimwear)

수영복은 수영을 할 때 입는 의류로서 원피스형과 투피스형의 것이 모두 포함된다.

〈그림 10〉 편물로 만든 여성용 수영복(①,②) [제6112호]
직물로 만든 남성용 수영복(③) [제6211호]



라. 세트의류로 분류되지 않은 사례 (WCO 결정사례)

① “샬와르-카미즈(Shalwar-Kameez)”라 불리는 여성용 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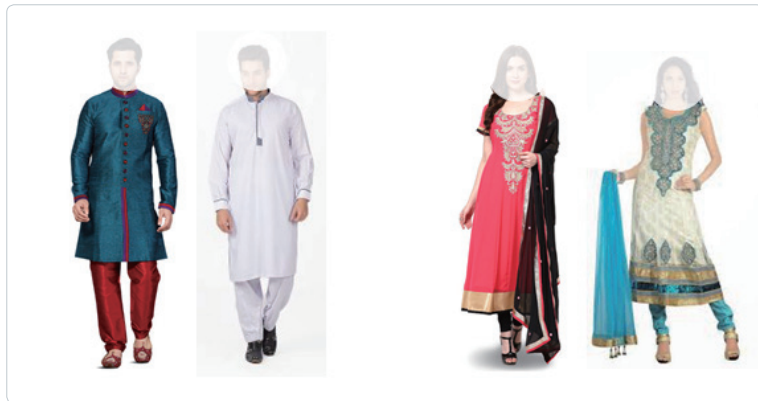
샬와르-카미즈는 인도지역에서 입는 전통의류로서 상의(Kameez)와 하의(Shalwar)로 구성된 의류이다. 세계관세기구(WCO)의 HS위원회(제52차, 2014년)에서 품목분류가 논의된 의류는 직물로 만든 여성용의 “샬와르-카미즈”로서 상의(블라우스), 하의(긴 바지), 술 각 한 점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상태이다. 세 구성요소는 직물의 조직과 색채, 조성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스타일과 치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 벌로서 함께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의류는 전체를 세트의류인 앙상블(제6204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HS 위원회는 세트로 거래되고 일반적으로 한 벌로 입는 의류라 하더라도 제62류 주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앙상블의 분류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소별로 상의는 제6206호(블라우스)로, 하의는 제6204호(바지)로, 술은 제6214호로 각각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에 구성요소별 특징과 품목분류를 정리하였다.

〈표 7〉 샬와르-카미즈(Shalwar-Kameez)라 불리는 여성용 의류 분류사례

구성요소	물품사진	물품설명	품목분류
상의		녹색과 노란색의 면직물을 재봉하여 만든 소매가 없는 여성용 블라우스임. 목 부분이 둥글게 파진 형태로서 직물에 여러 가지 형태의 패턴이 재봉되어 장식을 이루고 있고, 가장자리에 댄 안감과 은빛 직물의 스트립이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음	6206.30
하의		면직물로 만들어진 녹색의 바지	6204.62
술		“듀파타(Dupatta)”라고 불리는 직사각형의 술(shawl)로서 녹색과 노란색의 면직물로 만들어 짐	6214.90

〈그림 11〉 다양한 형태의 샬와르-카미즈



② 외피와 내피 의류로 구성된 여성용 윈드 재킷

본 물품은 외피와 내피의 이중 구성으로 된 여성용 윈드 재킷으로, 외피 의류는 한면에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나일론 직물로 만든 재킷이며, 내피 의류는 폴리에스테르 편물로 만든 재킷이다. 내피 의류는 두 의류에 부착된 슬라이드파스너(지퍼)를 이용해서 외피 의류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한 벌의 의류처럼 입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내피와 외피 의류를 분리하여 따로 입을 수도 있다.

이 물품은 구성의류가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스타일과 치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지퍼로 연결하여 하나의 의류처럼 입을 수 있는 구조이고 함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이다.

이 의류는 전체를 세트의류로 보아 외피 의류가 해당하는 제6210호(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로 만든 의류)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HS 위원회(제53차, 2014년)는 두 의류가 독립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류이므로 하나의 호에 함께 분류될 수 없다고 보아 직물로 된 외피 재킷은 제6210호로, 편물로 된 내피 재킷은 제6102호로 각각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에 구성요소별 특징과 품목분류를 정리하였다.

〈표 8〉 외피와 내피로 구성된 여성용 윈드재킷 분류사례

구성요소	물품설명	품목분류
외피 의류	한 면이 플라스틱으로 도포된 나일론 직물로 만든 여성용 윈드 재킷임. 앞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지퍼)를 사용하여 오른쪽이 왼쪽 위로 가도록 하여 잠그며, 후드가 부착되어 있음. 의류 안쪽의 지퍼를 사용하여 내피 의류를 내부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이 의류만 따로 입을 수도 있음.	6210.50
내피 의류	폴리에스테르 편물로 만들어진 여성용 윈드재킷임. 지퍼를 사용하여 외피의류에 부착할 수 있으나, 이 의류만 따로 입을 수도 있음.	6102.30

〈그림 12〉 외피와 내피로 구성된 여성용 윈드재킷
(①지퍼로 외피와 내피의류를 부착한 형태 ② 외피의류 ③내피 의류)



③ 편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여성용 투피스 의류

본 물품은 합성섬유의 메리야스 편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여성용 투피스(two-piece) 의류로서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이다. 상의는 긴 소매의 티셔츠이며, 하의는 긴바지로 구성되어 있다. 상의와 하의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졌으나, 하의의 허리부분에 탄성 있는 허리밴드가 봉제되어 있다.

이 물품의 품목분류는 제6104호(여성용 앙상블)나 제6112호(트랙슈트)의 세트의류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을 분리하여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HS 위원회(제56차, 2015년)는 하의의 허리부분에 다른 종류의 직물로 된 허리밴드가 있으며, 상의 의류가 제6109호의 티셔츠에 해당하므로 제61류 주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앙상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제6112호의 트랙슈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HS 해설서 제6112호에서 설명하는 트랙슈트의 특성(상의 소매의 끝단에 리브한 밴드 또는 탄성 밴드·지퍼 기타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61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물품은 상의는 제6109호(티셔츠)로, 하의는 제6104호(긴바지)로 각각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FTA 활용 성공사례 & FTA Issue Focus

한-중 FTA 비즈니스 활용 모델

불인정공정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규정의 간소화 방안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01

한-중 FTA 비즈니스 활용 모델

對중국 구매선 전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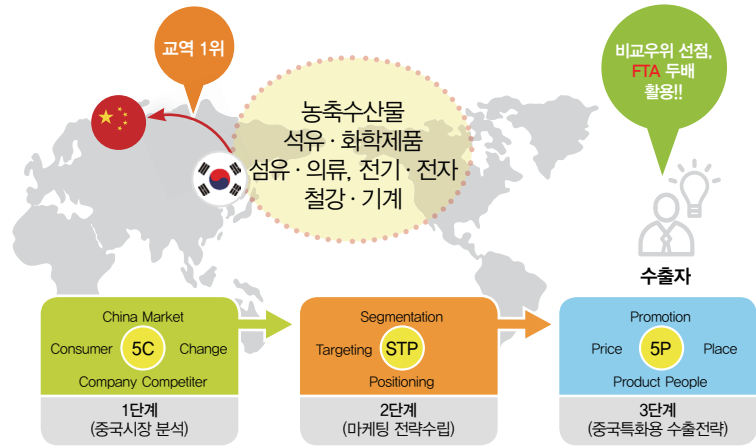


개요

- 다양한 협정 활용을 위한 원부자재 구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특화된 생산라인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체계도)

-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특화하여 중국산 원재료 사용 등 對중국 특화형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한-중 FTA 활용 수출에 집중함으로써 활용성과 극대화



활용효과

- 중국산 원재료 사용으로 원가절감과 원산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절감 등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한-중 FTA활용 강화
- 중국 소비자 기호에 특화된 제품 생산으로 시장확장이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 실현

한-중 FTA 발효 즉시 무관세 수입 적용품목

연번	HS Code	품 목 명	기준세율
1	0101219000	기타	8
2	0101291000	경주말	8
3	0101301000	번식용	8
4	0101900000	기타	8
5	0102211000	젖소	89.1
6	0102212000	육우	89.1
7	0102219000	기타	89.1
8	0102311000	젖소	89.1
9	0102312000	육우	89.1
10	0102319000	기타	89.1

연번	HS Code	품 목 명	기준세율
11	0102901010	젖소	89.1
12	0102901020	육우	89.1
13	0102901090	기타	89.1
14	0103100000	번식용	18
15	0105111000	번식용	9
16	0105941000	번식용	9
17	0209100000	돼지의 것	3
18	0209900000	기타	3
19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3
20	0502100000	돼지털 · 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3
21	0502902000	염소털	3
22	0502909000	기타	3
23	0506100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
24	0506901010	호랑이의 것	3
25	0506901090	기타	3
26	0506909000	기타	3
27	0511993010	소의 것	18
28	0511993020	돼지의 것	18
29	0511995011	정돈한 것	3
30	0511995019	기타	3
31	0511995020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3
32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33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3
34	1002900000	기타	3
35	1004900000	기타	3
36	1007900000	기타	3
37	1008300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3
38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3
39	1207300000	피마자	3
40	1207500000	겨자씨	3
41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3
42	1208900000	기타	3
43	1214101000	사료용	1

연번	HS Code	품 목 명	기준세율
44	1214909011	사료용	1
45	1301200000	아라비아검	3
46	1301902010	셀락(shellac)	3
47	1404901000	조각용 종자·껍질 및 너트(예: 상아야자)	3
48	1404902020	삼지닥나무(edgeworthia papyrifera) 껍질	3
49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그라스(couch-grass) 및 이스틸리(l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3
50	15011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51	1501109000	기타	3
52	15012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53	1501209000	기타	3
54	1501900000	기타	3
55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2
56	1502101090	기타	2
57	1502109000	기타	3
58	15029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2
59	1502901090	기타	2
60	1502909000	기타	3
61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3
62	1503009000	기타	3
63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3
64	1505009000	기타	3
65	1506001000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3
66	1506009000	기타	3
67	1511100000	조유(粗油)	3
68	1511901000	팜 올레인(palm olein)	2
69	151190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2
70	1511909000	기타	2
71	1513110000	조유(粗油)	3
72	1513199000	기타	3
73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
74	1701141000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3

연번	HS Code	품 목 명	기준세율
75	1701142000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76	1703101000	주정 제조용	3
77	1703901000	주정 제조용	3
78	1703909000	기타	3
79	1801001000	생 것	2
80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2
81	2303301000	사료용	3
82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8
83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84	2306500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85	230660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86	2501001010	암염(岩鹽)	1
87	2504101000	인상(鱗狀)흑연	3
88	2504102000	토상(土狀)흑연	3
89	2504109000	기타	3
90	2504901000	인상(鱗狀)흑연	3
91	2504902000	토상(土狀)흑연	3
92	2504909000	기타	3
93	2505100000	규사	2
94	2523100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95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5
96	2523290000	기타	5
97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8
98	2523901000	슬래그(slag) 시멘트	5
99	2523909000	기타	5
100	2601200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1
101	2707100000	벤조올(벤젠)	3
102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
103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3
104	2707400000	나프탈렌	5
105	27075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ASTM) 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5

연번	HS Code	품 목 명	기준세율
106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5
107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5
108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5
109	2707993000	페놀(석탄산)	8
110	2707999000	기타	5
111	270900101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을 초과하고 0.841 이하인 것	3
112	270900102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을 초과하고 0.847 이하인 것	3
113	270900103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을 초과하고 0.855 이하인 것	3
114	270900104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를 초과하고 0.869 이하인 것	3
115	270900105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를 초과하고 0.885 이하인 것	3
116	270900106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를 초과하고 0.899 이하인 것	3
117	270900107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를 초과하고 0.904 이하인 것	3
118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를 초과하고 0.966 이하인 것	3
119	2709001090	기타	3
120	2709002000	역청유(瀝靑油)	3
121	2710122000	항공 휘발유	3
122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123	2710197310	컴파운드오일	7
124	2710197520	전기전열유	7
125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126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
127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128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5
129	2710201020	항공 휘발유	5
130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131	2710201090	기타	5
132	2710209110	제트 연료유	5
133	2710209190	기타	5
134	2710209210	등유	5
135	2710209220	제트 연료유	5

연번	HS Code	품 목 명	기준세율
136	2710209230	노르말 파라핀(normal paraffin)	5
137	2710209290	기타	5
138	2710209300	경유	5
139	27102094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	5
140	2710209420	중유(벵커비유)	5
141	2710209430	벵커시유	5
142	2710209490	기타	5
143	2710209510	조유(粗油)	7
144	2710209520	윤활유 기유(基油)	7
145	2710209600	신전유(extender oil)	8
146	2710209711	항공기용 기관오일	7
147	271020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7
148	2710209713	선박용 기관오일	7
149	2710209721	실린더오일	7
150	2710209722	스핀들(spindle)오일	7
151	2710209723	기어오일	7
152	2710209724	터빈오일	7
153	2710209725	냉동기오일	7
154	2710209731	콤파운드오일	7
155	2710209732	유동파라핀	7
156	2710209733	자동차변속기용 윤활유	7
157	2710209741	방청유	7
158	2710209742	절삭유	7
159	2710209743	세척유	7
160	2710209744	주형이형유	7
161	2710209745	유압브레이크유	7
162	2710209751	프로세스유	7
163	2710209752	전기전열유	7
164	2710209753	열처리유	7
165	2710209754	열매체유	7
166	2710209790	기타	7
167	271020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168	2710209820	칼슘을 첨가한 것	8
169	271020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연번	HS Code	품 목 명	기준세율
170	2710209840	리튬을 첨가한 것	8
171	2710209890	기타	8
172	2710209900	기타	8
173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3
174	2710911090	기타	5
175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176	2710912090	기타	5
177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3
178	27109140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중유(벵커비유) 및 벵커시유의 것	3
179	2710914090	기타	5
180	271091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 한다] 및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181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3
182	2710991090	기타	5
183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184	2710992090	기타	5
185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3
186	27109940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중유(벵커비유) 및 벵커시유의 것	3
187	2710994090	기타	5
188	271099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 한다] 및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189	2711141000	에틸렌	5
190	2711142000	프로필렌	5
191	2711143000	부틸렌	5
192	2711144000	부타디엔	5
193	2711290000	기타	5
194	2712101000	바셀린	8
195	2712909020	토탄왁스	8
196	2712909030	세레신왁스	8
197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5
198	2714100000	역청질 함암(瀝靑質頁巖) 또는 유모 함암(油母頁巖) 및 타르샌드(tarsand)	5
199	2714901000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5
200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FTA Issue Focus

불인정공정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규정의 간소화 방안¹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FTA협정 수의 증가는 체약상대국 간 교역 특성과 각국의 행정관행을 반영하여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협정마다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FTA활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FTA협정의 복잡성은 협정의 활용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FTA활용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체약당사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의 활성화라는 FTA체결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¹ 본 글은 2016년 2월 관세학회지에 게재된 글로 FTA 발효국 및 체결국가는 '16년 12월 기준 15개 협정 52 개국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2월말 기준 발효 중인 14개 협정 중 발효기한이 짧은 5개 협정(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을 제외한 9개 협정과, 협정 체결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한 한-콜롬비아 FTA^② 등 10개 협정을 대상으로 개별 협정들이 원산지규정에 담고 있는 내용 중 공통 요소인 불인정공정의 협정별 특징과 규정유형을 분석해 보고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개별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공정을 공정의 특징에 따라 포장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유형에 대한 개별 협정별 불인정공정 제시내역과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상세히 살펴본 후, 분석대상 10개 협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01

문제의 제기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불과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한 2015년 12월말 기준 14개 협정 51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에 있고, 추가로 1개 협정이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상대국의 비준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동시다발적 FTA추진정책’은 기업들에게 경쟁력 제고의 기회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신시장 확보와 기존 거래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급격한 FTA협정 수 증가와 협정별로 차별적인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협정 활용을 통한 이익창출과는 별개로 협정 활용의 원활성을 제약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가중됨으로써 FTA활용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

FTA협정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의 주요한 발생원인 중 하나는 주로 협정 수가 증가하는데서 기인하는데, 이는 크게 ‘품목에 따라 협정별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의 복잡성’과 ‘협정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의 차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원문 게재 당시 한-콜롬비아 FTA는 발효전이었으나 한-콜롬비아 FTA는 2016.7월 발효하였다. [이하동일]

이 중 '품목에 따라 협정별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의 복잡성'은 각 협정별 계약당사국의 산업구조와 계약국간 교역의 특성 등이 감안되어 「품목별원산지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이 결정되게 되므로 인위적인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은 계약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간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일반기준(General Rule)」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등과같은 원산지절차 및 누적기준(Accumulation)과 같은 특례규정 등은 계약국간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간소화하는데 제약이 있으나,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의 경우 규정 도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정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협정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통일규정을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5년 12월말 기준 발효 중인 14개의 FTA협정 중 발효 일자가 짧은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및 연말에 발효된 3개 FTA협정(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을 제외한 9개 협정과 체결일자가 상당 기간 경과한 한-콜롬비아 FTA 등 10개 협정을 대상으로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을 분석해 보고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02

불인정공정의 개요

1. 불인정공정의 개념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은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 '불충분공정' 또는 '단순공정' 등으로도 표현되는데 FTA특혜 활용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인 「충분가공원칙」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다.(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충분가공원칙」이란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불완전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역내의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나 가공'이 수행되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면 FTA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물품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로부터 만들어진 원재료가 사용되고 제조 공정 또한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의 물품생산패턴을 반영한 규정이다.

즉, 일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당해 국가에서 전체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진행된 완전생산품에 대해서만 FTA특혜가 적용되도록 할 경우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상품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체약국 간 경제교류증대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FTA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된 불완전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을 유발하는 충분한 제조공정(가공)이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충분한 정도의 공정(가공)'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대다수의 협정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공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인정공정들을 제시하고 동 규정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한 원산지상품 결정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품목별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수행공정이 불인정공정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상품이 원산지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불인정공정의 도입 목적

FTA협정에서 불인정공정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불완전 생산품판정기준 중 하나인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1)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 보완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가 어느 수준에서 변해야 원산지가 변하는 것으로 판단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변경을 요하는 단위가 '2단위→4단위→6단위'의 순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다.

하지만 실제로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있어 제조공정(가공)이 진행되는 동안 세번변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거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등 품목에 따라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역내에서 수행된 제조공정(가공)에 투입된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만이 수행된 경우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날 정도의 충분한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불인정공정의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2) 역내가공 촉진

불인정공정은 역내에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공정(가공)만이 수행된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해 FTA특혜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불인정공정 규정은 협상단계에서는 원산지기준에 대한 합의를 쉽게 하고 「품목별기준」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03

협정별 불인정 공정 규정 분석

1. 불인정공정 총괄

본고의 분석대상인 10개의 FTA협정은 모두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생산 및 가공활동 중 충분한 가공으로 보지 않는 불인정공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방식에 있어 불인정공정을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협정들은 불인정공정을 원산지규정의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불인정공정을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방식에 있어 '일반품목'과 '섬유류'로 구분하여 2원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정별 불인정공정 근거규정

협정명	근거규정
한-칠레 FTA	• 제4.13조(불인정공정)
한-싱가포르 FTA	• 제4.16조(불인정공정)
한-EFTA FTA	• 부속서 I 제6조(불충분공정)
한-아세안 FTA	• 부속서3 제8조(일반품목 불인정공정), 부록3 제2조(섬유류 불인정공정)
한-인도 CEPA	• 제3.6조(불인정공정)
한-EU FTA	•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한-페루 FTA	• 부속서3 제3.5조(불인정공정)
한-미 FTA	•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규정
한-터키 FTA	•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한-콜롬비아 FTA	• 부속서3 제3.14조(불인정공정)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을 총괄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전체 55개 유형이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포장이나 재포장 등 상품의 성상에는 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운송이나 판매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이나 탈피·탈각·조립·분해 등과 같이 단순가공과 관련된 공정들은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공통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섬유나 의류상품에 전용되는 재단 또는 봉제나 머서라이징 등의 공정들은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등 협정에 따라 규정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협정별 불인정공정 포함내역

구분	불인정공정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포장 관련	1 포장 또는 재포장	○	○	○	○	○	○	○		○	○
	2 적입 (병, 상자 등)		○	○	○	○	○	○		○	○
	3 선적 및 운송 촉진 작업 (공정)	○									
	4 포장해체	○	○	○	○		○	○		○	○
보존 관련	5 운송 및 저장 목적 보존 작업	○	○	○	○	○	○	○		○	○
	6 환풍 또는 통풍	○				○					
	7 건조	○	○			○					
	8 냉장	○				○					
	9 냉동	○	○			○					
	10 염수장		○			○					
세정 관련	12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		○	○	○	○	○		○	○
	13 세척	○		○	○		○	○		○	○
	14 먼지제거	○	○			○					
선별 관련	15 채질	○		○	○	○	○			○	○
	16 진동	○									
	17 선택	○									
	18 분류 또는 등급화	○		○	○	○	○			○	○
	19 선별	○		○	○	○	○			○	○

구분	불인정공정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가공 관련 (일반 물품)	20	절단	○	○	○	○	○	○			○	○
	21	연마			○	○	○	○	○		○	○
	22	도장(페인팅) 또는 광택			○	○	○	○	○		○	○
	23	분해 또는 해체	○	○	○	○	○	○	○		○	○
	24	표시나 상표 부착	○	○	○	○	○	○			○	○
	25	다림질 또는 압착			○	○		○	○		○	○
	26	제단 또는 봉제				○	○					
	27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	○					
	28	장식품 부착				○	○					
	29	탈색				○	○					
	30	방수				○	○					
	31	머서라이징				○	○					
	32	자수상품의 부분 자수				○						



구분	불인정공정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가공 관련 (농축 산물)	33	탈피	○	○	○	○	○	○			○	○
	34	탈각 또는 박편	○	○	○	○	○	○	○		○	○
	35	탈곡	○	○								
	36	도정			○	○	○	○	○		○	○
	37	씨 제거			○	○	○	○			○	○
	38	뼈 제거	○	○								
	39	표백			○	○		○	○		○	○
	40	압착	○	○			○					
	41	연질화	○	○								
	42	도설(도축)	○	○	○	○	○	○	○		○	○
	43	염화 또는 가당	○	○								
	44	당류 착색			○	○	○	○			○	○
	45	착향			○			○			○	○
	46	각설탕 작업 (공정)				○	○	○			○	○
47	(결정당) 제분						○			○	○	
조립 관련	48	단순 조립	○	○	○	○	○	○	○		○	○
	49	세트구성	○	○	○	○	○	○	○		○	○
	50	매칭	○	○	○	○	○	○			○	○
	51	(섬유류) 단순결합				○	○					
검사 관련	52	시험(시험) 이나 측정	○	○	○	○	○	○			○	
	53	품질검사		○								
혼합 관련	54	(단순)혼합	○	○	○	○	○	○	○	○	○	○
	55	희석	○	○			○			○		

주 : 각 협정별 표기는 다음과 같음

1. FCL : 한-칠레, 2. FSG : 한-싱가포르, 3. FEF : 한-EFTA, 4. FAS : 한-ASEAN, 5. FIN : 한-인도,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8. FUS : 한-미
9. FTR : 한-터키, 10. FCO : 한-콜롬비아

자료 : 각 FTA협정문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2. 협정별 불인정공정 주요특징

1) 한-칠레 FTA

다른 협정에 비해 한-칠레 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타 협정들이 불인정공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위와 동일 명칭의 공정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불인정공정으로 판단되지 않는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단순한(simple)'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한-칠레 FTA는 해당 공정의 명칭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 '단순조립'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협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정만이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어 「품목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단순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 협정에 비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의 불인정공정 규정형식은 해당 공정들을 설명한 후 열거된 공정중 하나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나 둘 이상의 공정이 조합되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산지상품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싱가포르 FTA도 한-칠레 FTA와 같이 불인정공정에 해당될 수 있는 공정의 명칭에 대해 '단순한(simple)'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판단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대부분의 협정들과 같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들을 열거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페인팅 및 광택작업·적입·조립·시험 및 측정·혼합에 있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FTA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인정공정들 중 '단순한(simple)'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각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혼합의 경우 혼합의 결과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도구나 설비가 동원되지

않아도 불인정공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혼합된 물품 간에 분자간의 결합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분자결합이 형성되는 경우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구조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4) 한-ASEAN FTA

한-아세안 FTA는 특이하게 불인정공정을 2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문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HS 제50류~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협정문 부록3(부속서 3에 대한 해석 주석) 제2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일반물품'에 대한 불인정공정은 제1항에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충분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된 경우 당초의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인정공정 이상의 충분한 가공이 수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척·세정·제거, 도장 및 광택, 혼합에 대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simple)'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혼합의 경우 혼합의 결과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 발생하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술·기계·기구나 장비가 동원되지 않아도 불인정공정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축에 대해서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른 협정에 비해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타 협정들이 도축 자체에 대해서만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반해 한-아세안 FTA는 도축을 단순한 도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살 후 연이어 이루어지는 저장과 운송목적의 절단·냉장·냉동·염장·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도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인정공정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불인정공정의 규정 형식은 제조과정에서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단순한 공정들을 열거하고 당해 공정들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의 불인정공정은 제1항에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불충분한 공정의 판단 방법으로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상품 운송 중 상태유지를 위해 상품에 추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보존공정들을 각주에서 열거하여 이들 공정들은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며, 도장 및 광택공정·적입·조립·시험 및 측정·혼합에 있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이 각주로 제시되어 있다.

6) 한-EU FTA

한-EU FTA의 불인정공정은 제1항에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불충분한 공정의 판단 방법으로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열거되어 있는 불인정공정들 중 ‘단순한’이라고 명시된 공정들의 불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주해 5에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한-EU FTA의 불인정공정들 중 ‘단순한’이 결합되어 있는 것에는 페인팅 및 광택공정·분쇄 또는 절단·상자에 넣기·포장·혼합·조립 등이 있고 이들의 경우 실제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수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의 불인정공정 규정형식은 제1항에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불충분한 공정의 판단 방법으로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불인정공정에 부가된 단어들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페인팅 및 광택·적입·포장·조립·혼합에 있어 불인정공정에 해당

하는 '단순한'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제3항 가호에서 설명하고, 혼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혼합의 결과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도구나 장비가 동원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인정공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한-미 FTA

한-미 FTA는 여타 협정들이 불인정공정을 원산지규정의「일반기준(General Rule)」에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협정문 부속서 6-가의「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품목별기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불인정공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부(Section)나 류(Chapter)의 주(Note)에서 필요에 따라 해당 영역에 적용되는 불인정공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규정형식은 HS 제1류에서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단순 희석(mere dilution)' 과 같이 불인정공정의 명칭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협정에서 충분한 가공으로 간주하는 공정을 제시하면서 해당 공정의 수행정도가 충족될 수 없는 경우를 부연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9) 한-터키 FTA

한-터키 FTA의 불인정공정 규정형식은 제1항에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불충분한 공정의 판단 방법으로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특징 및 내용은 한-EU FTA와 동일하다.

10) 한-콜롬비아 FTA

한-콜롬비아 FTA의 불인정공정 규정형식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불인정공정만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불인정공정으로 고려되는 공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페인팅 및 광택·적입·포장·혼합·조립·분해·분쇄·절단에 있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각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상품의 혼합에 대해서도 혼합되는 상품은 같은 종류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여 혼합되는 객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04

유형별 불인정 공정 규정 필요성

불인정공정은 한-미 FTA를 제외하고 협정별로 '운송 및 저장 목적의 보존 작업'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공통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칠레 FTA의 '전시작업'과 같이 특정 협정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립이나 혼합 또는 희석'등과 같이 단순히 조립(혼합 또는 희석 포함)된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별도로 '단순히[simple]'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협정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을 세번의 변경 등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변화를 발생시킬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포장·보존·세정·선별·검사 등의 경우 본질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가공·조립·혼합 등의 경우에는 본질적 특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공정들은 당해 규정의 당초 도입목적 중 하나인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 보완과는 상관없이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품목별기준」이 충족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협정 활용에 복잡성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공정들을 특징에 따라 유형화하여 보고 각 불인정공정의 규정내 포함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포장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포장과 관련된 사항 중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정들은 단순히 포장(재포장 포함)만 진행된 경우, 병이나 상자 등에 제품을 나누어 담는 공정만 진행된 경우 및 포장의 해체작업만 진행된 경우 등인데 「품목별기준」에서 불인정공정을 일부 제시하고 있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전체 협정에서 포장(재포장 포함)만 진행된 경우에는 불인정공정으로 분류하여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입(병, 상자 등)의 경우에도 한-칠레 FTA와 한-미 FTA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한-칠레 FTA는 협정상 제4.13조 제1항 다호13)에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한-미 FTA는 각 물품의 「품목별기준」에 원산지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제외세번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공정이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용의 효과는 동일하다.

적입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대부분의 협정이 포장공정 자체의 난이도나 종류를 불문하고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EFTA FTA와 한-인도 CEPA는 단순한 공정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단순(simple)'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들 협정의 경우에도 적입 등 포장공정의 수행만으로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아 '단순'한지의 여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여타의 협정들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볼 때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에서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포장공정을 다른 협정들과 달리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규정 필요성

포장 또는 재포장은 내용물에 해당하는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단순히 포장하거나 내용물을 분할하여 소량으로 재포장하는 등의 경우

로, 협정별로 정하고 있는 내용물의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의 발생 등 충분한 수준의 본질적인 특성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울러 비원산지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내용물을 획득하는 포장해체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될 정도로 충분한 가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선적 및 운송촉진 작업은 개별 물품을 컨테이너에 입고하고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선적과정을 수월하게 하거나 운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데, 이 또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변화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운송 상의 편의와 물품 보호만을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단순히 이 공정의 수행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의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포장과 관련하여 개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들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다.

2. 보존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개별 협정에서 보존과 관련하여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정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건조·냉장·냉동 등과 같이 상품의 운송이나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운송 및 저장 목적 보존작업은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해당 공정에는 한-칠레 FTA 등과 같이 보존 관련 공정과 관련하여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는 공정들이 포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규정 필요성

보존과 관련된 불인정공정의 일종인 건조는 해당 공정이 수행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의 변경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등에서는 단순히 건조만이 수행된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건조를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협정들은 「품목별기준」에서 건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인정공정에 건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용상 차이가 없다.

냉장·냉동·염장 등은 공통적으로 물품의 부패 등을 방지하고 운송 상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물품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정인데, 이 또한 건조와 같이 수행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의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공정을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들의 경우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는 등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을 별도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별기준」에서 '냉장·냉동·염장'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존과 관련한 공정들의 경우 세번변경을 유발하는 건조와 냉동 등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는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품목별기준」에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별개의 규정으로 예시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없다.

3. 세정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세정과 관련된 불인정공정은 적용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일반적인 물품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섬유 및 의류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이를 개별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에 따라 분류해 보면 세탁이나 먼지제거의 경우 전체 물품에 고루 적용될 수 있는 불인정공정이고 세탁이나 드라이 크리닝은 섬유 및 의류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불인정공정이다.

특징적인 점은 대부분의 협정이 세탁이나 세척에 대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불인정공정을 일반물품과 별개로 구분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세탁을 일반적인 세탁과 드라이 크리닝으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고 한-인도 CEPA도 다른 협정들과 달리 섬유 및 의류에 대해 드라이 크리닝을 별도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세정과 관련한 불인정공정으로 먼지제거만이 포함되어 있고 세탁이나 세정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아세안 FTA의 경우 다른 협정들이 세정 공정의 난이도나 종류를 불문하고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단순한 공정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단순 (simple)'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세정과 단순하지 않은 세정으로 구분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도 세정 공정의 수행만으로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아 '단순'한지의 여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여타의 협정들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2) 규정 필요성

세탁은 주로 섬유와 의류 상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정의 특성상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비원산지 섬유 및 의류를 체약 당사국 내에서 세탁만 진행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특이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협정에서 세탁을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섬유 및 의류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세탁과 달리 세척이나 먼지제거는 농수 축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세탁과 마찬가지로 특성상 세번변경 등 본질적 특성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비원산지물품에 대해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정 관련 공정들은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다.

4. 선별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양질의 물품을 분류해 내는 공정에 해당하는 선별은 한-칠레 FTA의 경우 해당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채질(체질)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만을 불인정공정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별 또는 감별과 관련하여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및 한-미 FTA는 별도로 해당될 수 있는 불인정공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선별 자체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선별을 통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규정 필요성

채질(체질)은 가루상태의 물품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해내는 공정으로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선별·분류 또는 등급화·선택도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이들 분류 공정의 수행만으로 본질적 특성 변화가 발생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공정이 될 수 없다.

다만, 폐기물·부스러기·고물 등의 경우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선별 과정만을 거쳐 획득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18) 이들 물품들은 생산과정에서 파생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선택·선별·분류 등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정만이 수행되어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선별 관련 공정들의 경우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폐기물·부스러기·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5. 가공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가공은 물품의 성상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데 개별 협정에서는 공정의 수행 결과 물품의 성상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단순한’가공만이 수행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별로 불인정공정에 해당될 수 있는 가공의 종류는 적용되는 물품에 따라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한 일반물품과 농축산물에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공정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다만, 불인정공정 제시방법의 특성상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결정당의 제분'이나 '곡물의 탈피'등과 같이 특정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제시된 공정 자체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반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불인정공정이라 하더라도 농축산물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불인정공정은 절단·연마·도장 또는 광택·분해, 해체·표시나 상표 부착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공정 중 절단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에 해당될 수 있는 '단순절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장(페인팅) 및 광택의 경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및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불인정공정을 제시하고 있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성상 동 공정의 수행만으로 물품의 본질적 특성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단순한'도장(페인팅) 및 광택과 그렇지 않은 도장(페인팅) 및 광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되는 불인정공정은 한-인도 CEPA와 한-아세안 FTA를 제외한 협정들은 표시나 상표부착·다림질 또는 압착 등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인도 CEPA와 한-아세안 FTA는 다양한 공정들을 불인정공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열하고 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불인정공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농산물의 경우 비원산지물품을 상품화하기 위해 단순히 껍질을 벗기거나 씨를 제거하는 등 본질적 특성 변화를 유발시키지 않는 대부분의 공정들이 불인정공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축산물의 경우에도 연질화나 뼈의 제거 및 도축 등 다양한 공정들이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중 특히 도축(도살)의 경우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비원산지 산 동물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도축하여 얻은 육과 식용설육 등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규정 필요성

절단은 공정의 특성상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한 일반물품과 농축산물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협정별 규정방식의 특성에 따라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정 수행을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된 기계·기구·장치·도구 등이 없이 해당 작업이 수행되면 불인정공정으로 분류되는 ‘단순 절단’에 해당되고 반대의 경우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절단 공정을 축산물에 적용되는 경우로 가정하여 보면 당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구·장치·도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불인정공정에 해당되는데, 이는 거의 모든 협정에서 절단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상품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물품의 외관을 가다듬는 작업과정에 해당하는 연마나 광택은 작업과정의 특성상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공정인데, 연마나 광택을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정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의 경우에도 해당 공정이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분해 또는 해체는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원산지 물품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분해 또는 해체과정을 거쳐 획득한 반제품 및 부분품 등은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별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는 반면,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분해 또는 해체를 통해 얻어진 부품 등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중고 상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한 후 정상적인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세척·검사 등을 수행하여 얻은 물품은 재생용품에 해당하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나 상표부착은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공정인데, 해당 공정의 수행이 물품 자체에 대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포장에 대해 수행될 수도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물품을 잘게 부수는 과정인 파쇄나 분쇄는 일반적인 모든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물품의 성상변화는 물론 세번의 변경 등 본질적 특성 변화까지를 유발할 수 있는 공정이나 체약당사국 내에서 비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 당해 공정들만 수행된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림질이나 장식품 부착, 오바로크·탈색·자수 등은 주로 섬유나 의류에 적용되는 불인정공정으로 이미 구체적인 형상과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 미관상 좋은 상태로 만들거나 해당 제품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공정으로 해당 공정의 수행 여부가 대부분의 불인정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변화를 유발시키지는 않는다.

탈피(탈각)는 곡물이나 갑각류·연체동물 및 동물의 겉껍질을 벗기는 공정으로 물품의 성상에 변화를 발생시키고 일부 물품의 경우 세번의 변화 등 본질적 특성에도 변화를 발생시키는데, 갑각류나 연체동물의 경우 껍질을 벗기는 공정을 수행하게 되면 물품의 형태가 변하게 되지만 품목분류 체계상 4단 위 이하 세번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²²⁾ 해당 물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을 「품목별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개별 협정의 특장상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반면, 곡물은 탈피(탈각)가 물품의 성상 변화는 물론 세번변경 등 본질적 변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데, 탈피(탈각) 공정은 한-미 FTA를 제외한 전체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어 해당 공정을 통해 「품목별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탈각을 제외하고 탈피의 경우에는 동물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동물로부터 가죽을 벗겨 내는 공정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피공정을 통해 획득된 원피 등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되어지는 ‘동물’에 대해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박편은 물품을 얇게 썰거나 조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경우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탈각(탈피)과는 달리 물품의 성상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본질적 특성에는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탈곡은 수확된 농산물로부터 곡물을 추출하는 공정이고 도정은 곡물의 껍질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벗기는 작업으로 곡물 등 농산물에 적용되는 불인정 공정인데, 해당 공정의 경우 본질적 특성에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모든 협정에서 식물성 생산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원산지물품을 탈곡이나 도정하여 얻은 물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씨 제거는 농산물에 적용되는 불인정공정이며 뼈 제거는 축산물에 적용되는 불인정공정으로, 씨 제거의 경우 품목분류 체계상 세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나 뼈 제거는 품목에 따라 세번의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표백은 협정에 따라 농산물이나 섬유 및 의류 등 다양한 물품에 불인정공정으로 적용되는데, 특성상 성상변화에는 영향을 미치나 본질적 특성에는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아 해당 공정이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의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압착의 경우 물품에 따라 세번의 변경 등 본질적 특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체약당사국 내에서 비원산지물품에 대해 단순히 압착공정만이 수행된 결과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 증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당류의 착색은 농산가공품에서 주로 적용되는데 그 의미는 비원산지 농산가공품에 당류를 도포하거나 색상을 입히는 공정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된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각설탕 작업은 당류를 특정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비원산지 설탕 등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특정크기나 형상으로 재가공하여 각설탕으로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충분가공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공 관련 공정들은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정들의 특성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 특성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이 가능한데, 본질적 특성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규정에서 별도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6. 조립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부품 단위에서 완제품 단위로 변경되는 조립은 성상 변화는 물론 본질적 특성 변화까지를 유발하나,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단순 조립의 결과 생산된 물품은 본질적 특성 변화와 관계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세트구성이나 매칭(조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품들을 하나의 포장 단위로 만드는 행위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별도로 세트구성이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미 FTA도 「품목별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여타의 협정들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는 단순 결합이나 봉제가 불인정공정에 해당한다고 제시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물 자체가 원산지상품이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규정 필요성

조립은 비원산지물품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특정한 케이스 등에 배치 및 연결하여 단일한 용도와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공정으로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나, 조립과정에서 가공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기구·장치·도구 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조립은 해당 공정을 통해 본질적 특성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립과정에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기구·장치·도구 등이 활용된다 하더

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조립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부분품 등의 가공정도와 관련이 있다.

세트구성 및 매칭(조합)은 개별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물품들을 하나의 조합으로 만드는 행위로 비원산지물품을 하나의 조합으로 만드는 행위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세트물품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협정들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하까지는 비원산지물품이 세트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트 자체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데, 이들 협정들은 세트를 구성하는 공정만이 체약당사국 내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되어 있는 조립과 관련된 공정들의 특징은 물품의 본질적 특성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는 것인데, 본질적 특성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앞서 살펴본 가공 관련 불인정공정들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규정에서 별도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7. 검사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시험이나 측정 및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한-페루 FTA와 한-미 FTA, 한-콜롬비아 FTA를 제외하고 전체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등 3개 협정은 단순한 시험이나 측정은 불인정공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순한’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별도의 주석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이나 측정은 특성상 해당 공정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품목별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고,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없어 ‘단순한’의 정도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규정 필요성

검사 관련 공정은 모든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데 공정의 수행범위는 외관에 대한 검사부터 성능이나 기능 측정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행될 수 있으나 본질적 특성 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정들을 원산지규정에서 별도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8. 혼합 등 관련

1) 협정별 포함 내용

모든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단순)혼합’을 포함하여 혼합과 관련된 불인정공정은 ‘(단순)혼합과 희석’이 있는데,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단순)혼합’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혼합’을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기구·장치·도구가 필요하지 않거나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공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국 내에서 물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혼합만이 수행된 경우 해당 공정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의 결과 생성된 물품의 특성이 투입된 원재료와 다른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혼합의 대상이 되는 원료에 대해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은 혼합되는 물품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물품이 혼합되어 새로운 물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킬 정도의 충분한 가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혼합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한-EU FTA, 한-터키 FTA 및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다른 협정과 달리 ‘모든 재료와 당류(설탕)와의 혼합’이 불인정공정으로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음식료품의 경우 당류(설탕)의 첨가만으로도 2단위 또는 4단위 수준에서의 세번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비원산지 음식료품에 당류(설탕)를 혼합하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이 충분한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혼합 및 배합에 대해 불인정공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혼합 및 배합이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혼합 및 배합의 결과 생성된 물품이 투입된 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이나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 FTA에서 혼합 및 배합공정이 불인정공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혼합 및 배합을 수행하는 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혼합(배합)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물품의 특성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고 그 사용목적에 부합되어야만 충분한 가공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이다.

희석의 경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등 4개 협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는 희석에 대해 물이나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해 희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인도 CEPA와 한-미 FTA는 여기에 더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물이나 다른 물질로 희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규정 필요성

혼합과 희석은 둘 이상의 독립된 물품이 한데 섞인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혼합은 동일한 물질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희석은 '물 또는 다른 용해제를 가하여 묽게 함'으로 되어 있는 사전적 의미와 같이 서로 다른 물질 간에만 발생한다.

혼합과 희석은 둘 중 어떠한 것이든 물품의 본질적 특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협정상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공정이다.

05

불인정공정 간소화방안 제안

1. 현행 불인정공정 규정상 문제점

본고의 분석대상인 10개 FTA협정의 불인정공정을 분석해 본 결과 규정의 도입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 동일 공정에 대한 협정 간 불일치 등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대부분의 협정에서 불인정공정 내에 본질적 특성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공정들과 특성의 변화를 유발시키지 않는 공정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중 특성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정들은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 보완이라는 불인정공정의 도입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며 규정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여타 협정에 비해 다양한 공정들을 불인정공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칠레 FTA 등 일부 협정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들이 불필요하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규정의 이해와 적용이 복잡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순한' 등에 대한 정의가 따로 제시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협정과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협정이 혼재되어 있어 동일 공정에 대해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를 판정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 상품의 원산지판정에도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2. 불인정공정 간소화방안

불인정공정을 간소화하여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완화시킴으로써 FTA활용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은 개별 협정별로 불인정공정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전체 협정에 적용 가능한 방안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

이 중 개별 협정별로 불인정공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은 협정마다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공정의 분석을 통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 변화를 유발하지 않아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 「품목별기준」의 충족이 불가능한 공정들을 선별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며, 전체 협정에 적용 가능한 방안은 협정마다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공정들을 취합하여 해당 공정들 중 세번의 변경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변화를 유발하지만 ‘충분한 가공(공정)’으로 볼 수 없는 공정들을 선별하여 통일규정을 만들어 현재 발효되고 있는 협정과 향후 협상이 진행되는 협정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1) 개별 협정 간소화 : 본질적 특성 변화 비유발 공정 삭제

개별 협정별로 불인정공정을 간소화하는 방법은 협정마다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공정을 본질적 특성변화를 유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 본질적 특성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들을 삭제함으로써 규정내용을 간소화하는 방법이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10개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인정공정들을 세번변경의 발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불인정공정들을 해당 협정에서 삭제한다고 가정해 보면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공정들이 절반수준 이하로 간소화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협정별 불인정공정 구분

협정명	불인정공정 개수	특성변화 유발		특성변화 비유발	
		공정수	비중(%)	공정수	비중(%)
한-칠레 FTA	38	18	47.4	20	52.6
한-싱가포르 FTA	24	15	62.5	9	37.5
한-EFTA FTA	30	14	46.7	16	53.3
한-아세안 FTA	40	13	32.5	25	67.5
한-인도 CEPA	40	18	45.0	22	55.0
한-EU FTA	31	10	32.3	21	67.7
한-페루 FTA	15	5	33.3	10	66.7
한-미 FTA	-	-	-	-	-
한-터키 FTA	31	10	32.3	21	67.7
한-콜롬비아 FTA	28	9	32.1	19	67.9

주 : 한-미 FTA는 불인정공정이 품목별기준에 일부 제시되어 있어 구분에서 제외하였음.

2) 전체 협정 간소화 : 통일규정 적용

개별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공정들의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포장·보존·세정·선별·가공·조립·검사·혼합의 8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중 포장·세정·선별·검사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불인정공정들은 해당 공정의 수행만으로 물품의 본질적 특성변화를 유발하지 않아 「품목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불인정공정으로 제시될 필요가 없다.

또한 해당 공정의 수행이 물품의 본질적 특성변화를 발생시키는 보존·가공·조립·혼합의 경우에도 각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들 중 실질적 변화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유사한 공정이 복수로 규정되어 있는 등 규정의 방식과 내용이 복잡하다.

따라서 이들 공정들을 분석하여 세번변화 등 본질적 특성을 발생시키는 공정만을 취합하여 전체 협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불인정공정 통일규정을 제정하여 FTA협정에 공통되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기타 : 「품목별기준」에 포함 고려

불인정공정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불인정공정으로 예시 또는 열거되어 있는 공정이 수행된 결과 「품목별기준」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라는 가정이 제시되어 있다.

즉, 불인정공정의 적용여부 판단은 개별 물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 달성되어야 하는 「품목별기준」의 충족이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한-미 FTA의 불인정공정 제시방법과 같이 「품목별기준」에서 불인정공정의 적용과 고려가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 · 고 · 문 · 헌

국제원산지정보원(2014). 원산지결정기준, p.116~117.

국제원산지정보원(2014). 협정별 불인정공정 및 최소허용기준 사례수집 및 연구분석.

관세청(2013).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문(관세관련).

이영달 · 이신규(2014).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16(2).

한-칠레 FTA협정문 : 원산지규정 제4장.

한-싱가포르 FTA협정문 : 원산지규정 제4장.

한-EFTA FTA협정문 : 원산지규정.

한-ASEAN FTA협정문 : 부속서3(원산지규정) 및 부록3(부속서 3에 대한 해석 주석).

한-인도 CEPA협정문 : 원산지규정.

한-EU FTA협정문 :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한-페루 FTA협정문 : 원산지규정.

한-미 FTA협정문 : 부속서 6-개품목별원산지기준).

한-터키 FTA협정문 :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에 관한 의정서.

한-콜롬비아 FTA협정문 :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블루오션을 열어준 FTA 전문 자격증 원산지관리사

이준희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

새로운 길을 열어준 원산지관리사

신진우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

01

블루오션을 열어준 FTA 전문 자격증 원산지관리사

이준희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

저는 제1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10년)을 합격하고, FTA·원산지 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FTA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부산본부세관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 설명회”를 통해 원산지관리사를 알다

저는 이전에 수출입 등 관세 업무 관련 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중 서울본부세관에서 실시한 “원산지관리사 자격 설명회”를 통해 원산지관리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FTA 관련 직업의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과목(FTA협정 및 법령, 수출입통관,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내용이 대부분 익숙하였고,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로서 취업 및 활동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 이후 FTA·원산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 갖고 있는 FTA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FTA·원산지 전문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채용공고를 확인 후 입사 지원을 하였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증과 FTA 관련 경험과 지식이 플러스가 되어 합격 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국제원산지정보원 입사 이후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FTA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규정과 절차를 모르는 기업들에게 FTA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직접 상담을 통해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FTA 교육기획을 할 때 좀 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직업의 블루오션

끝으로 원산지관리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들분들이 수출입 기업등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FTA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분들은 앞으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제품의 제조공정, 납품, 조달 비용, 거래처 등의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정보를 다루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통해 오게될 것입니다. 아직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산지관리사에 도전하셔서 저와 같이 FTA 분야의 블루오션을 개척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FTA 활용시대 각광받는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주요 직무

- 생산(수출) 제품 원산지판정·관리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증빙서류 관리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영
- 원산지검증 대응
- FTA를 활용한 생산·마케팅·구매·제품기획 등 전략수립

주요 진출분야

-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업 및 협력업체
- 무역 및 물류회사
- FTA·원산지관련 연구 및 컨설팅기업
- 공공기관 등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으로 자신의 능력을 UP 하세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자격시험

- 응시대상 : 제한없음
- 시험과목 : 4과목

과 목	문 제 수
FTA 협정 및 법령	25
품목분류 실무	25
원산지결정기준	25
수출입통관 실무	25

- 시험형태 : 객관식 4지선다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 실시횟수 : 연 3회 실시
- 시험접수 : 온라인 접수 (www.origin.or.kr)



02

새로운 길을 열어준 원산지관리사

신진우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원

저는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이행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원산지관리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무역학을 전공하였지만 FTA 역시 조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취업설명회에서 “원산지관리사”자격증을 알다

제가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알게 된 계기는 대학교 3학년 때 취업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강사님이 수많은 기업이 현재 FTA를 제대로 활용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이라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무역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제 관심분야는 수출입, 인코텀즈^① 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FTA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FTA를 적용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그에 따르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취업설명회를 통해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에 큰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에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한다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취업에도 유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①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



2달정도의 기간을 두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공부하였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FTA 컨설팅 전문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에서 한 기업이 생산에서부터 FTA 혜택을 적용하기까지 조연자로서, 전문가로서 단 하나도 놓쳐선 안 되었고 실무업무에서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취득한 지식이 없었다면 전혀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진 원산지관리사

저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과 FTA 컨설팅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업무는 국내수출입·생산 기업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제조공정도, BOM, HS CODE 적정성 등의 검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업무와 인증취득업체의 지속적 인증요건 유지 및 위험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예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산지관리사란 자격증 취득을 통해 FTA와 관련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준 고마운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FTA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FTA 전문가가 될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특징

01

FTA-PASS 특징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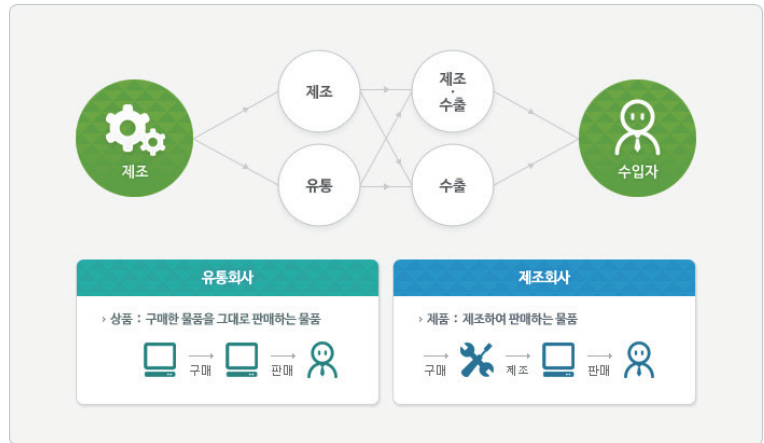
FTA-PASS는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이 효율성 있게 원산지관리를 하기 위해 개발된 무료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이다. 특히, FTA-PASS를 통해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적절히 반영하고,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통해 FTA 관련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FTA-PASS 프로그램은 검증된 솔루션, ERP 연계지원, 다양한 활용절차를 통해 제조 및 수출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합 프로그램이다. 이번 호에서는 FTA-PASS의 기본 사용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FTA-PASS의 기능은 크게 협정별 원산지의 판정과 관리, 문서 유통 및 증빙자료 보관으로 나눌 수 있다. 협정별 원산지 판정과 관리를 통해 생산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FTA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이 가능한지 판정할 수 있다. 문서 유통 및 증빙자료 보관기능은 원산지 판정결과를 기준으로 FTA 활용 수출시 필요한 원산지 증빙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다.



FTA-PASS 활용기업

FTA-PASS는 사용자 편리성이 부여된 시스템으로 전천후로 활용가능하다. 무엇보다 제품뿐만 아니라 상품도 원산지관리가 가능하며, 제조회사, 유통회사, 제조와 유통을 함께하는 회사 모두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교육용 FTA-PASS(edu.ftapass.or.kr)를 통해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FTA-PASS를 아직까지 체험해 보지 않은 기업은 FTA-PASS를 통해 원활한 원산지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검증의 위험까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FTA-PASS 사용방법

FTA-PASS에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회원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게 된다. 사용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경우 해당방법을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기준·거래정보) 등을 입력하여 수출제품의 FTA 체약국의 원산지판정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차후에 FTA-PASS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대1 현장지원 또는 협력사 교육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회원가입	사전교육	정보입력	판정·서류발급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pass.or.kr 접속 • 기업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증 첨부 • 회원승인요청 • 가입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결정기준 • 재료비산정방안 • 원산지관리준비 • FTA-PASS 활용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거래정보 ① 단건수기등록 ② 엑셀일괄등록 ③ ERP자료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체약상대국 원산지판정 • 증빙서류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② 원산지확인서 ③ 국내제조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1 현장지원 • 협력사 교육 • 전화상담문의 • 기능개선제안



FTA-PASS
자주 묻는 질문

기본형의 자재명세서 등록 방법



”

상품을 구매해 유통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자재명세서가 없는 경우에 자재명세서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상품은 자재명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가공되지 않고 구매한 그대로 판매되므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원산지증빙 서류(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

”

필수입력사항이 아닌 소요량, 원재료 매입처 코드, 원재료 매입일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요량, 원재료 매입처 코드, 원재료 매입일자는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기준은 원재료 가격정보로 원산지로 판정하므로 소요량, 원재료 매입처코드, 원재료 매입일자를 입력해야 정확한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제품을 매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일이 바뀔때마다 자재명세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자재명세서는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 원재료의 구매단가, 원재료 매입처, 소요량에 변화가 있을 때 해당 시점으로 추가해 주면 됩니다.

”





FTA 100% 활용하기

한-중 통상 환경속 “창업단계기업과 협업”

백필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플랫폼비즈니스팀 팀장

01

한-중 통상 환경속 “창업단계기업과 협업”

Innovation with Start Up

백필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플랫폼비즈니스팀 팀장

KOREA
CHINA



한-중 FTA로 인해 한국 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은 향후 Lean^①(쉽고)과 Fast(빠른)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 정권 시작과 함께 등장한 “중궈몽(차이나드림)” 정책을 통해 3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그 혁신적 발전속에 국민의 “위더몽(나의꿈)”이 이루어지는 일거양득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융합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창업단계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창업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FTA 환경하에서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및 창업단계기업의 산업 환경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전략의 필요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① 영어 단어의 뜻은 “절약”, “기대다”라는 뜻이지만 창업분야에서 “쉬운”의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됨.

01

“중귀명 워더명”

중국 유학시절에 구시가지가 현대화 되는 곳을 “빠잔”[㉠]이라고 불렀다. 휴일에 “빠잔”지역으로 가면 유학생들이 즐비했다. 마치 주중에는 중국 문화에 있다가, 모국의 문화를 찾으러 온 것 같았다.

주중에는 학교 식당과 매점에서 중국 음식을 먹고 물건을 소비하다가 “빠잔”지역에 가면 한국관에 들려서 한국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곤 했었다. 그곳에는 항상 소비했던 것들이 있어서 선택의 결정이 빠르고 쉬웠다.



1.3 billion Population
1st most populous country on earth

최근 창업단계기업 및 대중소기업의 ICT 분야 정책, 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중국과 업무를 하다보면 지금 중국의 “빠잔”은 시진핑 정권 시작과 함께 등장한 중귀명(차이나드림) 정책을 통해 3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고 그 혁신적 발전 속에 국민의 “워더명(나의꿈)”이 이루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의 중국의 “빠잔”이 2차 산업혁명의 전력, 노동, 대량생산 등의 발전이었다면, 지금은 ICT, SW, 자동화 등의 3차~3.5차 산업혁명의 화두로 부상하였다.

02

중국의 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 “창커(創客) 플러스”

작년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산업 분야의 국가 주도적인 전방위적 전략으로 중국 제조업의 향후 10년간 전략의 기본축이며, ICT융합을 기반으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ICT 기반의 제조업은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며, 전통제조업이 신기술 지능 제조업으로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ICT와 융합된 신기술 지능시



㉠ 빠잔(발전)

대에서의 제조업은 새로운 시장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중국은 중국내 불균형 및 격차를 해결하고 수출, 투자, 소비 분야를 활성화 시켜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하려고 정부 주도하에 산업고도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자국 기업의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시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③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또한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창커”^④플러스 계획으로 리커창 총리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부가 창업이 쉽고 빠르게 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제도적으로도 혁신적 규제 철폐 및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 또한 중국이 창업단계기업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중국내 불균형 및 격차를 해결하고 수출, 투자, 소비 분야를 활성화 시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 주도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GDP와 인구수를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통계적으로 중국의 창업 단계기업의 증가율은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경제의 화두가 되는 ‘뉴노멀’^⑥(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부상을 위해 ICT 기반의 제조업 전환에 정부지원, 투자를 지속적인 확대해 가며 과거보다 더 나은 중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질서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③ 해외에 있는 자국기업의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④ 중국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내놓는 창업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메이커(Maker)를 중국식으로 번역한 용어로, 크리스 앤더슨의 저서 《메이커스》(2012)에서 유래 되었음. 창커는 획일적인 창업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취업난 타개와 경제 성장 동력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음

⑤ 유니콘(unicorn)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며, 스타트업 기업이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이 되는 것은 마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됨

⑥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

03

한·중 FTA 활용전략 : Innovation with Start Up 전략

한·중 FTA를 조명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양자간 가장 개방적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인데, 글로벌 3대 소비시장(미국, EU, 중국)과 FTA를 빠르게 이루어 내어 글로벌 내수시장과 네트워크 하는 한국은 대외의존도의 장벽을 FTA를 통해서 해소하였고 수출에 이어 투자, 소비 분야에 시장 확대까지 가능해졌다.

시장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FTA가 시장의 변화를 산업간에서 산업내로 발전시켰고, 글로벌 내수시장 으로의 빠른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역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산업 분야별로는 동종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은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글로벌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FTA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ICT융합 중심의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 “창커 플러스”등 국가 정책지원을 통해 FTA에 소프트웨어적인 힘을 부가해 국내·외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13억의 사용자가 FTA를 통해 도시화 및 글로벌화 되고 있고 문화장벽이 없으며 문화충격이 없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어느 나라의 제품인지?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시장은 글로벌화 되고 있다.”

글로벌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한·중 무역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지금 시점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 FTA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제조업과 융합한 ICT를 기반으로 Innovation with Start Up를 이용한 수출, 투자, 소비분야의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혁신적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FTA의 개방과 ICT융합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 모든 시장은 신기술지능사회가 되었으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는 사람과 사물에 영향을 주는 시장이 되었고, 대기업 생태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들어온 한국의 제조업 중심의 중소협력 기업은 혁신하지 않으면 이전 퇴출되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의 도전과 열정 정신을 가지고 있는 창의도전형 인재들이 대중소기업의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투자자들이 투자한 한국의 창업단계기업들이 글로벌을 대상으로 Power of Access를 시작하고 있다. 창업단계기업의 기술,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와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창업단계기업으로 서비스 분야로 사용자의 교통이 몰리는 이유도 일맥상통한다. 현재 창업단계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제조업력이고 중소기업에게는 창업단계기업의 Lean(쉽고)과 Fast(빠른) 신기술 진입력이 필요하다. ICT 융합, SW R&D 창업단계기업의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창업단계기업들을 적극 활용하여 FTA에 날개를 달아야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과 창업단계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진출을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과 창업단계기업에 R&D지원 규제개혁과 R&D지원정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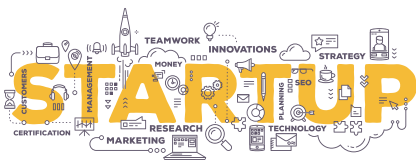
예를 들어, K-ICT글로벌선도전략 및 창업단계기업 지원사업(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해외서도 “천송이 코트”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기술을 개발·보급 등을 개선하여 외국의 접근성을 저해해 국내 웹사이트의 해외 진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던 비표준 전자금융거래환경이 개선된 사례(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은 ICT융합 신산업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한국 홈쇼핑 대기업이 중국 방송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이 방송·소비되고, 소비 고객의 정보를 한국의 창업단계기업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큐레이션[㉠]하여 기업의 정보로 활용하는 시장
- 나. 한국 창업단계기업이 개발한 O2O 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제품들이 중국에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화[㉡]되어 전달되고, 결제되고, 배송되는 시장
- 다. 농·축·수산업이 창업단계기업의 ICT융합 기술과 연합하여 생산, 관리, 재배되어 최상의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즉시 배달, 판매되는 시장

통상환경속에서 창업단계기업과 협업하여, Lean(쉽고), Fast(빠른)로 First Mover(선도)하는 효과를 통한 확대된 동반진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04

맺음말 Innovation with Start Up



한국은 정부의 지속적인 FTA 추진전략하에 미국, EU의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중국과의 FTA 역시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하였다. 한·중 FTA의 체결로 한국은 중국의 56개 민족, 13억의 사용자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특히, FTA 체결당시 한·중 FTA로 관세철폐의 개방수준은 낮지만,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커 관세철폐의 효과가 큰 협정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고용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한·중 FTA를 활용한 전략을 이용해 보는 것을 구상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큐레이션을 접목한 시장, 앱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창업단계기업과 협업하여 혁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중 FTA가 좀더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
 ㉡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특정 상품들을 선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참고 : 2016년 중국 수입규제 동향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입규제 시행은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신규 반덤핑^⑥ 조사 착수 건은 2건, 상계관세^⑦ 및 세이프가드^⑧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중국의 반덤핑 조사 착수 건 : 2014년 2건, 2015년 5건
- 현재 중국이 시행중인 기타의 수입규제 조치로는 1)수입허가증, 2)수입쿼터, 3)중고기계전자설비 수입 금지 등이 있으나, 점차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완화하는 추세

[수입허가증 관리]

- 중국은 수출입 및 외환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수입 허가증 제도를 시행해 왔음
- 2016년 현재 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한 537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 중

[수입쿼터 관리제도]

- 일부 농산물에 대해 중국은 수입쿼터 관리제도를 시행해왔으나, 현재 관세쿼터 관리제도로 변경하여 시행 중
- 2016년 상반기 기준, 밀 등 8개류 47개의 품목에는
*활준세 시행 중
*(Sliding Duties;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적용)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금지]

- 중국은 1998년부터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무부 대외 무역사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상반기 중국의 대표적인 간접 수입규제 정책은 해외직구 관련정책 변경과 문화컨텐츠 산업 규제 강화 및 분유관련 규제강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해외직구 관련정책 변경]

- 올해 4월 8일부터 해외에서 B2C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전반적 세율 인상 및 검역·통관 관련 규제 강화

[문화컨텐츠 산업 규제 강화]

- 문화컨텐츠 산업 규제 강화
- 중국 광전총국, 7월 1일부로 해외 판권을 사들인 중국 방송사 프로그램의 황금시간대(19시 30분~22시 30분) 방영 횟수를 1년에 두 편으로 제한
* 2015년 4월 1일부터는 동영상 사이트의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규제 실시

[조제분유관련 규제강화]

- 올해 10월 1일부로 해외생산업체 등록·라벨규정 등을 강화하고 1개사당 3개 브랜드, 9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수입제품이 70% 이상인 중국조제분유시장에서 간접적인 수입규제 정책으로 기능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1건으로, 11건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9건은 규제 시행 중이고, 2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품목별로는 화학 7건, 섬유 2건, 철강금속 1건, 기타 품목 1건임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품목분류
방향성 전기강판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7225.11.00 7226.11.00	반덤핑	철강 및 금속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5501.3000.10 5503.3000.10 5506.3000.10		섬유
폴리실리콘 (Polysilicon)	2804.6190		화학
테레프탈산 (TPA: Terephthalic Acid)	2917.3611 2917.3619		
아디프산 (Adipic Acid)	2917.12		
아세톤 (acetone, Dimethyl ketone 또는 2-Propanone)	2914.1100		
비스페놀A (Bisphenol-A)	2907.2300		
ECH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2910.3000		
PVC (Polyvinyl chloride)	3904.1000		기타
광섬유(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9001.1000		
폴리우레탄 및 스판덱스	5402.4410 5402.4900 5402.6920		섬유

자료: 코트라(2016년), 2016년 상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향후전망

- ⑨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⑩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조금액에 해당 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 ⑪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임





FTA 지도

우리나라 FTA 체결국 현황(2016년)

FTA활용률

지도로 보는 2016년 FTA 특혜적용 수출입실적(1~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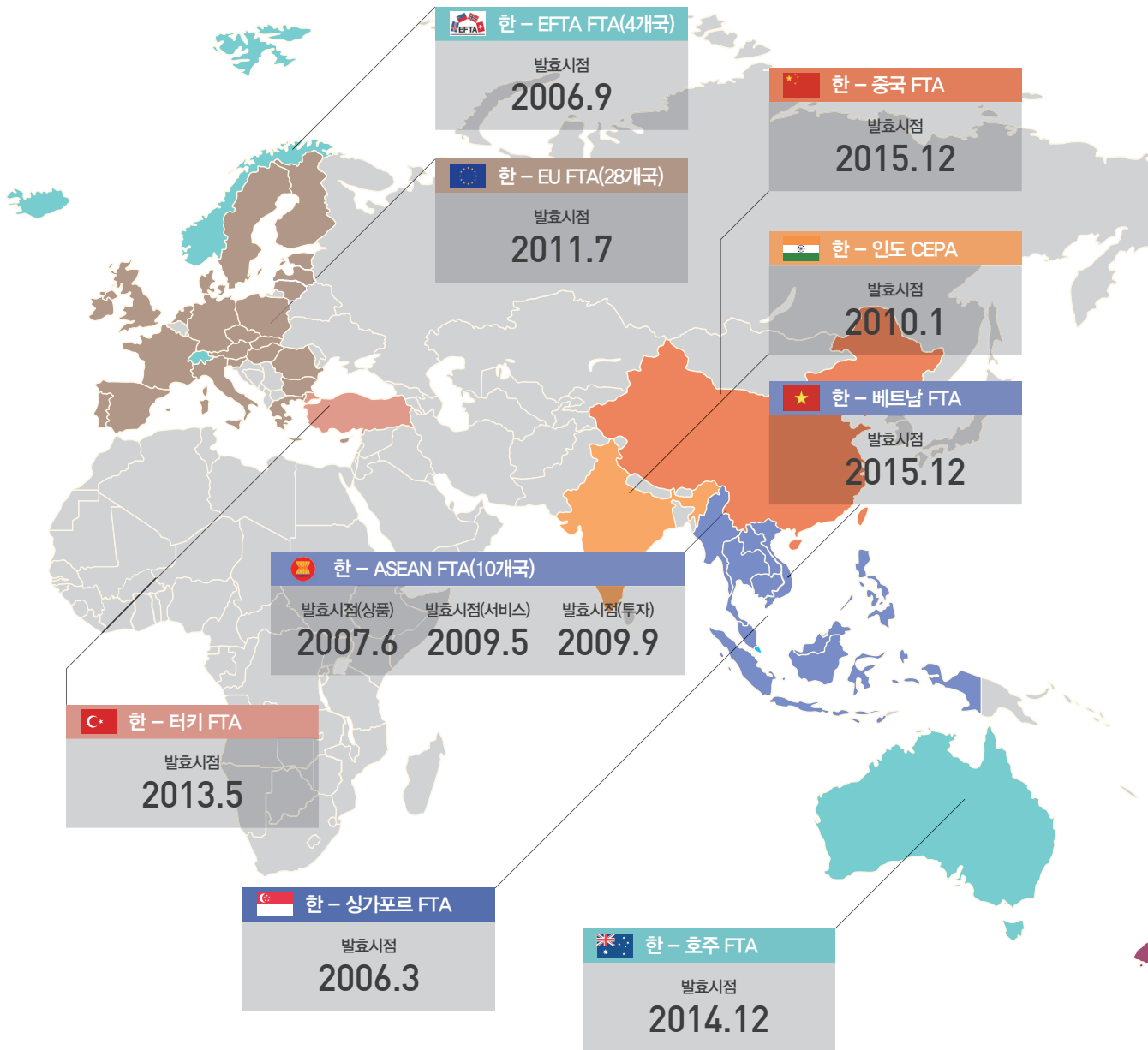
※ 품목별 세분화(MTI 3단위 기준)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분류는 HS 품목분류 체계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품목분류 체계로 이번호에서는 FTA국가에서의 산업변화(MTI 1단위)와 상위 품목(MTI 3단위)의 단위품목에 대하여 FTA 협정별 품목의 FTA 특혜적용 수출입비중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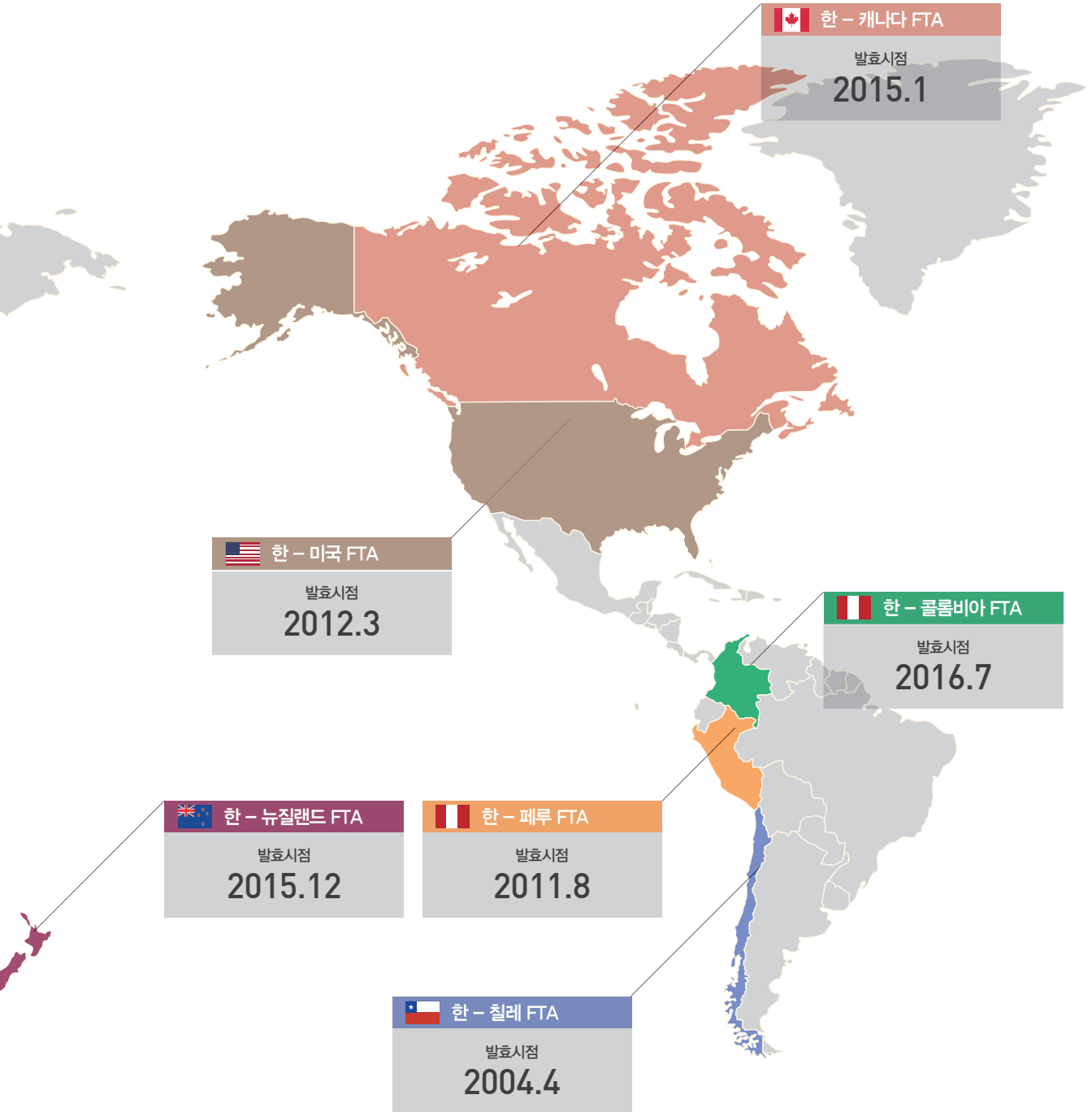
※ MTI 1단위(수출 상위순) :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광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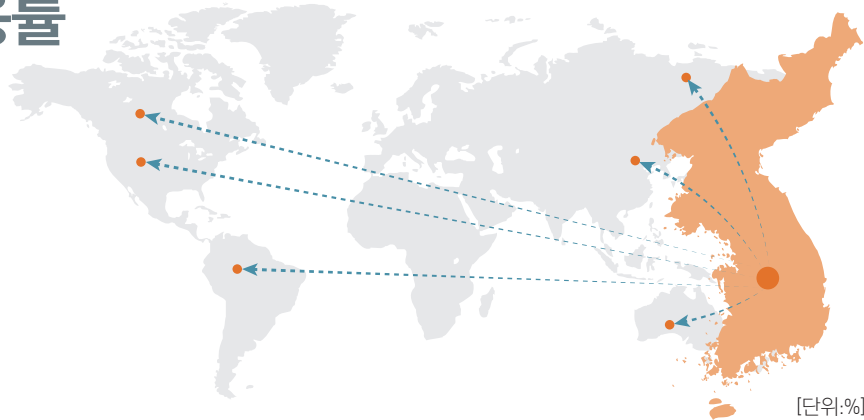
우리나라 FTA 체결국 현황 (2016년)



시점 : 2016년 12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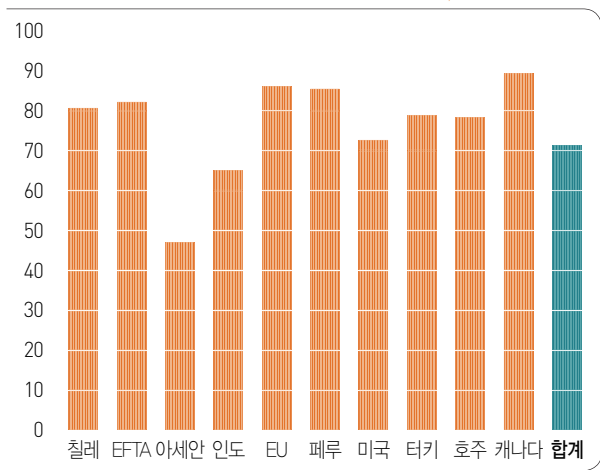


FTA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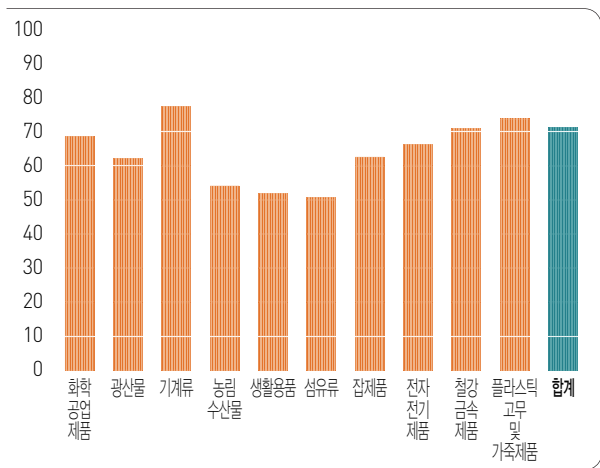
수출 활용률

구분	16년 3/4분기(누적)
칠레	80.6%
EFTA	82.4%
아세안	46.8%
인도	65.1%
EU	86.0%
페루	85.8%
미국	72.5%
터키	78.8%
호주	78.5%
캐나다	89.3%
합계	71.5%



산업별 수출활용률

MT11	16년 3/4분기(누적)
화학공업제품	68.7%
광산물	62.5%
기계류	77.8%
농림수산물	54.2%
생활용품	52.0%
섬유류	50.7%
잡제품	62.7%
전자전기제품	66.4%
철강금속제품	71.0%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4.0%
합계	71.5%



※ 발효 1년이 경과된 11개 협정(49개국)을 대상으로 산출(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는 제외)

※ 수출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 X 100

※ 수입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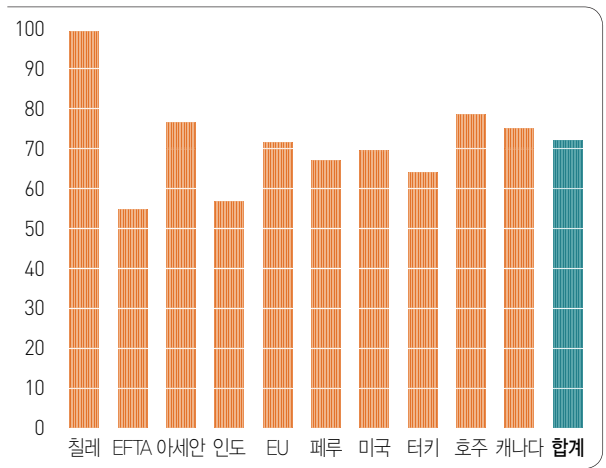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산업부에서 통계분류를 위해 편의상 비슷한 종류의 HS번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자료 : 관세청 FTA 포털(<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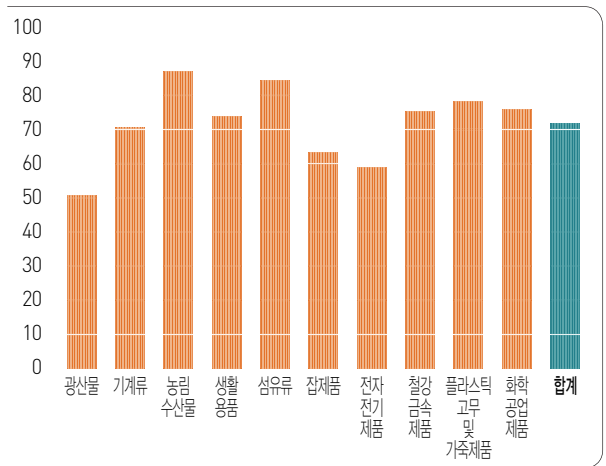
수입 활용률

구분	16년 3/4분기(누적)
칠레	99.1%
EFTA	55.1%
아세안	76.7%
인도	57.0%
EU	71.5%
페루	66.8%
미국	69.5%
터키	63.9%
호주	78.4%
캐나다	75.1%
합계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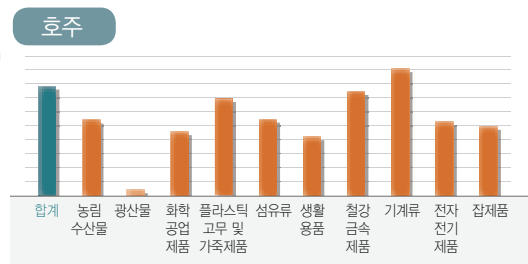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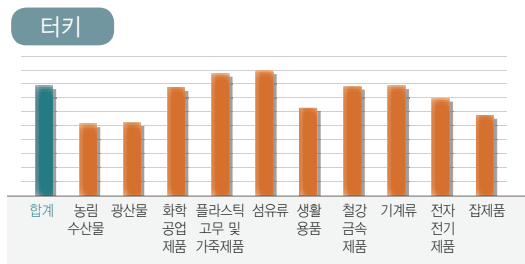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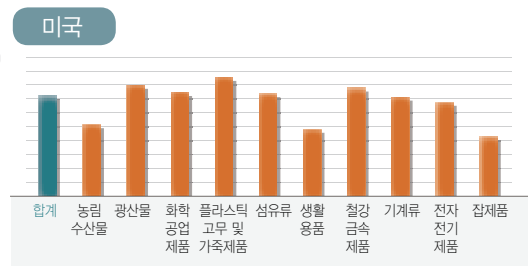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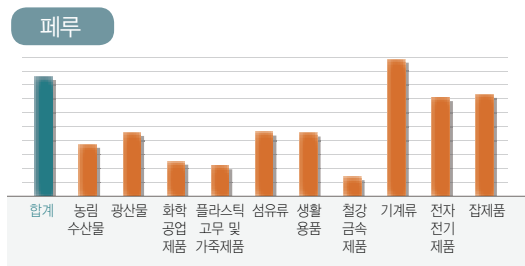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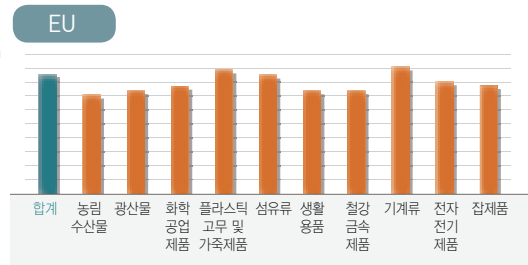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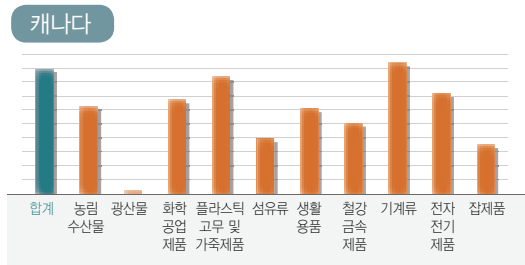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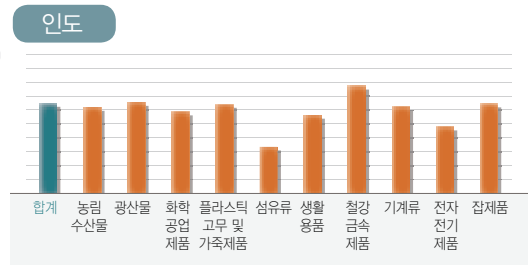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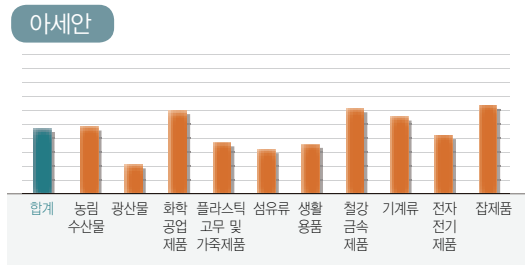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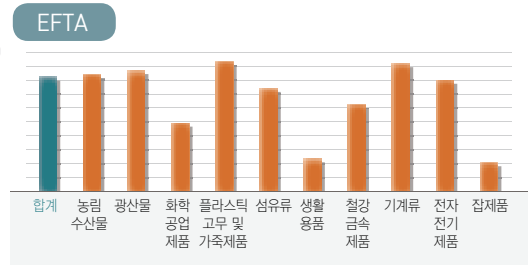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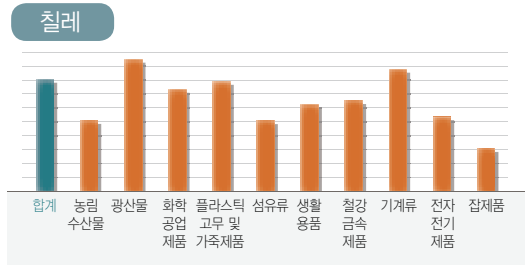
산업별 수입활용률

MT11	16년 3/4분기(누적)
광산물	50.6%
기계류	70.6%
농림수산물	86.9%
생활용품	73.9%
섬유류	84.6%
잡제품	63.4%
전자전기제품	59.4%
철강금속제품	75.6%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78.6%
화학공업제품	75.7%
합계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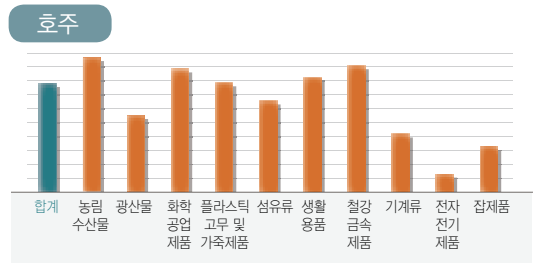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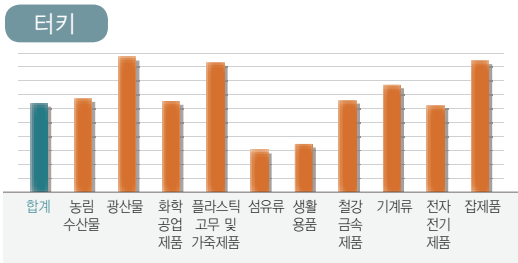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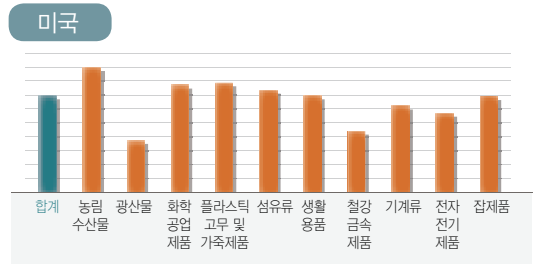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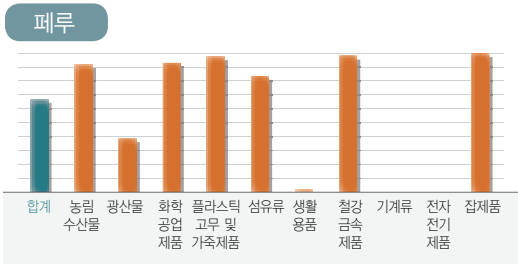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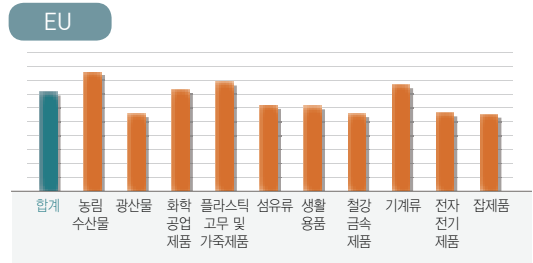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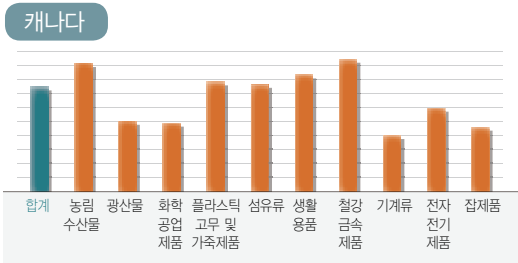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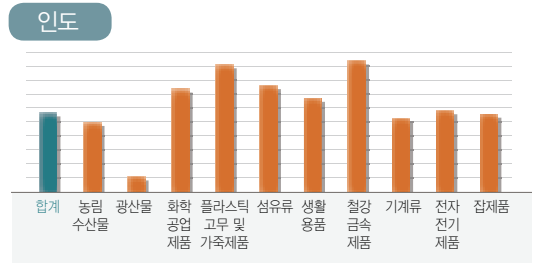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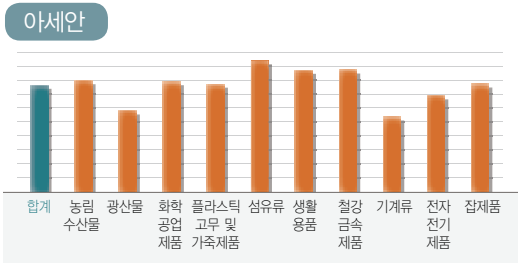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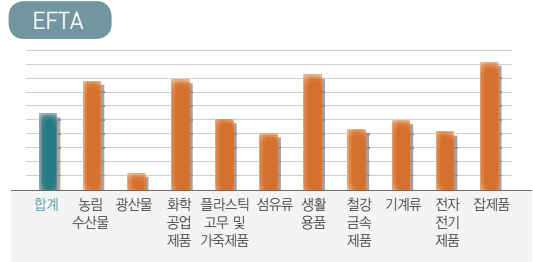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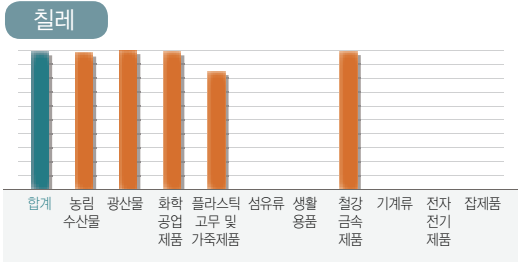
국가별 수출 FTA 활용률

16년 3/4분기(누적), MTI 1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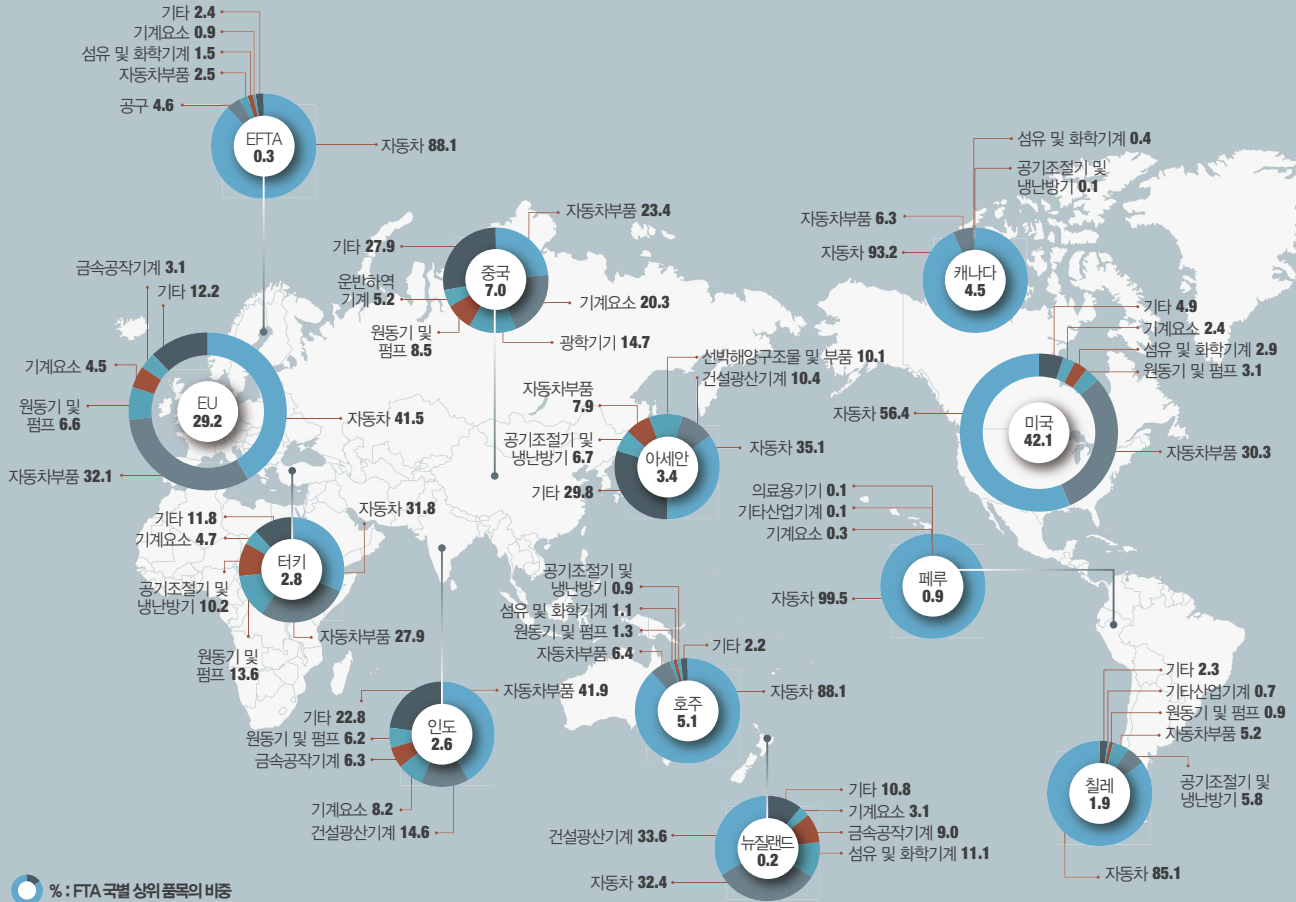


국가별 수입 FTA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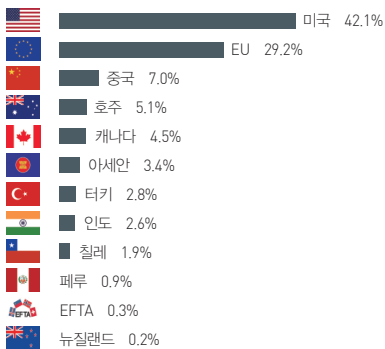
16년 3/4분기(누적), MTI 1단위 기준



수출 기계류



협정별 기계류 FTA 특혜수출 비중 (총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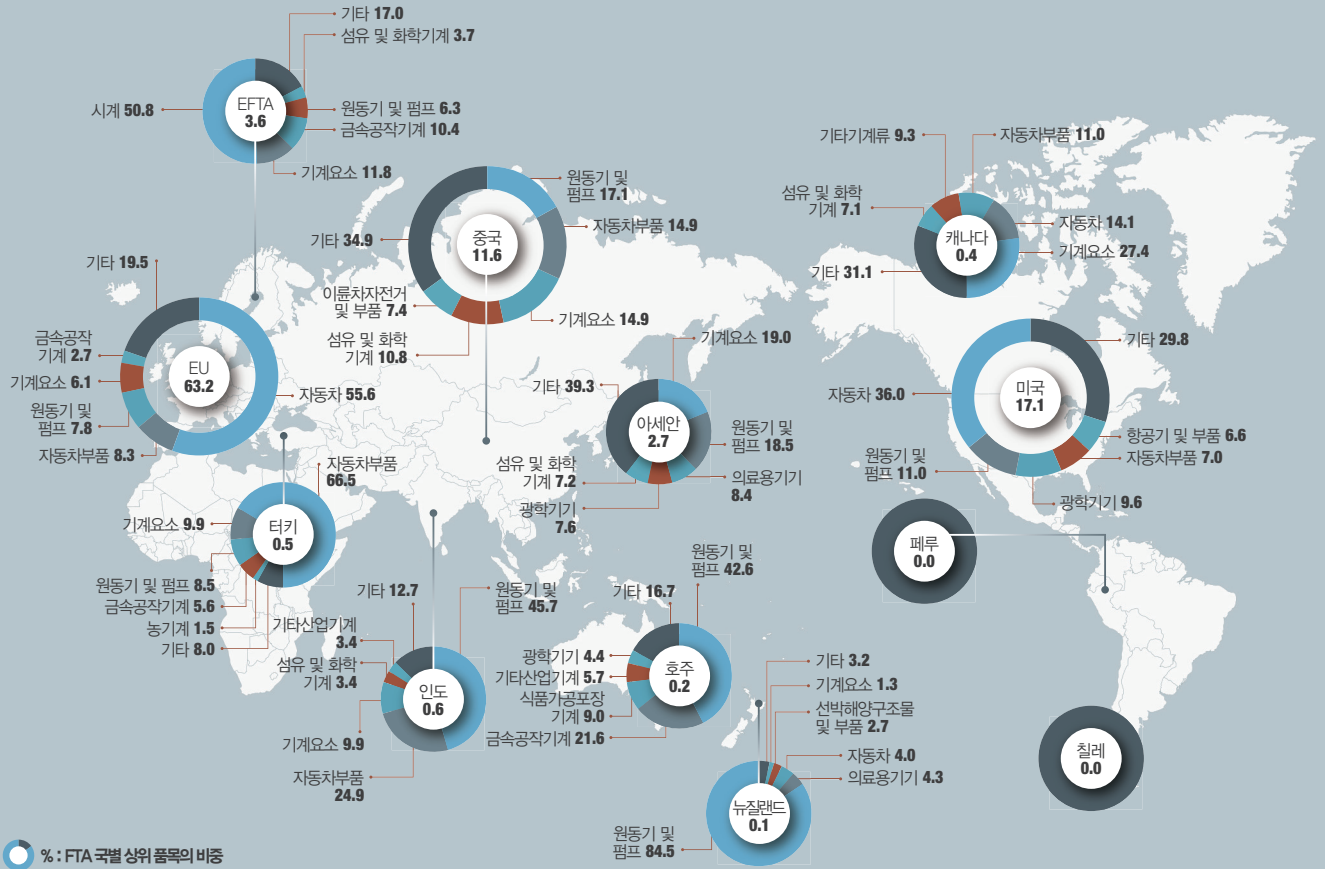


기계류 FTA 특혜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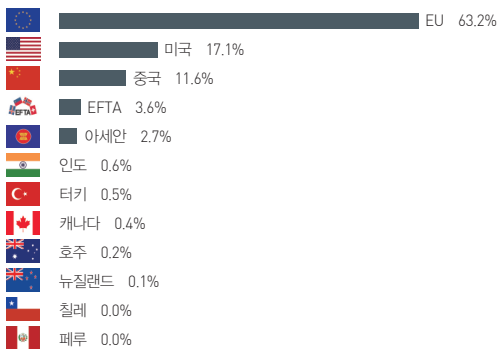
(단위: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49.5
2	자동차부품	26.6
3	원동기 및 펌프	4.6
4	기계요소	4.2
5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2
6	금속공작기계	2.1
7	섬유 및 화학기계	2.0
8	광학기기	1.5
9	금형	1.3
10	건설광산기계	1.1

수입 기계류



협정별 기계류 FTA 특혜수입 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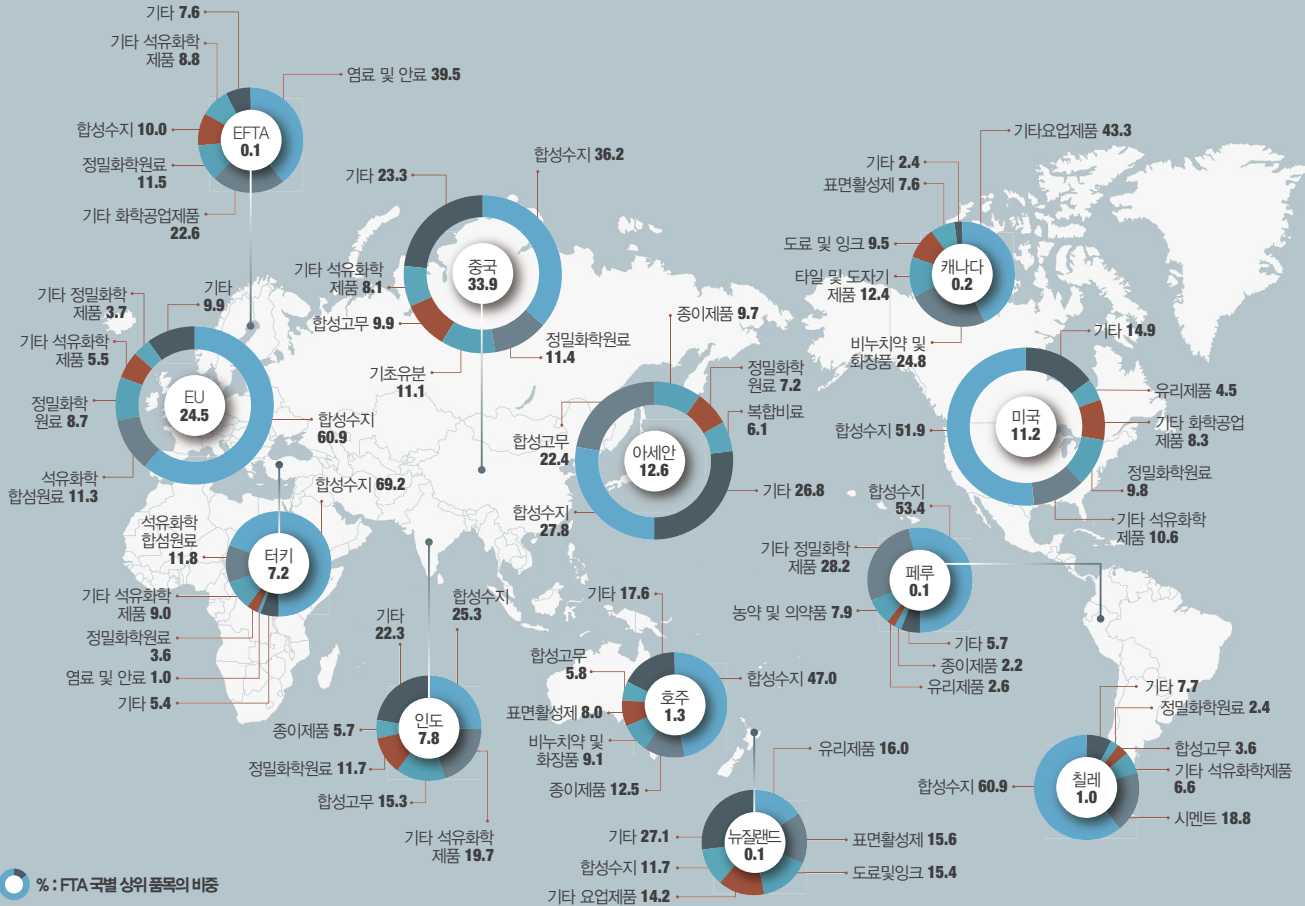


기계류 FTA 특혜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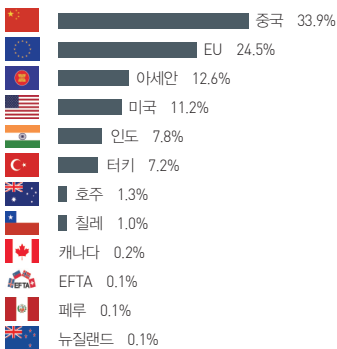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41.6
2	원동기및펌프	10.0
3	자동차부품	8.9
4	기계요소	7.8
5	광학기기	3.7
6	섬유 및 화학기계	3.6
7	금속공작기계	2.8
8	기타기계류	2.5
9	기타산업기계	2.2
10	시계	2.0

수출 화학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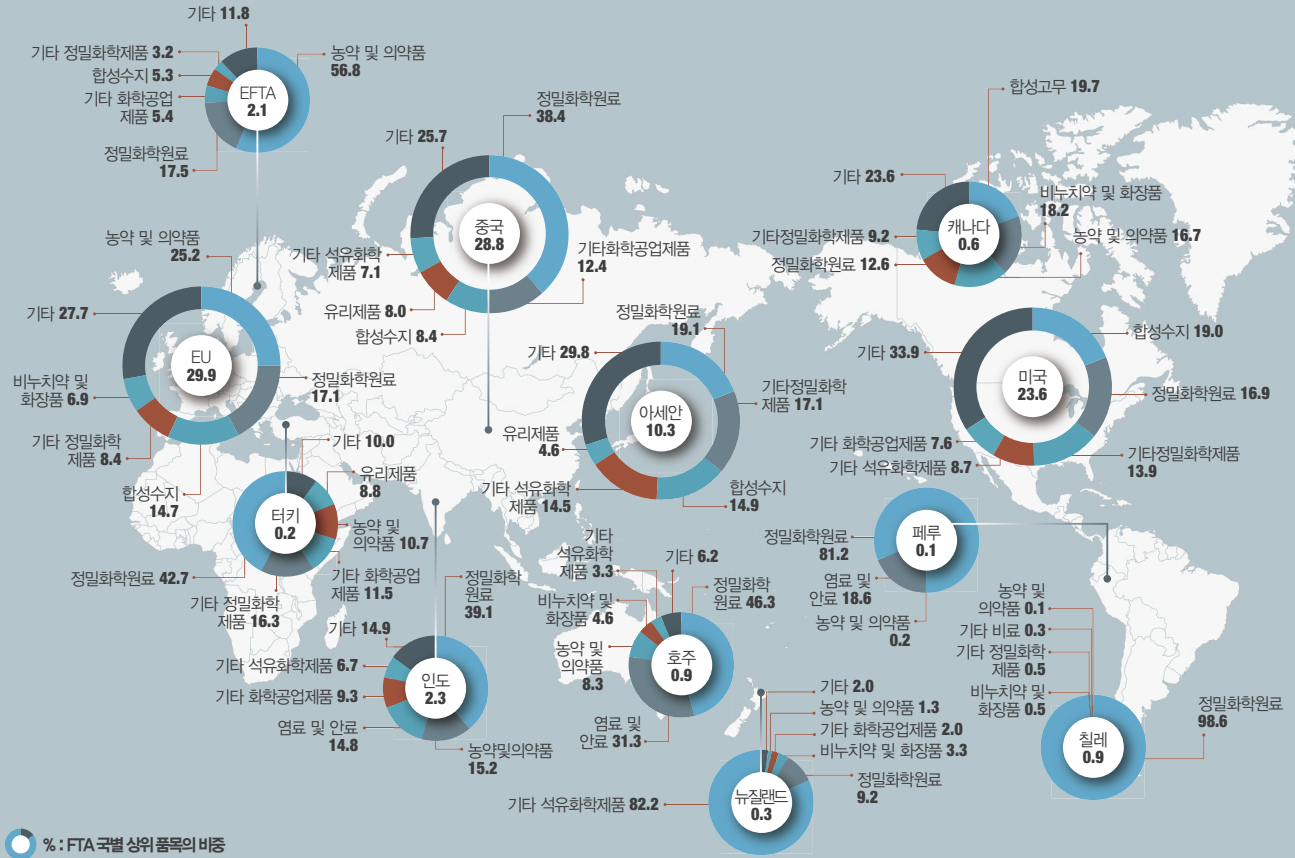
합정별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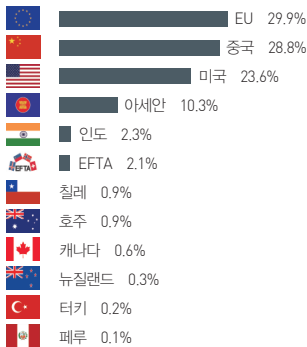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합성수지	44.7
2	정밀화학원료	9.2
3	기타석유화학제품	7.8
4	합성고무	7.5
5	석유화학합성원료	4.4
6	기초유분	4.0
7	기타화학공업제품	3.9
8	유리제품	2.9
9	기타정밀화학제품	2.1
10	염료 및 안료	2.0

수입 화학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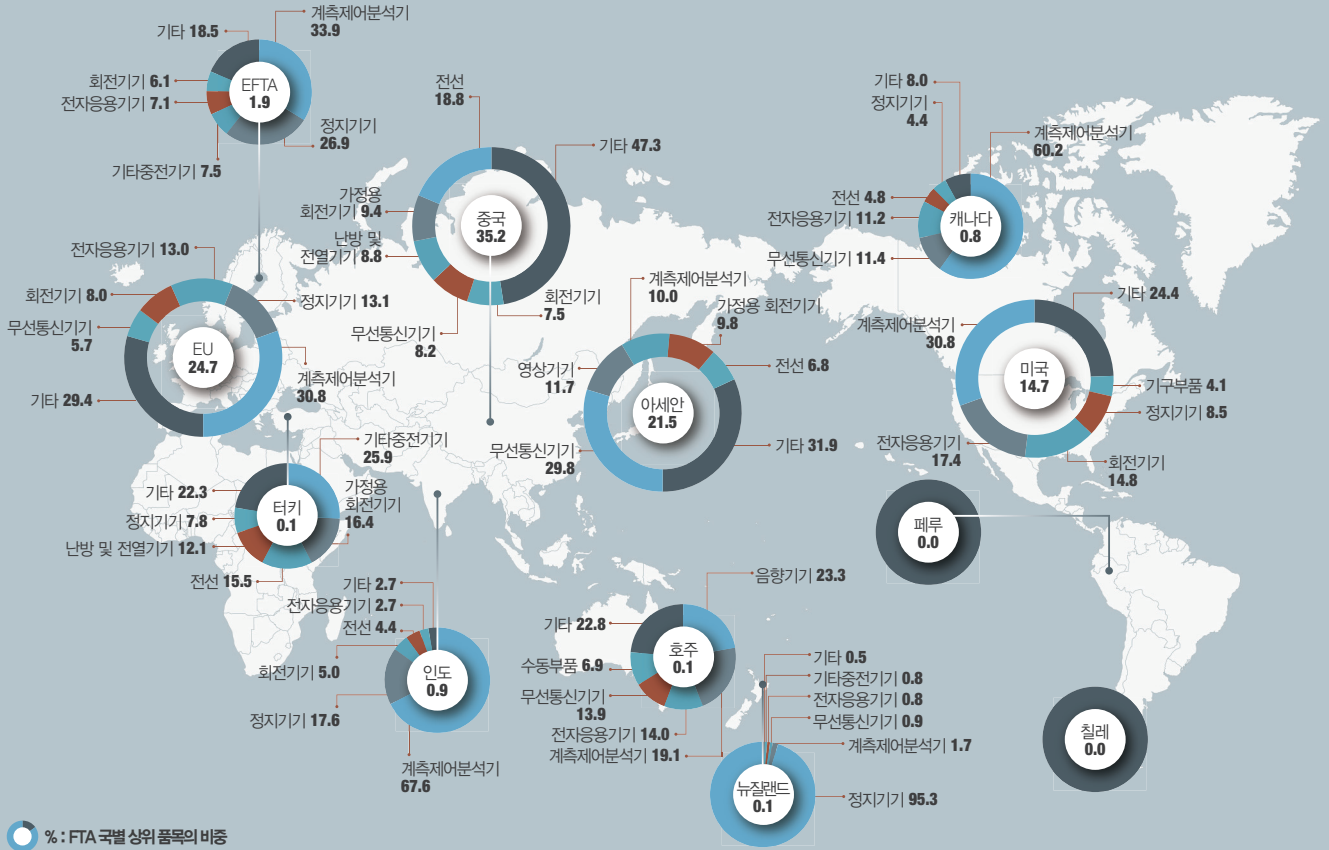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입 비중 (총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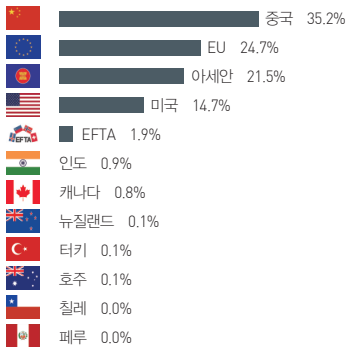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입 상위 품목 (단위: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정밀화학원료	25.0
2	합성수지	13.1
3	농약 및 의약품	12.4
4	기타정밀화학제품	8.5
5	기타화학공업제품	7.8
6	기타석유화학제품	7.4
7	비누치약 및 화장품	4.3
8	염료 및 안료	4.2
9	유리제품	4.1
10	기타요업제품	2.2

수입 전자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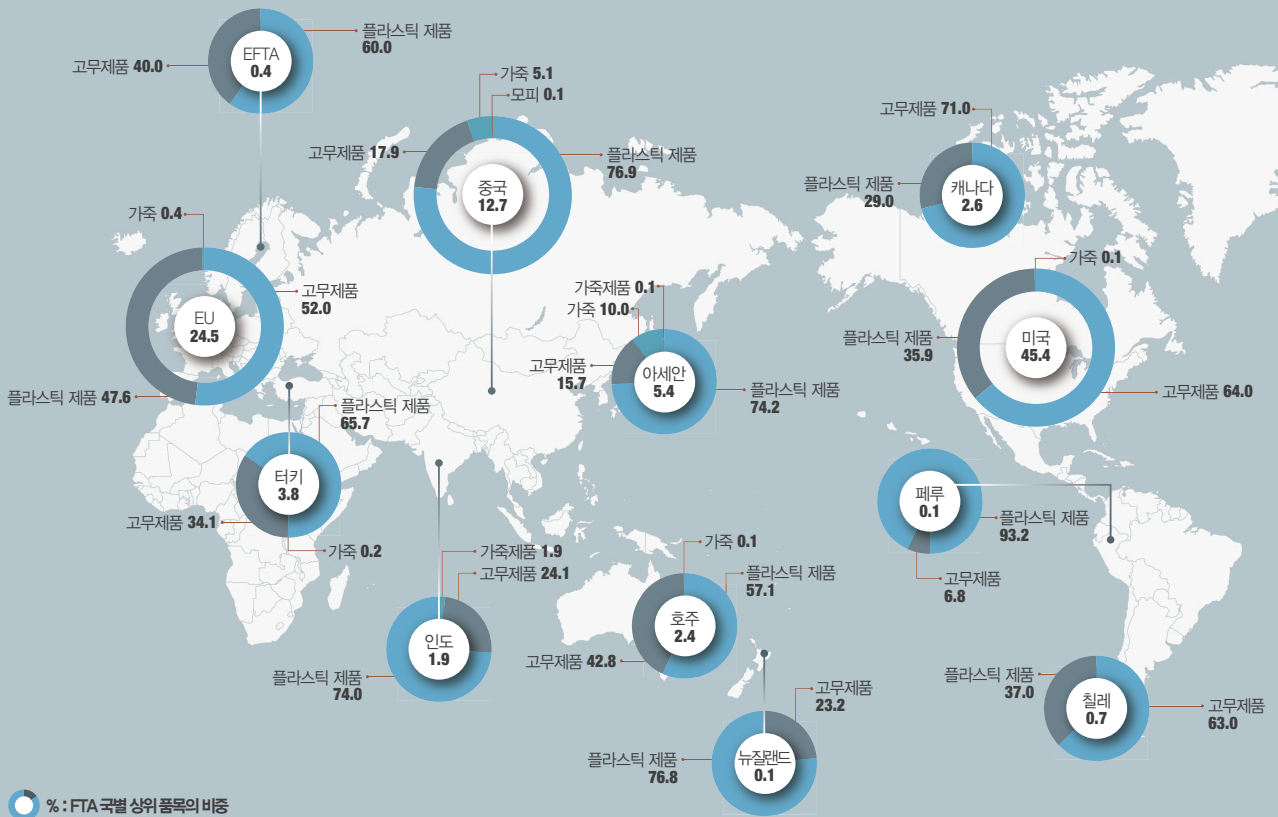
협정별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입 비중 (총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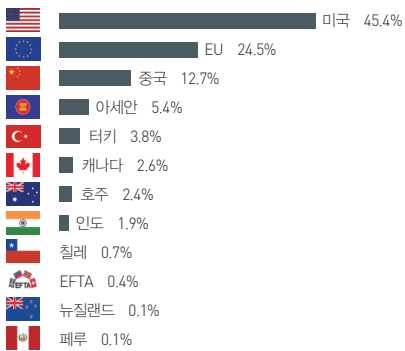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입 상위 품목 (단위: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계측제어분석기	18.0
2	무선통신기기	11.4
3	전선	9.1
4	회전기기	7.9
5	정지기기	7.7
6	전자응용기기	7.3
7	가정용회전기기	5.9
8	난방 및 전열기기	4.6
9	영상기기	4.1
10	음향기기	3.8

수출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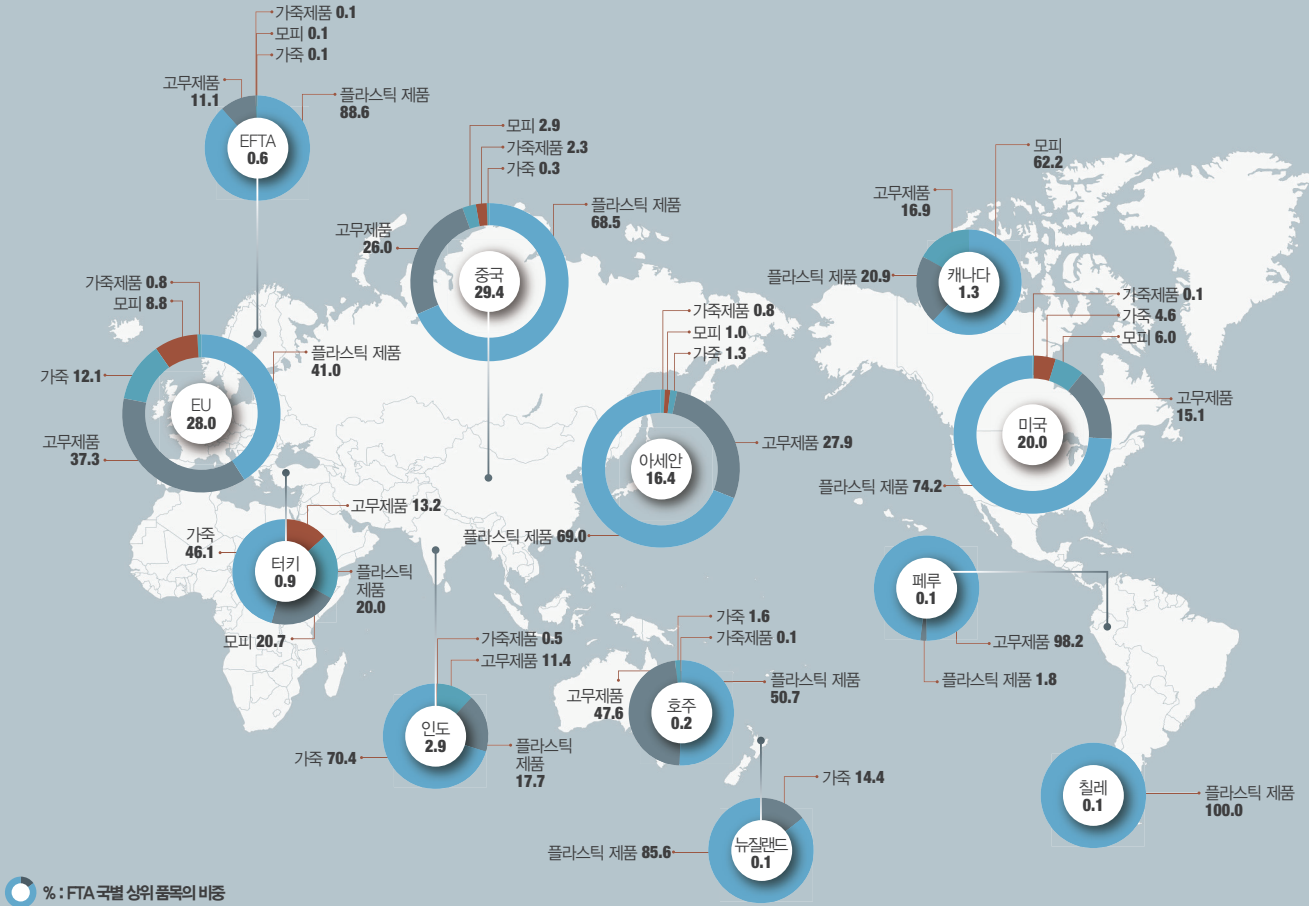
협정별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수출 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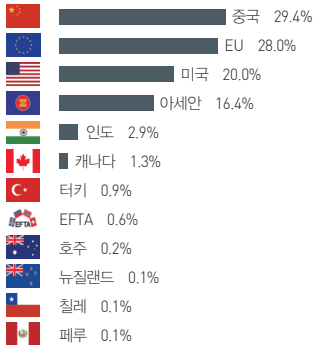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고무제품	50.5
2	플라스틱 제품	48.1
3	가죽	1.2
4	가죽제품	0.1
5	모피	0.1

수입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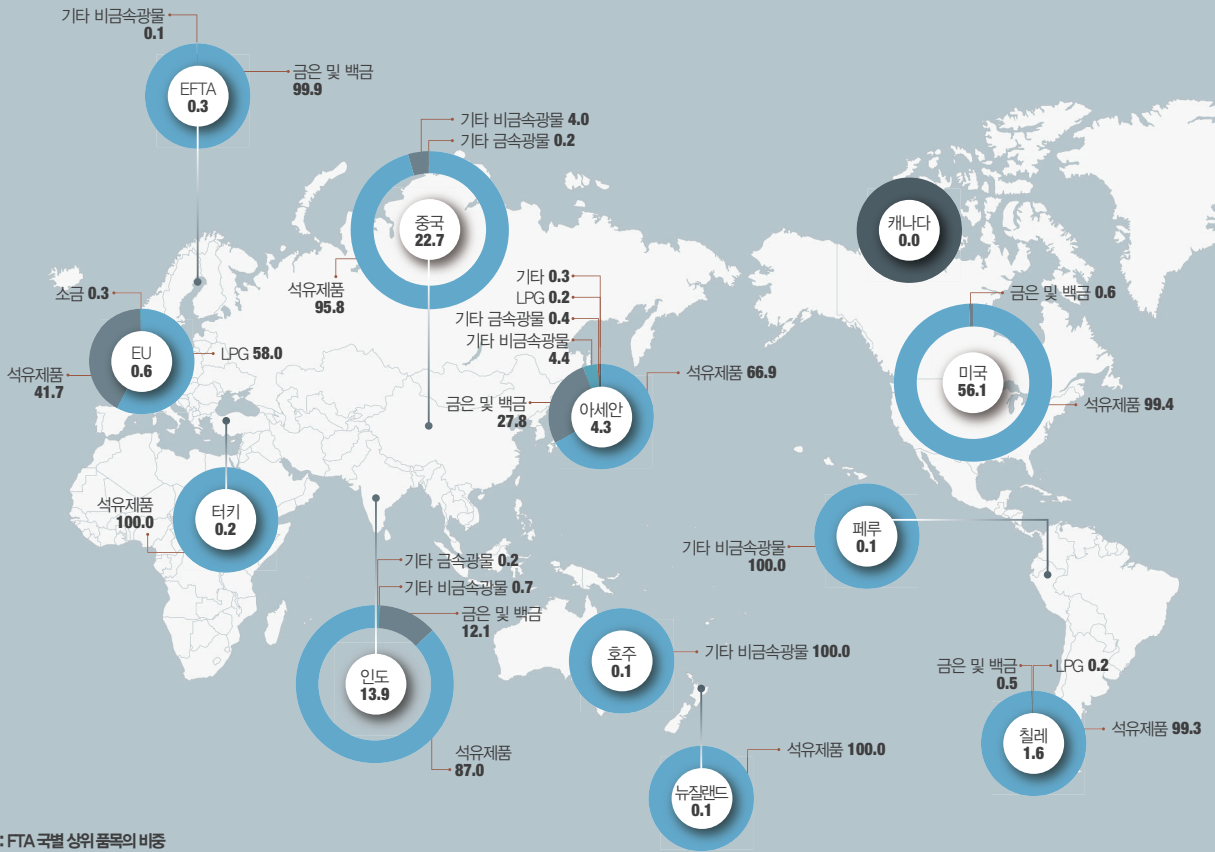
합정별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수입 비중 (총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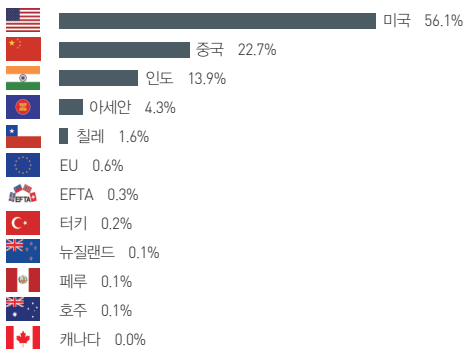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수입 상위 품목 (단위: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59.6
2	고무제품	26.6
3	가죽	7.1
4	모피	5.7
5	가죽제품	1.0

수출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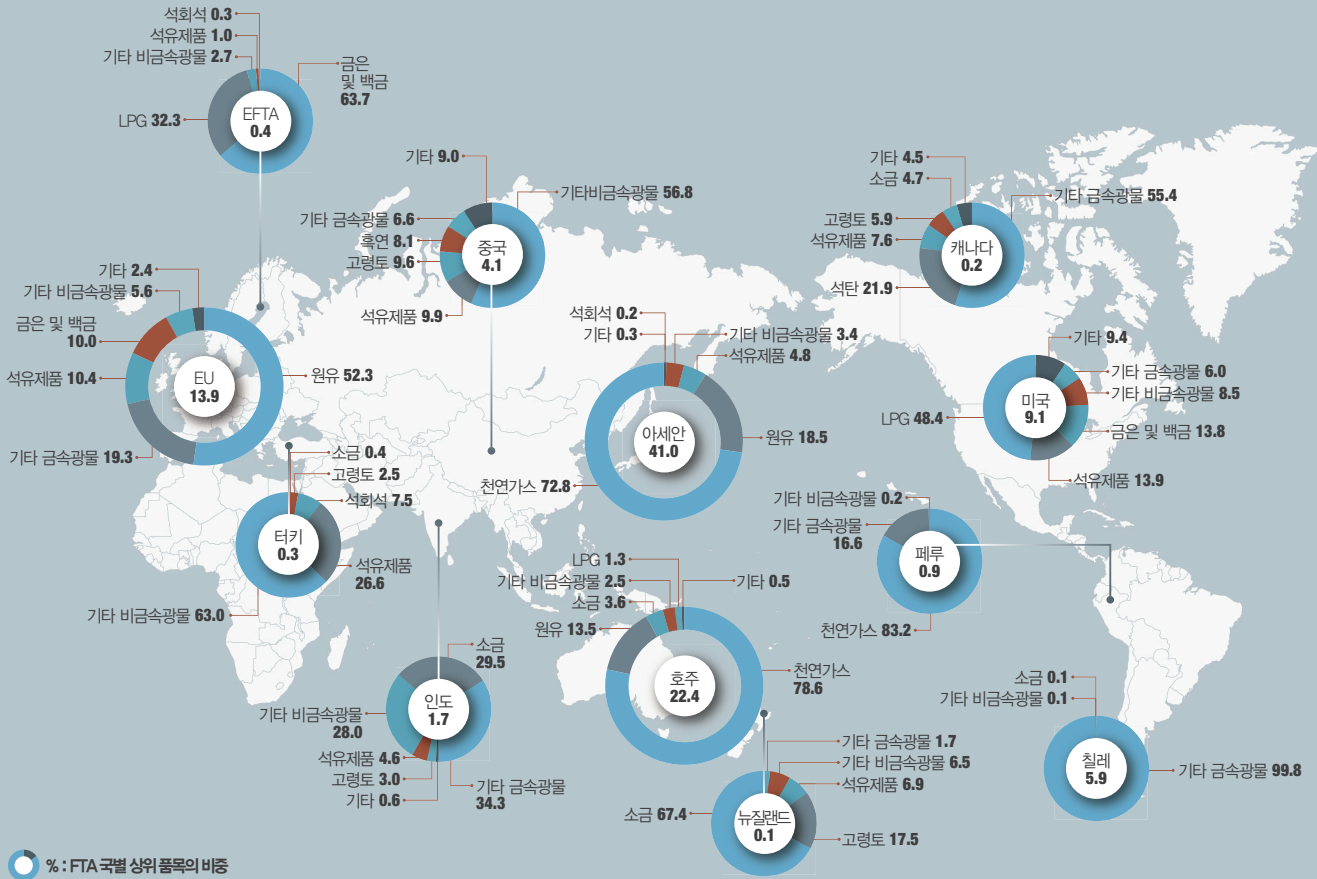
협정별 광산물 FTA 특혜수출 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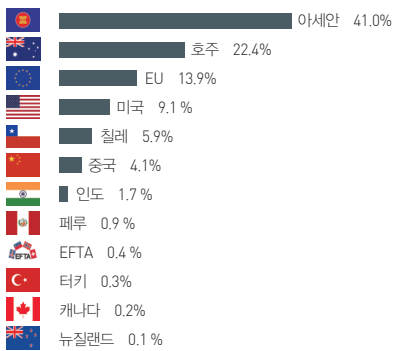
광산물 FTA 특혜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석유제품	94.3
2	금은 및 백금	3.6
3	기타비금속광물	1.2
4	LPG	0.3
5	기타금속광물	0.1
6	고령토	0.1
7	소금	0.1
8	석회석	0.1
9	흑연	0.1
10	석탄	0.1

수입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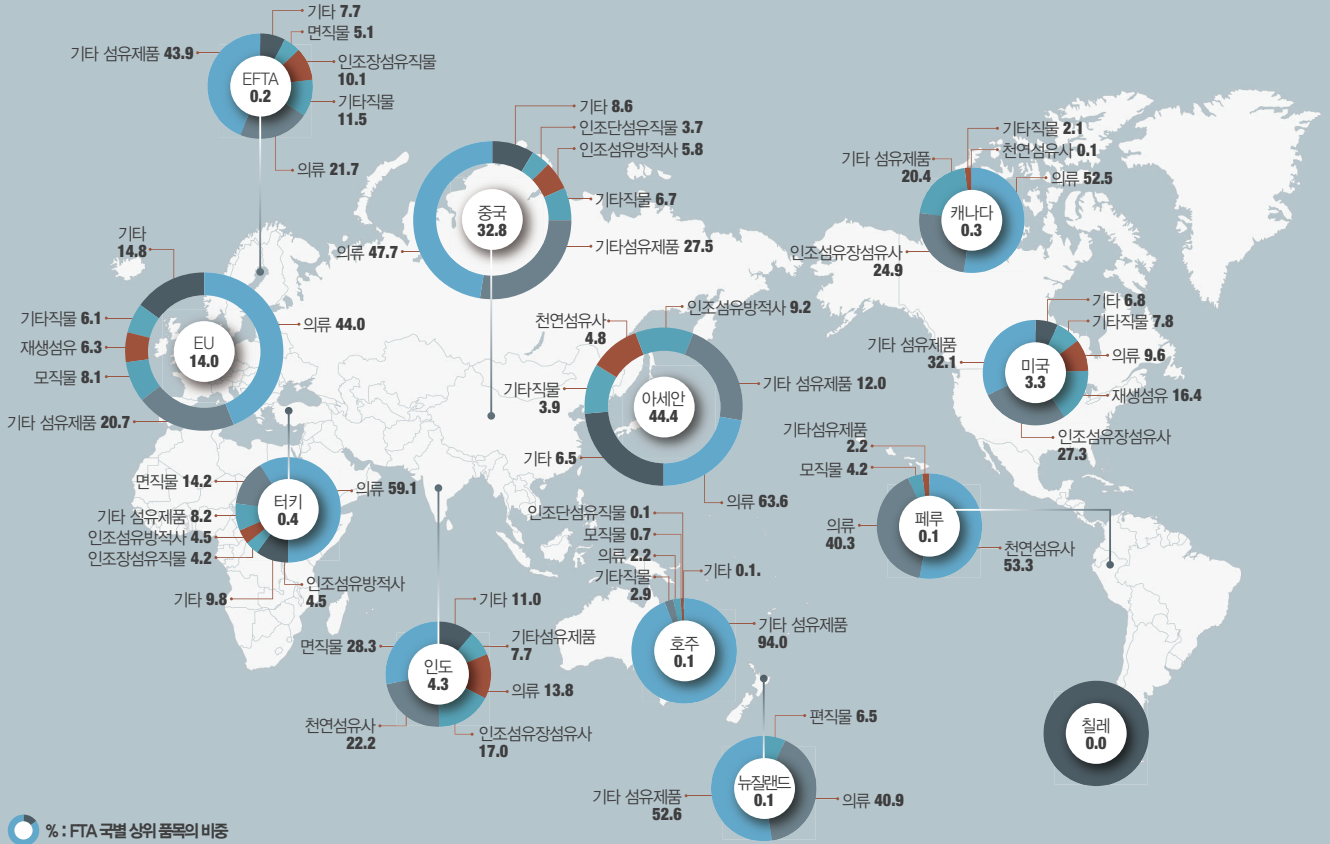
협정별 광산물 FTA 특혜수입 비중 (총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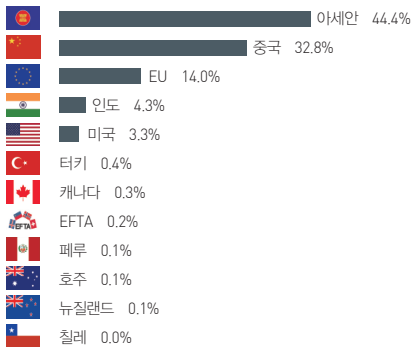
광산물 FTA 특혜수입 상위 품목 (단위: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천연가스	48.3
2	원유	18.2
3	기타금속광물	10.3
4	기타비금속광물	6.6
5	석유제품	5.3
6	LPG	4.8
7	금은 및 백금	2.9
8	소금	1.7
9	고령토	1.1
10	흑연	0.4

수입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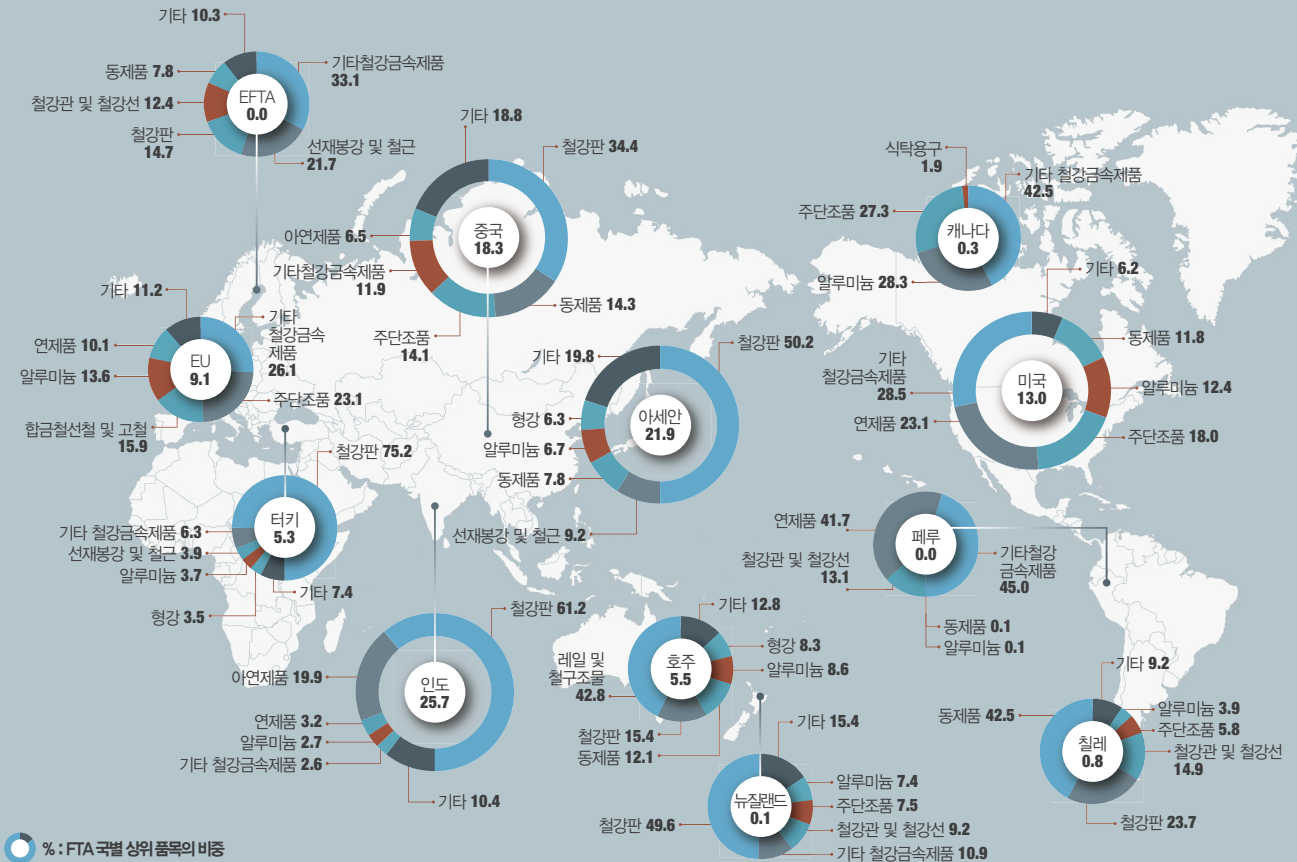
협정별 섬유류 FTA 특혜수입 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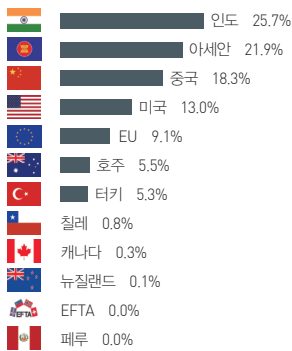
섬유류 FTA 특혜수입 상위 품목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의류	51.5
2	기타섬유제품	18.9
3	인조섬유방직사	6.2
4	기타직물	5.2
5	인조섬유장섬유사	4.4
6	천연섬유사	3.9
7	면직물	2.7
8	인조단섬유직물	2.0
9	재생섬유	1.6
10	모직물	1.2

수출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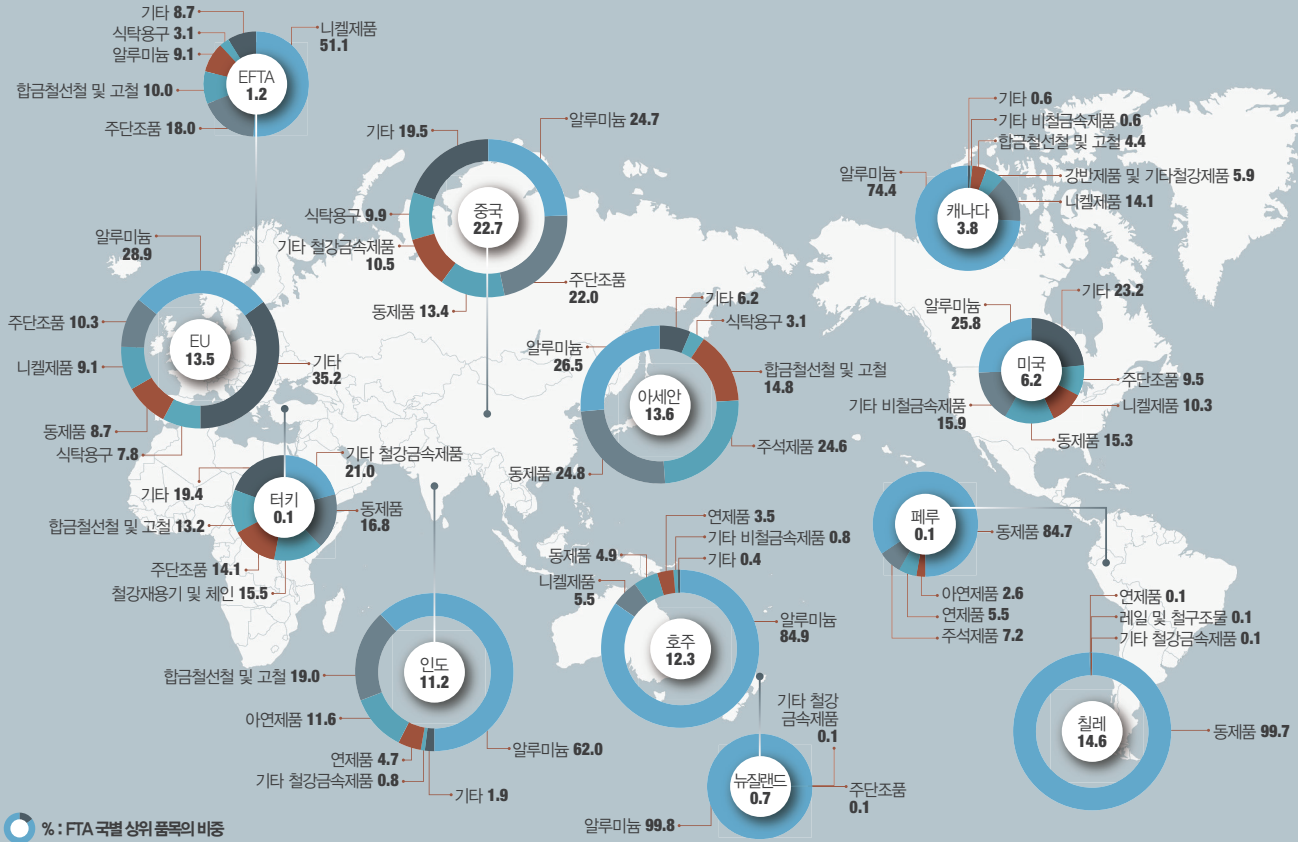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수출 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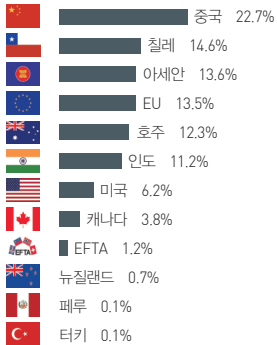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철강판	38.1
2	기타철강금속제품	10.0
3	주단조품	8.8
4	동제품	7.8
5	아연제품	6.7
6	알루미늄	6.3
7	연제품	5.4
8	선재봉강 및 철근	3.6
9	레일 및 철구조물	3.1
10	합금철선철 및 고철	2.6

수입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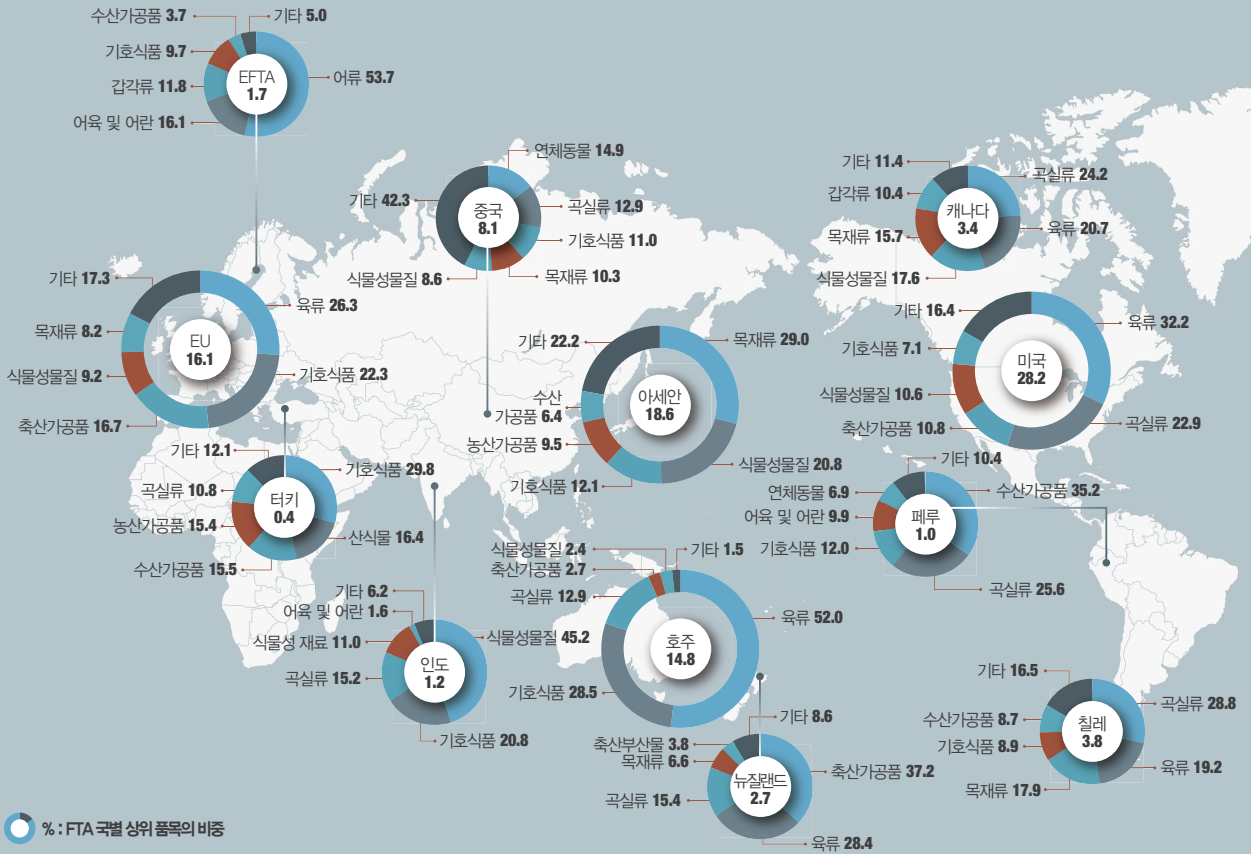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수입 비중 (총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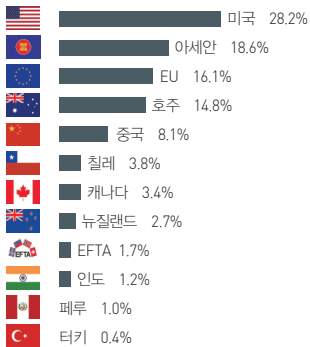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수입 상위 품목 (단위: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알루미늄	35.7
2	동제품	23.8
3	주단조품	7.6
4	합금철선철 및 고철	6.5
5	기타 철강금속제품	4.1
6	식탁용구	3.9
7	니켈제품	3.8
8	주석제품	3.5
9	기타 비철금속제품	2.4
10	철강재용기 및 체인	2.0

수입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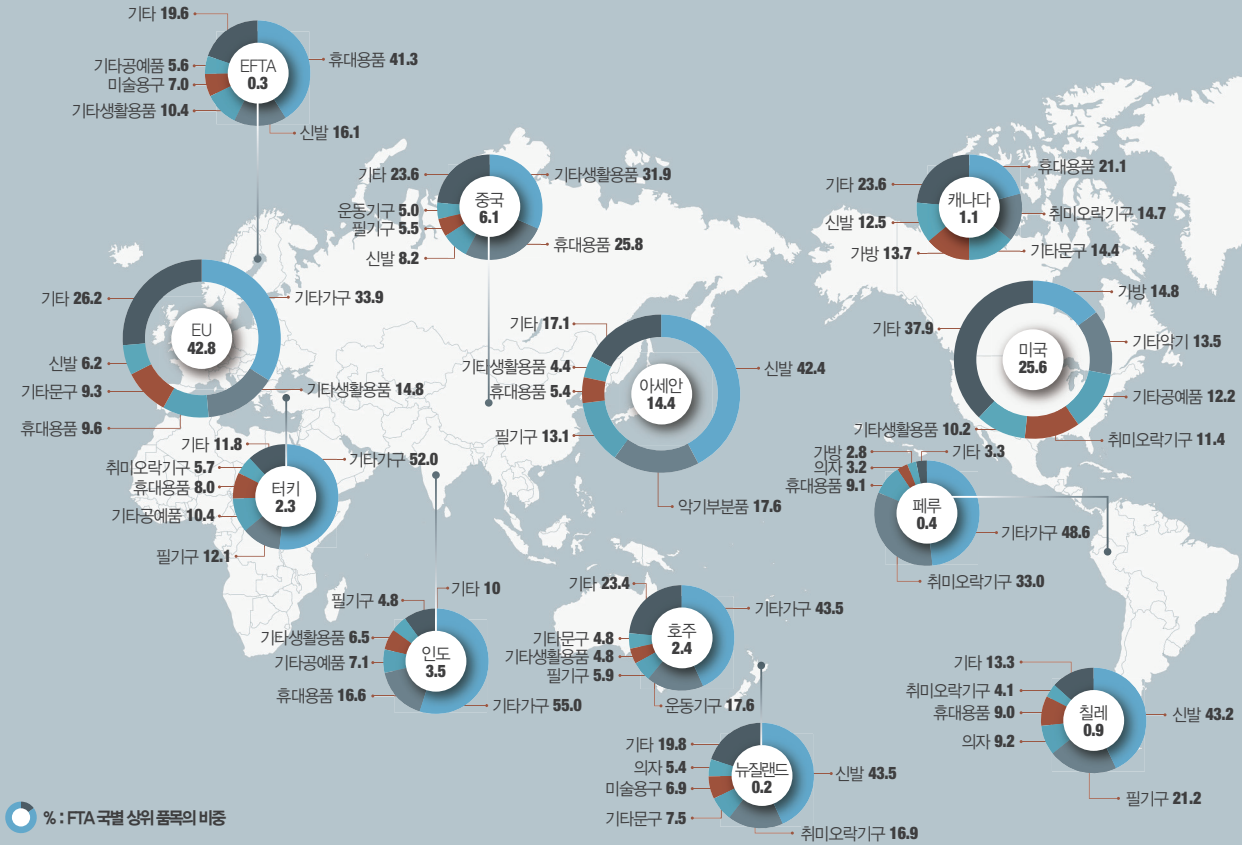
협정별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비중 (총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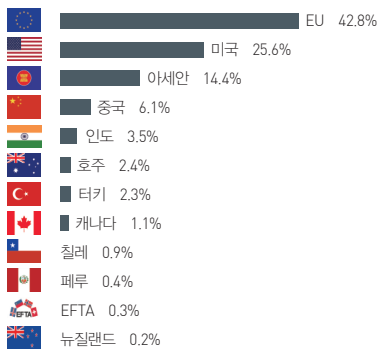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상위 품목 (단위: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육류	23.2
2	기호식품	14.0
3	곡실류	13.1
4	식물성물질	10.6
5	목재류	9.2
6	축산가공품	7.7
7	농산가공품	4.7
8	산식물	3.7
9	수산가공품	3.0
10	연체동물	2.6

수출 생활용품



협정별 생활용품 FTA 특혜수출 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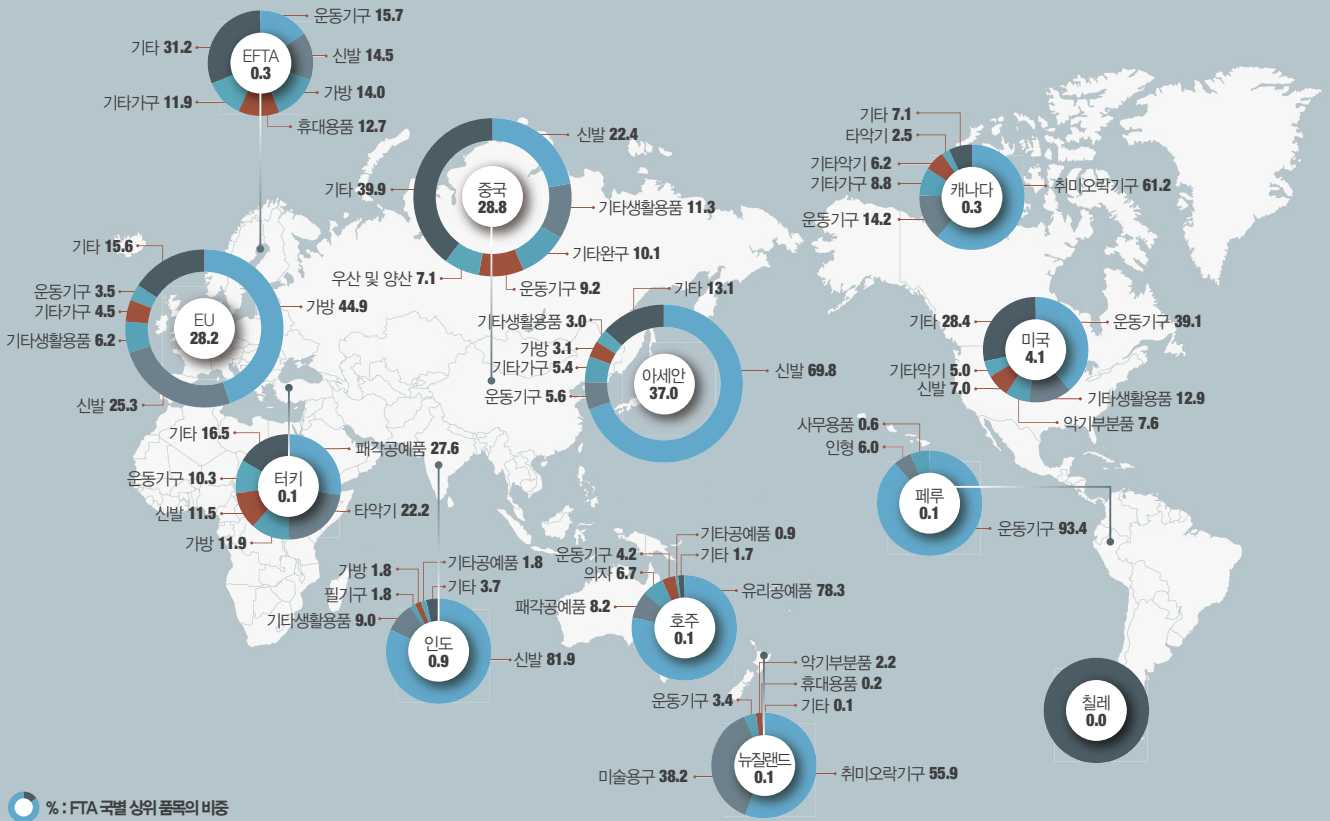


생활용품 FTA 특혜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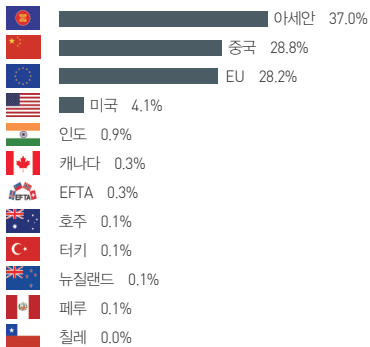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타가구	19.4
2	신발	12.3
3	기타생활용품	12.0
4	휴대용품	9.8
5	취미오락기구	6.7
6	기타공예품	6.3
7	필기구	6.2
8	기타문구	5.2
9	가방	5.1
10	기타의약품	5.1

수입 생활용품



협정별 생활용품 FTA 특혜수입 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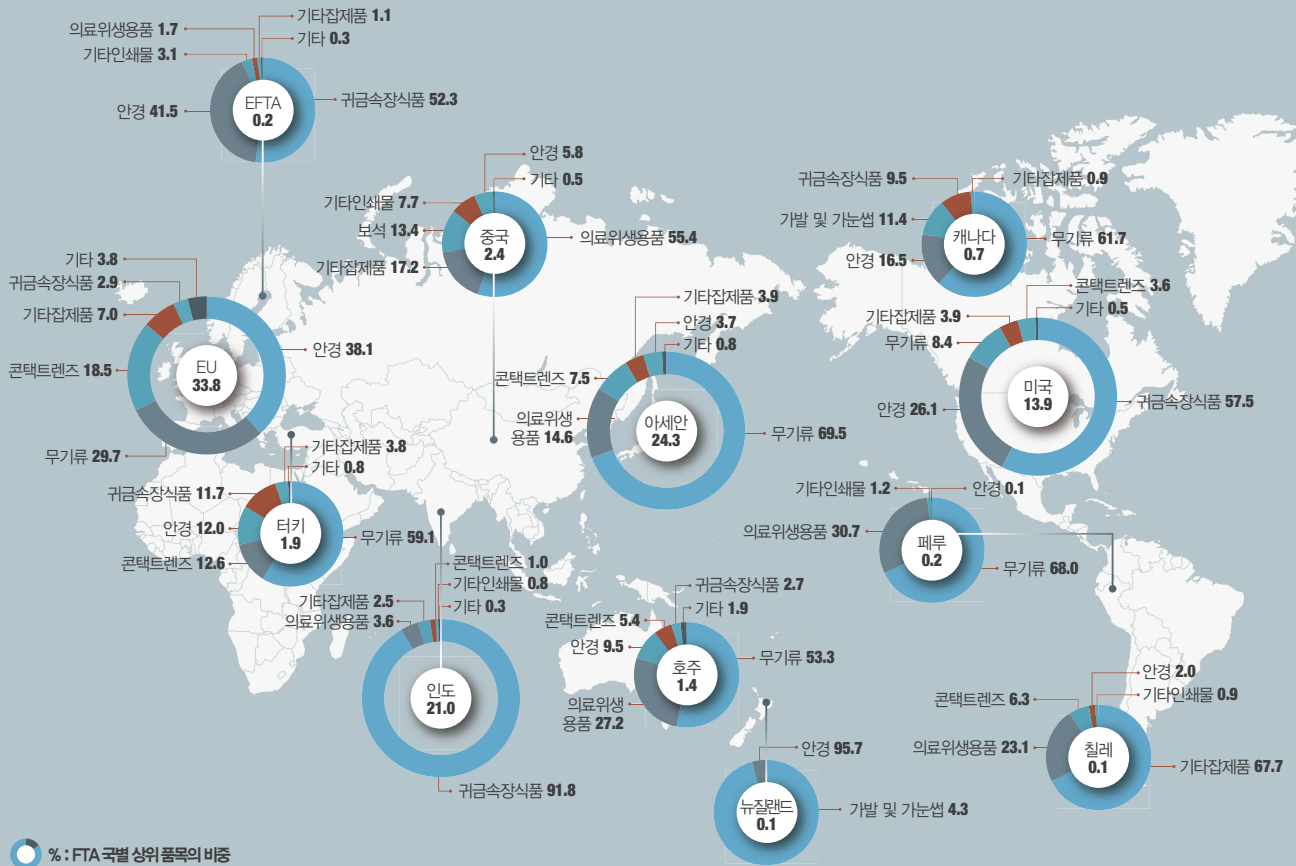


생활용품 FTA 특혜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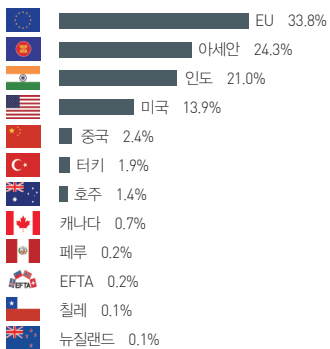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신발	40.6
2	가방	14.9
3	운동기구	7.5
4	기타생활용품	6.8
5	기타가구	5.2
6	기타완구	4.0
7	우산 및 양산	2.4
8	휴대용품	2.2
9	취미오락기구	1.8
10	인형	1.8

수출 잡제품



협정별 잡제품 FTA 특혜수출 비중 (총계: 100%)



잡제품 FTA 특혜수출 상위 품목 (단위: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무기류	30.6
2	귀금속장식품	28.8
3	안경	18.2
4	콘택트렌즈	9.1
5	의료위생용품	6.1
6	기타잡제품	4.9
7	가발 및 가늌셋	0.9
8	공업용귀금속제품	0.6
9	기타인쇄물	0.5
10	보석	0.3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FTA 무역 리포트

Vol.04 December 2016

〈비매품〉

발 행 일 2016년 12월

발 행 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82 / FAX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6000-701~3 / FAX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디자인 · 인쇄 아미고디자인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무역리포트에 관한 독자엽서를
 fta-report@origin.or.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시는 분 이름, 주소, 연락처,
 엽서의 질문답변 포함]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E-mail _____

우표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 3 5 0 3

독자의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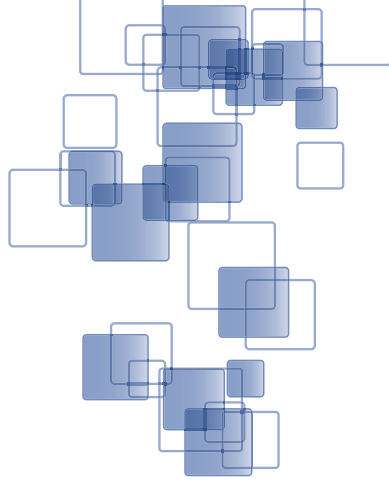
〈FTA 무역리포트〉독자의 소리를 2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yes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